

E 02-2011-03 | 2011.10 |

제13권 제3호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중국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59 전송 02-968-7340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목 차

1 포커스

- ▶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분야별 분석 3

2 2011년 특별기획: 북한법 시리즈

- ▶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29

3 북한농업 동향

- ▶ 북한매체 보도 동향 111
- ▶ 국내매체 보도 동향 144

4 농업교류협력 동향

-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69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169
 - 2. 대북지원 동향 182
 -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186
-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92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2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201
 - 3. 북중 교역 동향 213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 유기농업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 223
- ▶ 현시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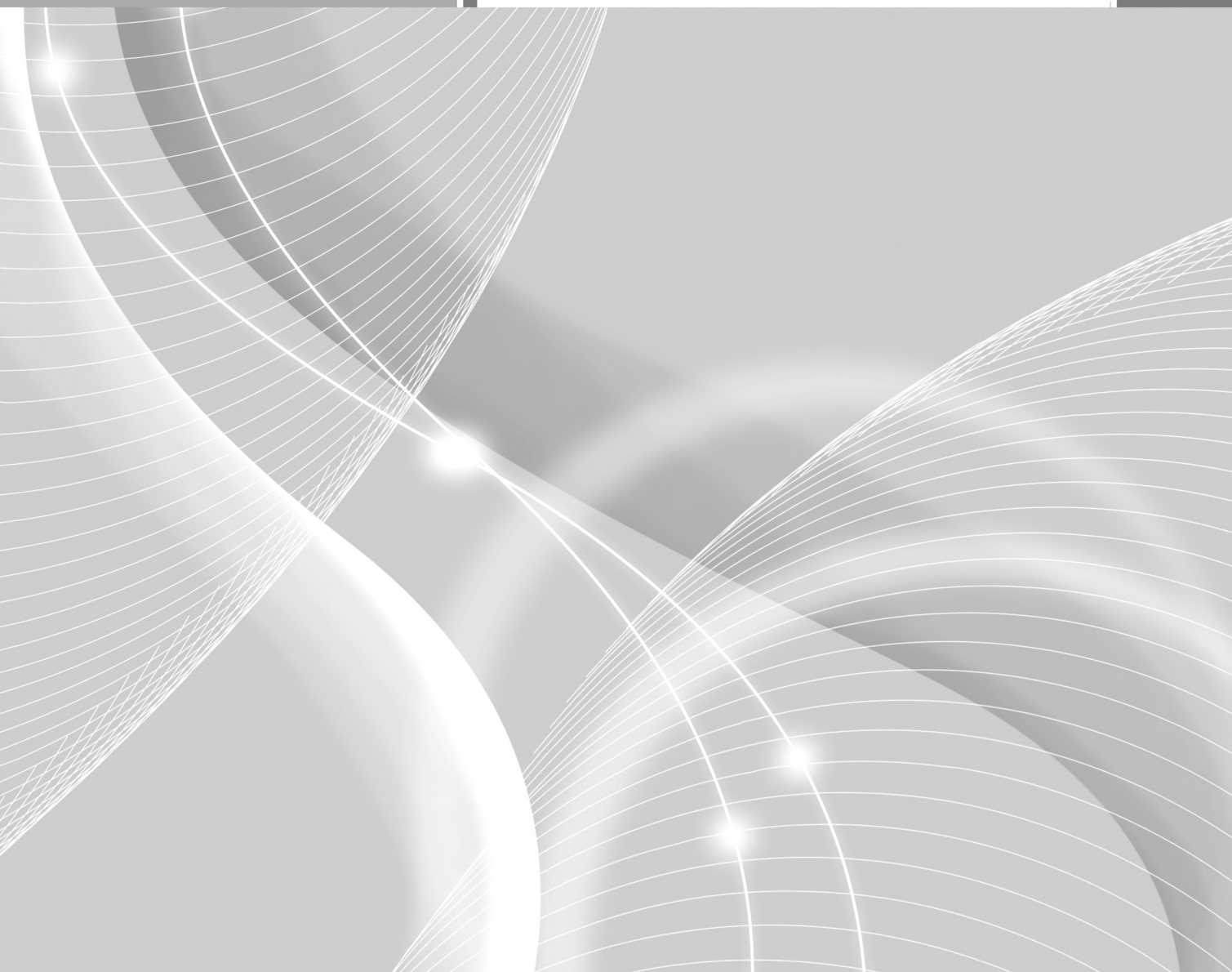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1

포커스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분야별 분석¹⁾

정리: 남민지²⁾

1. 북한 관련 UN기관 및 국제 NGO의 운영 현황

북한은 엄밀히 말해서 전쟁 중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게 있어 국가 안보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UN기관과 국제 비영리단체들은 북한과의 '인도주의적 공간'에 대한 협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북한 정부는 인도주의 기관이 일반 사업을 시행하고 모니터링, 평가 활동을 착수하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인도주의 지원자들이 북한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UN기관 및 국제 비영리단체들은 북한 정부와 공동 기반을 찾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로 분명히 하고, 북한 정부가 우려 사항을 제기하도록 하여 북한 정부가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친숙해지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제약사항 및 북측 요구사항에 대해 상호 천천히 이해를 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북한의 참여 및 자신감 구축을 통해 앞으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1.1. 대북 활동 기관

현재 FAO, UNDP, UNFPA, UNICEF, WFP, WHO의 6개 UN 기관이 북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비상주 UN기관에는 UNEP, UNESCO, UNIDO, UNESCAP, UNOPS가 있다. 또한 2009년 3월에 5개의 미국 비영리단체가 추방된 이후, 6개 유럽 비영리단체가 북한에 남아있다. 이들 단체는 유럽 연합의 ADICO(유럽지원협력기구)의 후원 아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EUPS(유럽연합 사업지원)의 구성단위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1) 이 자료는 UN이 발간한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the DPRK (2011)」의 "Thematic Analysis of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Section C, D)" 부분을 번역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스위스 개발협력청, 이탈리아 개발협력청, 스웨덴 농업재건 사업, 국제 적십자/적신월사 연맹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다.

상주 EUPS 구성단위와 UN 기관들은 유엔 지역조정관(UN RC)³⁾이 주도하는 참여적 접근 방식을 개발했다. 전략적, 운영적 조정을 위한 주요 포럼은 기관 간 포럼으로 주단 위로 회의가 있으며, 모든 인도주의 지원자, 개발 조직, 국제 대사관을 대표한다. 이 포럼은 참여적이고 포용적이다. UN 기관, IFRC, ICRC, EUPS 구성단위(상주 및 비상주), 공여자 및 공여 대표들은 언제나 포럼에 참석이 가능하다.

1.2. 북한 정부와의 관계

북한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관은 북한 외무성에서 지정한 정부 기관을 통해 관리된다. UN기관의 카운터파트는 국가조정위원회(NCC)이며, EUPS 구성단위의 카운터파트는 조선-유럽연합협력조정처(KECCA)이다.

북한 정부는 현장 차원에서는 UN기관과 EUPS 구성단위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음으로써 정책과 실행 간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EUPS 구성단위와 UN기관은 IAM 회의에서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정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제공된다. UNDP와 UNFPA, UNICEF는 북한 통계국과의 역량 구축 노력을 통하여 대량 데이터 및 기본 프로그램 분석 등 필요한 것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상주하는 비영리단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UPS 구성단위는 북한에서 지리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주민에게 인도주의 원조 및 전환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3. 접근성이슈

UN기관과 EUPS 구성단위는 자신들의 사업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서로 다르다. WFP의 식량 원조에 ‘접근가능’하다고 간주되는 군은 EUPS 구성단위를 비롯한 다른 인도주의 기관들에 접근할 수 없다. WFP는 최근 2억 9백만 달러 규모의 긴급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8개 도(남포 포함), 107개 군에 접근성을 부여받았다. 2008년 중반 WFP가 식량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긴급 운영을 실시하였을 때,

3) UN RC는 OCHA와 CERF 메커니즘을 통해 인도주의 대응, 재정지원 요청을 조정한다.

WFP는 200개 군 중 131개 군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차후 재원 부족으로 인한 운영 규모 축소로 인해 WFP의 접근성은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 WFP는 북한의 남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긴급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강도와 평안북도에 대한 접근성은 갖고 있지 않다.

WHO 역시 북동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다. UNICEF(예방접종 캠페인), UNFPA(데이터 수집 활동/인구조사 2008)와 같은 기관들은 비록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북한 전역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전 지역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활동(예방접종, 데이터 수집)은 UN 직원들이 수행할 수 없다.

〈 원조 분배 〉

UN 기관과 EUPS 구성단위는 “접근이 없으면 원조도 없다”는 엄격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인도주의 기관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군에 사는 주민들은 원조를 받지 못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북한 정부의 예방접종, 비타민A 보조제, 결핵, 말라리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다.

북한 정부는 “접근이 없으면 원조도 없다”의 반대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은 기관에게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성을 적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여자들의 해당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어들게 하고 접근성과 원조 모두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정부와 식량 및 비식량 원조를 받는 군은 수혜자들에게 원조를 배분하는 책임을 갖는다.

〈 모니터링 〉

북한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관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니터링 규정은 7일 전 공지 규정이다. 이 규정은 수년간 적용이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 정부는 48시간 전 모니터링 통지 또한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 WFP는 24시간 전 사전 통지 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UN 기관들은 수혜 지역에 사전 통보 없이 방문을 할 수 있는 접근성 및 자유 획득을 지속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UN 기관들은 북한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로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지고 경험 교류를 통해 상호 학습함으로써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관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이행 평가, 프로세스 모니터링, 평가 등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양자 및 비정부기관인 UN에게 공동 평가 임무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하지

만 북한 북서부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UN 원조를 요청한 2010년 8월에는 정부 간 긴급지원그룹의 공동평가를 지원했다.

〈 수혜자 〉

국제 공동체가 평가,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는 수혜기관 및 수혜인원에 대한 정확한 리스트가 필요하며 북한 정부는 실행 기관에게 수혜자 인원과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늦게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받은 수혜 리스트를 기구별로 비교해본 결과 담당건수 규모와 지역별 담당기구 수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원조기관들은 접근 제약으로 인해 북한 정부가 제공하는 리스트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UN 기관들이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수혜자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 북한 정부 당국의 배석 없이 북한 주민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프로젝트의 계획과 수행에 원조기관의 참여 수준은 제한적이다. 프로젝트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참여율 제고가 필요하다.

〈 데이터 수집과 신뢰성 〉

대북 원조 기관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들은 각 분야에 기준치를 제공하고, 대북 원조 프로젝트의 진전과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인도주의 필요 수준을 입증해줄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UN 기관들은 북한 정부 및 국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 2009/2010년 실시된 주요 평가/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양한 분야의 상황을 조사한 ‘UN 전략 프레임워크 2011/15’
- 2010년 10월, FAO/WFP의 곡물 및 식량안보 평가 조사(CFSAM)를 실시함.
- UNICEF, MICS 조사에 대한 허가를 획득함.
- UNFPA, 2008년 이후 최초로 국가 인구조사를 실시함. 2010년에 결과를 발표함.
- UNFPA, 2010년 인구조사 내용 타당성 검사를 위해 산모 및 아동 건강 조사를 실시함.
- WFP, 6월 중반에 End-of-EMOP 검토를 위한 정보 수집을 완료함. 이는 WFP 원조의 영향, 타당성, 효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됨. WFP는 군 관리, 병원, 아동 기관, 일반 가정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음.
- WFP/ FAO/UNICEF, 2011년 3월에 공동 긴급식량안보평가를 실시함.

- 2011년에는 추가 곡물 및 식량안보 평가 조사(CFSAM)와 영양 평가가 계획되어 있음.

〈 역량 및 인력 〉

UN 기관들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모니터, 평가하기 위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북한측 인력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북한측 인력은 UN 기관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가 파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역량, 역량 보유 및 프로그램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신규 북한측 인력은 초기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팀에 새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 인력을 해고 및 교체할 때 북한 정부는 사전 통보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즉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북한측 인력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UNDP만이 3년 간 본 기관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 언론매체 방문 〉

북한 정부는 언론매체가 인도주의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UNCT는 국내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원을 모금하기 위해 언론매체 방문을 증가시키는 혜택을 보았다. 2010년 10월 북한 정부는 WFP 지역 미디어 자문관이 WFP사무총장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했다. WFP 지역 미디어 자문관은 WFP의 활동 및 최근 승인된 긴급지원 활동 수행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기 위해 2011년 5월에 다시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 내 WFP의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

- 영양강화된 혼합식품의 지역생산을 위한 식품(밀, 옥수수, 쌀, 설탕, 대두 및 식물유)은 WFP가 조달한다. WFP는 국제적 물품 수송 또한 책임지고 있다. 보통 남포, 흥남, 청진항 등의 해상 루트를 이용하지만 식량의 경우 신의주와 남양 등의 철로를 통해 북한에 들어오기도 한다.
- 정부는 해상/철로를 통해 운반된 음식 원료를 도/구 및 지방 식량생산 공장 창고로 다시 운송한다. 정부는 영양강화 식품의 생산에 북한의 노동, 전력 및 저장시설 등을 제공한다.
- 정부는 또한 영양강화식품을 WFP와 정부가 공동으로 승인한 배분 계획에 근거하여 최종 분배 지역과 수혜기관에 전달한다. 최근에 합의된 동의서에 의하여 WFP 직원은 WFP의 식량이 저장되거나 다루지는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WFP 직원은 재고 확인 및 발송을 위해 언제라도 진입지점(항구, 철도)에 있는 창고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WFP 직원은 ‘물품 이송 과정과 분석 체계(COMPAS)’를 설치, 운영하도록 허가 받았으며 이를 통해 각 지역으로의 식량이동 등 모든 분배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북한 정부는 WFP에 WFP의 식량이 배분되는 모든 기관의 목록을 제공하여, 모니터링과 관리를 촉진할 것이다. WFP는 모니터링을 위한 방문 전 24시간 사전 통보만을 제공할 예정이다. 2008년, 선택한 지역에 지원물자가 도착한 이후 WFP가 한 지역, 기관, 가정을 선택하여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무작위 모니터링이 크게 강화되었다.
- WFP의 국제, 국가 담당 팀은 기관 및 가구 단계에서의 식량 배급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함으로써 식품이 원래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직원들은 군 관리들을 인터뷰하고 가정, 기관, 병원, 가구 및 공공배급센터를 방문하며, 이를 통해 WFP 식량 지원이 배급된다. 수혜자컨택모니터링은 가구단위 혹은 아동보육시설 등의 수혜자들이 식량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자의 인식을 취합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통합된 전국 배급 보고서를 정부가 정기적으로 WFP에게 전송한다.
- WFP는 평양에 있는 지역사무소와 더불어 청진과 원산에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 북쪽과 동쪽지역의 외딴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6개의 사무소를 구상하고 있다.
- EMOP에 따라, WFP는 매달 평균 40개의 군을 포함하는 400개의 기관/가구에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하부-군, 기관 및 가구 선택은 선별된 군에 도착한 후 이뤄질 예정이다.
- WFP는 최초로 모니터링, 시장가격 파악 및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종류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에 있는 시장을 방문할 권리를 부여받을 예정이다. WFP는 식량 공급·수요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군, 도 단위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 WFP와 관련 기관들은 최초로 인체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체 측정은 어린아이들의 영양결핍 수준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것이다. WFP는 2011년 안에 최소 한번의 영양학적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북한 정부는 FAO/WFP의 ‘작황 전망과 식량상황 보고서(CFSAM)’ 작성을 위한 2011년 9월/10월 실사 계획에 동의하였다.

2. 기구별 인도주의적 조치

2.1. UN

〈 배경 및 상황 〉

북한의 유엔국가팀은 FAO, UNFPA, UNICEF, WFP, UNDP 및 WHO를 포함한 6개의 상주 유엔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UNDP는 2007년 운영 중단 이후 현재 다시 재개하였으며, 2009년 9월 1일 이후 유엔국가팀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상주조정관실 또한 2009년 11월에 다시 운영을 시작하였다. 상주 유엔기관의 모든 공통이슈(사업, 행정, 안보)에 관한 조정 작업은 유엔 상주조정관실을 통해 이뤄진다. 비-상주 유엔기구와의 연락 또한 상주조정관실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제파트너와의 분야별 조정 및 협의는 유엔기관이 주재하는 유엔 주제별그룹(보건과 영양; 식량안보와 식량지원; 농업; 물과 위생; 성과 데이터, 계획 및 합동구상)을 통해 이뤄진다. 기관 간 비상계획 실무그룹이 만들어져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업무 계획이 2008년에 구상되었으며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다.

상주 공여기관 및 원조단체의 주간회의는 유엔 상주조정관이 주재하며, 기관 간 상임 위원회의에 모든 상주 회원들이 참석한다.

〈 유엔의 전략적 기본틀 〉

UNICEF, UNFPA, UNDP는 2007년에 시작되는 북한에서의 사업주기를 통일하는데 동의하였다. 유엔시스템과 정부 또한 2011~2015년 기간 동안의 유엔의 전략적 기본틀(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 UNSF)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UNSF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경제적, 인도주의적 위기 발생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를 지원하여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달성하는 것이다.

2011-2015 유엔 전략적 기본틀 마련 과정은 끝났다. 유엔 전략적 기본틀의 전반적인 목표는 정부를 도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유엔기관 프로그램 또한 2011년에 시작되는 통일된 사업주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전략적 기본틀은 4개의 전략적 우선순위 분야를 포함한다.

- 1) 사회 발전
- 2) 지식과 개발 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3) 영양

4) 기후변화와 환경

4개의 전략적 우선순위 분야는 각각의 목표 달성이 기타 모든 우선순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직면한 개발 도전과제의 복잡성은 훨씬 더 크다. 성, 지속적인 경제성장, 데이터 가용성, 재난 위험 감소, 기술적인 노하우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과 같은 상호 교차되는 주제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보장을 위해 이미 고려되었다. 유엔 시스템의 북한 협력 프로그램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① FAO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현재 FAO는 아래와 같은 분야에 지원을 제공하는 7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구제역 발생의 조기발견, 대응 및 관리
- 조류독감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 평양근처 소재 산림에서의 송충이 확산 저지
- 요소비료 제공을 통한 곡물 생산 증가
- 감자생산의 보전농업으로의 접근
- 농업분야 개입 조정 지원

역량함양은 기술지원 및 기술자, 학자, 합동 경영전문가들을 위한 훈련 및 해외 연수 기회를 통해 지원된다.

총 예산: 700만 달러

② UNFPA (유엔인구기금)

현재 국가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 여성과 남성의 성과 생식에 대한 건강 정보 및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건강 보조 프로그램
- 국가계획을 위한 통계의 가용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인구 및 개발 전략 보조 프로그램

인구 및 개발 전략 보조 프로그램이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2008년 북한 인구조사 시행부분이다. UNFPA는 정부 통계청과 중앙 통계국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총 예산: 2007~2009년, 835만 달러

③ UNICEF (유엔아동기금)

UNICEF는 건강, 영양, 물, 위생과 보건, 교육과 같은 우선순위 분야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해 왔다. UNICEF는 UN정책에 맞추어 국제기관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일부 지역에만 지원을 제공해 왔다. 유일한 예외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예방접종과 비타민A 제공이다. UNICEF의 일부 개입정책은 5세 이하 아동의 저체중과 영양결핍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ICEF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의 관리 및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주요 업무로는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 안전한 식수 공급, 적절한 위생 및 보건 습관 장려, 아동을 위한 보건 위생 교육과 학교의 전반적인 수준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은 특히나 접근이 어려운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의 부재와 몇몇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의 제한은 UNICEF의 주요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UNICEF와 기타 유엔기관들은 계속해서 계획의 개선을 위해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주장할 것이다. UNICEF는 EPI와 비타민 A 배분을 제외하고 “접근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영양과 관리

UNICEF는 여성, 아동 및 유아의 지속적인 영양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영양 관련 분야에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모성 영양에서 시작하여, 유아 모유수유 방식(전면적 모유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과 적절한 보충적 수유), 다수의 미량영양소 보충 및 지역사회 내 심각한 급성 영양결핍 치료를 포괄하는 이 노력은 국가의 가장 취약한 인구 계층의 생명을 구하는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보 건

UNICEF는 특히 농촌지역의 산모와 신생아 관리 수준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의 아동과 모든 임산부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아동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수 의약품이 제공될 것이다. UNICEF는 또한 임산부를 위한 다른 종류의 의약품(신생아 관리, 산과 및 응급 산과 도구, 산과학도구)도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의는 신생아, 산모 관리에 대해 단계별로 훈련을 받을 것이다. 비타민A 캡슐과 구충제를 6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아동 건강의 날’ 캠페인을 통해 6개월~5세 사이의 170만 명의 아동에게 제공할 것이다.

물, 위생시설

UNICEF는 계속해서 취약계층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중력 공급식 물공급(gravity-fed water supply)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고아원과 보건클리닉에 깨끗한 식수가 보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위생 강화 수업과 더불어 다수의 시범 화장실이 설치될 것이다. 지역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은 물·위생관련 시설의 건설, 수리 및 유지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모니터링, 감시 및 수질 등은 수질 테스트를 위한 화학용품과 같은 필수 소비재와 교육의 제공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UNICEF는 물과 위생도구함을 응급상황 시 우선배치 할 것이며, 응급상황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교육·보건 시설에 물 공급 시스템을 복구할 것이다. 이는 설사로 인한 사망을 물·위생시설·적절한 위생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응급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

UNICEF는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정부와 기타 파트너들이 국가적 긴급상황 준비태세와 대응계획을 마무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부문 긴급상황 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UNICEF는 긴급상황 시 학교와 유치원의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구호품을 사전배치 할 것이다.

총 예산: 1200만 달러

④ WFP (유엔세계식량계획)

1995년 이후, WFP는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긴급한 인도주의적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만의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을 지원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월, 3월에 북한에서 실시된 기관 간 긴급식량안보 평가에 대응하여, WFP는 식량을 활용한 생계지원사업(PRRO)의 운영을 종료하고 2011년 4월 29일에 시작되는 새로운 긴급 운영(EMOP 200266: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을 시작하였다. 2010년 6월 WFP 운영이사회가 승인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영양지원”이 목표이다.

EMOP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시행될 계획이며, 투입 예산은 209,471,671 달러이다. EMOP의 목표는 식량불안 지역에 있는 350만 아동, 여성과 노년층에게 영양지원과 식량배급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EMOP의 활동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1) 여성과 아동을 위한 영양 지원. WFP는 임산부와 모유수유 여성, 고아원과 양육시설의 아동 및 소아병실과 병원의 아동 환자에게 식량 배급을 제공할 것이다. 2)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 WFP는 취약 아동에게 각 요건에 따라 영양강화 식품 및 비스킷, 씨리얼과 식물성 기름을 제공할 것이다. 3) 북동 지역의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 WFP는 약 63개 군에 있는 노인(약 60세)과 7세~10세 사이의 아동에게 가정에 가져갈 수 있는 보충 식량배급을 제공할 것이다. 운영과정에서 WFP는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식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긴급 비축분을 구상하였다. 북한은 최근 4년간 국지적인 홍수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강화된 혼합식품은 정부와의 연계 하에 지역적으로 생산되었다. 13개 지역의 식품시설에서 아동, 여성 및 노년층을 위한 영양가 있는 식품과 비스킷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WFP는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8개 도의 107개 군/구에 식량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WFP는 또한 국제 직원 수를 10명에서 59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국제직원의 약 60%는 현장 모니터링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식량지원이 원래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도달하는지를 평가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영향 평가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WFP가 한국어 가능 직원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접근이 없으면, 원조도 없다”라는 오랜 원칙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WFP 국제 직원은 환적지점 및 WFP 상품이 보관되어 있는 도 및 군 창고를 포함해, 해상 또는 철로를 통한 구호 식량공급망을 모니터링한다. 창고에 있는 어떠한 식량도 국제 직원이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창고의 모든 식량을 파악하지 않는 한 방출될 수 없다.

총 예산: WFP는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활동을 위한 재원 부족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 기금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WFP는 북한의 영양결핍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되는 영양강화 혼합식품 및 비스킷의 지역생산을 우선순위로 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⑤ UNDP (유엔개발프로그램)

집행이사회는 2009년 1월에 6개 프로젝트의 즉각 재개를 승인하였다. UNDP가 재개하려던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 지속가능한 지방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SRED)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개량 종자 생산
- 식량 및 농업 정보 시스템 강화

- 식량안보를 위한 수확 후 손실 감소
- 소규모 풍력 에너지 홍보
- 새천년개발목표(MDG)/북한의 삶의 질 보고서에 관한 통계

UNDP는 또한 2009-2010년 동안 집행위원회장으로부터 북한에서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러한 개입조치들은 환경보호, 원조 조율,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남남협력의 촉진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 실행은 유엔 기구의 직접적 운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국별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WHO (세계보건기구)

북한이 1972년 WHO에 가입한 이후 WHO는 지난 수십년 간 북한의 보건 증진을 지원해 왔다. WHO의 지역사무소가 북한에 2001년 설립된 이래, WHO 협력 프로그램은 전문지식 제공과 보건 정책 촉진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WHO는 보건성과의 정기적, 기술적 접촉을 통해 북한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WHO의 2009-2013 국가 협력 전략은 5개의 주요 전략 우선순위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5개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정책, 계획 & 서비스 전달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보건시스템 강화
- 여성과 아동의 건강 개선
- 지금까지 달성한 업적의 유지 및 전염병 해소
- 비전염병의 발생 증가로 이어지는 위험 요소 방지
- 보건 대비 및 대응의 환경적 결정요인 해결

공동협력 분야에 있어서의 최근의 업적은 다음과 같다:

-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기금 및 GAVI(세계백신연합)과 같은 세계보건개혁에의 진입 촉진
- 팔목한 만한 기술적 진전과 공공 보건 업적 및 전염병 통제에 관한 영향 (말라리아 감소, 결핵의 발견과 치료 사례 증가), 예방접종 보장범위
- 북한 내 H1N1, 홍역과 같은 신종 전염병 해결을 위한 북한 보건성에 대한 지원, 약품·의료진을 위한 보호장비·실험실 용품의 빠른 제공 및 백신 배치 계획, 커뮤니케이션 활동 마련. UNICEF와 기타 기부기금을 동원하여 산모와 아동 건강을 증진시켜 북한 보건성을 유지시키는 독특한 보건 프로젝트는 기타 국가에게 협력적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음. 2010년에만 5,600만 달러의 예산이 들어간 “여성과 아동의

건강 개선 프로젝트”는 현재 4년차에 접어들고 있음.

- 다양한 분야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북한에서의 보건 분야 발전을 위한 중기 전략적 계획(Medium Term Strategic Plan) 마련 및 협력적 과정 촉진
- 원격의료와 인터넷도서관과 같은 대표적 프로젝트를 통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혁신적 지원
- 장학금과 연수 등 역량함양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가정의, 산모, 아동 헬스케어 도우미, 질병 예방 시스템을 위한 증거 기반 트레이닝 패키지의 각색 및 개발
- 안전한 수혈 정책의 촉진, 특히 수혈 및 관련 실험실 서비스의 개선

WHO는 북한에서 연간 10개 도에 있는 100개 이상의 군에서 활동하며, 여기에는 6,000개 이상의 리(里) 병원/클리닉, 일반·산부인과·결핵예방·응급병원과 같은 특수화된 병원을 포함한 모든 군 병원, 도 및 중앙단계 병원, 의대, 전통 의학원, 혈액원 및 실험실이 포함되어 있다. 원격의료 네트워크 개발에는 평양에 있는 김만유 병원 및 이와 연계되어 있는 10개의 도 병원이 포함되어 있다. 가까운 미래에 평양 산부인과 병원과 8개 군 병원이 원격진료 서비스에 연결될 것이다.

2010-2011년 예산: 3천만 달러

⑦ UNEP (국제연합환경계획)

UNEP는 2009년 4월 이후부터 “환경 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한 역량함양과 제도적 지원”이라 불리는 3개년 신탁기금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프로젝트는 2004년 4월 출간된 최초의 북한 환경상태 보고서를 공식화 하는 동안 확인된 우선순위에 기반하고 있다. 프로젝트에는 4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 환경개발센터(EDC)와 국토환경보호성의 역량강화
- 대동강 유역에서의 통합적 수자원 관리
- 환경 교육과 인식
- 친환경적 주택 활성화

북한의 신탁기금 프로젝트 하에서 진행 중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환경개발센터의 능력함양을 위한 니즈평가와 행동계획 준비
- 환경 및 기후변화 전망(ECCO)과 더불어 북한의 2003 환경실태 보고서 업데이트
- 환경개발센터 능력함양을 위한 니즈평가 및 행동계획 준비

신탁기금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UNEP는 오존과기물질의 단계적 폐지 계획 관련 활동

및 북한에서의 몬트리올의정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총 예산: 2009~2012년, 450만 달러

2.2. 적십자

① 국제적십자연맹

북한에서 국제적십자자연맹은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보건&복지: 황해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56개 군에 있는 군 병원과 2030 리(里) 클리닉에 필수 의약품 공급; 약품의 분배 및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전국적 2500 응급치료실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건 및 응급치료; 응급상황 시 공중보건; 보건 전문가들을 위한 보건 교육 및 홍보훈련; 평양과 함흥시에 있는 2개의 혈액센터 재건; 자발적 혈액 기증자 모집을 통한 안전한 혈액 공급 촉진
- 물&위생: 2001년 이후 함경남도, 황해남도,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 있는 183개 리(里)에 물 공급 및 위생시스템 건설; 지속가능성의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술자 훈련; 전염병 방지 센터를 통한 위생 행동 및 수인성 질병에 관한 데이터 수집; 위생 강화
- 재난 관리: 지역사회 재난관리 위원회 설립을 통한 황해남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의 24개 군에 있는 100개 리(里) 지역의 재난 위험 경감, 위험지도 및 재난 대응 계획의 세부화, 나무심기, 제방, 대피다리, 배수시스템, 원천수 보호시설과 같은 경감 구조물 건설; 8개의 온실 건설; 함경남도와 평안남도의 6개 리(里)에 있는 통합 커뮤니티 개발을 통한 생활 개선; 대중인식 캠페인을 통한 도로안전; 교통여경, 교통위반자, 취학아동 및 기타계층을 위한 워크샵; 평양에 있는 20개 교육센터에서 교통사고 시 응급처치 대응; 응급구조서비스; 원산(강원)과 마전(함경남도) 해변에 있는 2개의 구조 팀; 7개의 창고에 27,000개 이상의 도구함과 기타 구호 물품 사전배치.
- 기관 발전: 국가 적십자의 역량 함양; 커뮤니케이션; 자원 개발

2010년 연간예산: 1천 100만 스위스 프랑

② 국제적십자위원회

-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가적십자사, 공중보건부, 국방부와의 협력 하에 재활(복구)센

터 두 곳을 지원함.

- 낙랑 외과 수술실에 필수 장비 및 소비재 제공; 군과 민간 외과 의사를 위한 단단성 형술의 구성
- 한반도 이산가족들 간의 상봉 확대를 위한 남북 적십자 간 대화 창구 유지; 인도주의적 조약의 비준과 국가적 시행 촉진 및 국제인도주의법을 군 훈련에 통합
- 응급처치 능력 개발 및 활동 확산·추적에 있어 국가 적십자사에 지원 제공

2.3. 상주 국제 NGO

① 컨선 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아일랜드): EUPS Unit 3

〈 글로벌 차원의 핵심적 가치 〉

- 정체성: 컨선 월드와이드는 전세계 최빈국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극빈상태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비정부, 국제적, 인도주의적 기관임.
- 비전: 어느 누구도 빈곤, 두려움 또는 억압 상태에서 살지 않는 세상; 모든 이들이 인간다운 삶, 건강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 임무: 극빈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개선시키고, 그러한 개선이 본 기구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도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적 개발 업무에 착수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며, 개발 교육과 옹호활동을 통해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함.
- 핵심적 가치: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항상 우선시 됨; 남녀평등은 개발에 있어 근본적인 필수조건임; 개발은 선물이 아닌 과정임; 참여확대는 더 큰 희생(참여)으로 이어짐; 모든 정부는 빈곤 해소에 책임을 가지고 있음; 응급상황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민주주의는 개발을 가속화시킴; 환경은 존중되어야 함; 바람직한 관리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절차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경험은 최고의 선생임.

〈 북한에서 정의된 핵심적 가치 〉

- 북한에서의 임무: 북한의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이 본 기구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도 현재의 만성적 식량불안과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삶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임.
- 북한에서 본 기구의 운영은 2008-2010 국가 전략에 따라 시행되며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안점을 둬. 프로그램은 UNSF에 의해 결정된 정부정책과 아래의 두개의 주요 부문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된 재원을 통합시켜 실행함.

- 물·환경적 보건 프로그램: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과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공급, 수질검사 및 위생강화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 4와 6의 달성
- 식량, 수입&시장 프로그램: 농장 식량안보에 관한 프로젝트, 재조림과 토지황폐화, 도시농업, 식품가공 및 유기농폐비화를 통한 MDG1 달성

새로운 국가 전략은 2011-2013 기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식량과 물에 기반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대체 에너지 솔루션(가령 태양력, 바이오매스 및 수력)과 통합시키고자 한다.

〈 북한에서의 활동 개요 〉

본 기구는 1998년 북한이 대대적인 홍수 피해를 입은 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하였다. 지원은 기초 헬스케어, 재조림, 어린이집 개발 및 농업지원 분야를 통해 지속되었다. 지금까지의 업무는 응급지원에서 복구로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는 개발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2006년 이후 주요 파트너십은 조선-유럽연합협력조정처(KECCA)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6개 INGOs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지원유닛이 되었고, 이전의 큰 물대책위원회는 북한유럽협력조정기관이 되었다. 지원 시 주요 기술적 문제는 공중보건부, 도시관리부, 토지환경보호부, 농업과학원 및 농업성과 협의하였으며, 주요 사업계획은 직접적 시행 파트너인 군·도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 지리적 포괄범위 〉

2000년대 초반 이후의 활동은 주로 평안남도에 있는 북창, 독천 및 회창군에서 이루어졌다(기타 소규모 농장 현장활동에는 운산과 신양이 포함된다). 2009년 이후 정부의 요청으로 2010년 독천에서 프로그램 철수를 위한 단계적 이전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회창에서 단계적 철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황해북도에 새로운 운영 지역을 개설하였으며, 현재는 신계와 금천군에서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수·위생 분야에서는 마을 및 협동농장에의 물 공급, 폐수 및 하수처리 시설의 위생 및 안전한 배설물 폐기, 위생 강화, 고형오물관리와 재활용 유기농 폐기물을 통한 식수 예찰 및 위생환경에 주안점을 둔다.

식량 분야에서는 겨울철 밀 종자 증식, 통합 저수지 관리 및 경사지농업, 작물 및 식품 가공(저장도 포함) 및 인분의 퇴비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수혜자 〉

2010년 수혜자의 수는 135,000명으로 이들은 4개의 군, 3개의 협동농장에서 일하고 있

다. 과거에는 독천과 회창 등의 군 마을에서 일하는 수혜자의 수가 150,000명에 달하였으나, 협동농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이후 수혜자의 수가 줄어들었다. 향후 연간 수혜자 수는 2012년 이후부터 70,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기금제공 〉

핵심 기금은 ECHO, Irish Aid(아일랜드 외교부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과 컨선 월드와이드에서 조달된다. ECHO는 현재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으며, 기금의 60% 가량은 EU 식량안보(AIDCO) 시설에서 조달된다. Irish Aid는 2008년의 전략적 결정을 바탕으로 인도주의적 구호에만 기금을 제공한다. 즉, 본 기구는 더 이상 Irish Aid로부터 기금을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컨선 월드와이드의 민간 기금은 아일랜드 경제의 침체로 인해 급감하였다.

핵심 기금은 현재 EU와 SIDA(물&위생)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컨선 월드와이드, UNICEF, WHO, 아일랜드은행, 아일랜드가스(Irish Gas) 및 영국대사관으로부터 추가적인 기금을 제공받고 있다. 2005년 이후 기금제공은 2008년 160만 유로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120만 유로로 Irish Aid가 독천 펌프장에 마지막 기금을 제공하였으며, 2010년에는 15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EU와 SIDA로부터 지원이 계속될 경우 향후 3년간 100만 유로의 기금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UK): EUPS Unit 2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개도국의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자원봉사 기구이며, 국제 세이브 더 칠드런의 회원이다. EUPS Unit 2는 2003년 4월에 최초로 북한에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31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복구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후, EUPS Unit 2는 북한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수도인 평양에서 대략 600km 떨어진 지역) 함경남도에서(태천, 신흥, 함흥, 중평 및 용광군) 통합적 환경 보건(IEH)프로젝트와 식량안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 통합적 환경 보건 프로젝트 〉

통합적 환경 보건 프로젝트는 5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정과 주요 사회시설에의 깨끗한 물 공급
2. 청결한 위생시설 및 오물관리제공(마을 파트너십을 통해 두 개 오물 저장통이 있는 화장실 촉진)
3. 지역보건소 재건과 기자재 제공

4. 마을 기술자 훈련 및 건강촉진 훈련을 동반한 어머니그룹 형성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
5. 한국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연합(Korean Family Planning & Mother and Child Health Association: KFMCHA)과 파트너십을 통한 보건 직원 훈련

지금까지 7개 단계의 통합 보건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개 프로젝트는 203,556명에게 혜택을 줄 목적으로 거의 완성단계이며, 그중 81,442명은 17세 이하의 아동이다. 49,000개의 가구는 개선된 상수도 및 지역사회에서 시행되는 위생교육에 연계되어 있다.

아기 출산율 개선을 위해 200명의 담당의사와 60명의 조산사가 위생교육, 감염관리 및 안전한 출산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 또한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지역사회에 가구단계에서 1,500개 이상의 안전한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교육/보건 기관에 500개 이상의 화장실칸막이를 마련하였다. 새로 단장한 38개 클리닉 및 병원은 24시간 흐르는 물과 안전한 위생시설을 가지고 있다.

〈 식량안보 〉

식량안보 프로그램은 북한 주민의 식생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를 물 위생 및 보건과 통합시킴으로써 전반적인 프로젝트 범위를 늘리는 효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영양, 전반적인 위생, 보건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적인 업무는 겨울철동안 취약계층이 겪게 되는 영양적 식량안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겨울철인 근 5개월 동안 짧은 낮시간, 낮은 온도로 인해 신선한 녹색 채소의 생산이 제한적이다. 토양은 겨울철 동안 1m에서 1.5m까지 얼게 되며, 대기 온도는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온실에서 생산을 제외하고는 신선한 녹색 채소의 생산이 불가능하다. 겨울철의 신선 녹색 채소는 북한 주민,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는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의 필수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겨울철의 제한적인 채소 공급으로 인해 봄이 되면 북한인구에게서 비타민 및 미량영양소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본 프로젝트는 북한의 기후상황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유라시아 햇빛 온실 디자인을 개조하였다. 개조된 온실은 남쪽에서 5° 가량 서쪽을 향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더 높으며(4m), 열 저장을 위해 뒤쪽에 증공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곡선형태의 유리 지붕을 통하여 빛 차단을 개선하여 광합성을 늘려 곡물 수확량이 증가되도록 하였으며, 공기순환 개선을 통해 겨울과 여름에도 습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함흥시의 7,875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38개 보호시설은 겨울과 여름철 동안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녹색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175,000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함흥시의 780개 보호시설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으로서 첫째 동안 이 프로젝트를 통해 8개 온실이 건설되었으며, 현재는 총 36개 온실이 건설되었다. 이를 통해 놀이방, 유치원, 고아원 및 초등학교 시설과 더불어 몇몇 결핵/간염 요양원을 포함한 함흥시의 보호시설과, 소아과 병원, 산부인과 병원에 겨울철 동안 충분한 채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함흥시의 인구 800,000명 중에서도, 특히 어린아이들이 겨울철 동안 김치를 제외한 채소를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고단백질(두류), 필수 영양소 및 미량영양소가 들어있는 채소를 도입하기 위해서 평양채소연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온실 운영과 생산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농장 기술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농지를 침수피해와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용광과 종평군의 통합적 집수구역 관리 프로젝트로서, 곡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농지를 보호하고 복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봄부터 여름까지 담수 재배 쌀, 옥수수 및 채소 재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을 늘리기 위한 관개 인프라 복구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재조림을 위한 시설 강화, 토양 및 수자원 보존을 통한 경사지의 안정화도 본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수혜자를 위한 열량적, 영양적 식량안보를 개선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총 43,64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16개 지역사회와 15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 14,160명은 17세 이하 아동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3가지 주요 요소가 있는데 첫째, 집수구역 복구 지원, 둘째, 집수구역 위험 감소, 셋째, 관개 인프라 복구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집수구역 관리그룹과 집수구역 관리/복구 계획이 마련되어 용광과 종평군의 목표 대상 집수구역 지역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군나무 보육시설 개선(county tree nursery facility), 여성과 경사지 노인 농민을 대상으로 한 훈련, 경사지 농장에 대한 지원 제공, 조기경보시스템과 DRR 수치(재난위험 감축: Disaster Risk Reduction) 개발, 관개취수와 저수지의 복구, 학교, 가정 및 기관에 물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③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EUPS Unit 5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는 수용불가능한 여건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 통합을 수호하며, 분쟁, 자연재해 및 불안한 생활 조건을 유발하는 기타 사건들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의 응급상황과 개발을 통합시키는 방식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글로벌적인,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본 기구는 1998년 8월 설문조사 실시를 시작으로 북한에서의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이후 쌀 생산 전용의 4,000ha의 간석지 복구를 포함한 농업개발에서부터 식수 네트워크 및 위생 인프라 복구, 학교와 의료시설의 단열, 2004년 룡천 철도 사고 후 비상 용품 지원, 한국 노인관리 연합과의 파트너십 하에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19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식량안보 〉

현재 북한의 식량 내 단백질과 미량영양소의 부족은 식량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양소 결핍은 특히 0세~6세 사이의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전체 인구의 11%). 통상적으로 아동이 섭취하는 식품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식품의 다양화는 농업기업 부문에 대한 지원과도 관련된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 프로젝트 팀은 현재 함경남도 소재의 2개의 내륙 양식장과 사리원시, 남포에 있는 2개 낙농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식품의 가공, 보존 및 유통 분야에서 통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프로그램에서 수행된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

- 시작 단계에서의 기준치 조사 및 이해당사자 능력 평가
- 통합 양식 생산 모델 설계
- 작부 시스템과 가축관리 모델 설계
- 어류생산의 보존 및 유통을 위한 로지스틱 모형 설계
- 우유와 유제품의 수송 및 유통을 위한 로지스틱 모형 설계
- 어류-곡물-가축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
- 어류-곡물-가축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복구 업무
- 우유-가축생산 및 우유 가공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
- 가축-우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복구 업무

- 로지스틱 모형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
- 아동시설의 급식 방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
- 양식장의 생산투입요소 공급을 지속하기 위한 시범적 소득 창출 활동 시행
- 특정대상의 낙농장에서의 생산투입요소 공급을 지속하기 위한 시범적 소득 창출 활동에 관한 연구
- 정약농장에서의 시범 활동 설치 및 낙농장에서의 그 결과물 재현
- 지식과 투입요소 교환을 위한 협동농장과의 네트워크 설립
- 수산분야와 관련된 통합 양식 방식, 양식장 관리, 수산물 보존 방법 및 소득창출 활동에 관한 훈련
- 양식방법, 축산업과 축산관리에 관한 훈련
- 아동 복지 시설의 직원을 위한 영양교육과 위생방식에 관한 훈련

식량안보 프로그램을 통해 함경남도의 90,000명, 황해남도와 남포의 6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공중위생향상 〉

본 기구는 북한인구의 60%가 사는 도시지역의 물 공급을 복구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북한에서의 도시 거주자는 시골 거주자 보다 수인성 질병에 훨씬 더 취약하다.

42,5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문천은 북한의 동부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대다수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문천의 수자원 공급 공공시스템은 1960년대에 설립되었으나 관리 부족으로 인해 노후화되었다. 본 기구 이전 프로젝트 시행으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주요 부분이 복구되었다. 하지만 마을의 4개 구역 중에서 한 지역은 여전히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프로그램은 문천지역의 식수 부족 해결 및 위생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10월에서 2011년 4월까지 프로그램의 기본 틀 내에서 실시된 주요 활동에는 기준치 조사, 기술적 디자인과 공학적 사양 초안 작성, 변소 건설 및 복구, 폐수처리시스템의 분권화, 폐수 경로 네트워크와 물공급 네트워크의 확장이 포함된다. 또한 복구된 시설 검사, 문천의 기술자 훈련 및 협력창구, 위생 개선 및 물 사용에 관한 도구 편찬도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으로 강원도의 42,500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심리/사회적 지원 〉

본 기구의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은 2008년 이후 기금부족으로 중단되었다.

〈 기부자 전체 명단 〉

- AIDCO-EuropeAid Cooperation Office(유럽원조협력사무소): 식량안보와 WASH 프로그램에 참여
- SIDA-Swedish Cooperation(스웨덴 협력): WASH 프로그램에 참여
- Aide Alimentaire Programme(프랑스정부의 부처간 인도주의적 기금): 식량안보 프로그램에 참여

④ Premiere-Urgence(프랑스)

- 보건 프로그램: 외과기술/위생, 폐기물 관리, 3개 병원/의료팀에 대한 살균/의학장비 제공 및 시설 복구
- 7개 농장에서의 토끼 사육 조건 개선(식량안보 프로젝트)

총 예산:

- 보건 프로그램(2010년 1월~2011년 2월): 375,000 유로(AIDCO)
- 식량안보 프로그램(2009년 1월~2011년 1월): 990,000 유로(AIDCO)

⑤ Welthungerlife(독일)

- 농업: 종자관리, 과수재배, 온실 채소 생산, 도시농업, 농촌 개발
- 임업: 경사지 관리
- 물과 위생: 농촌과 도시지역에서의 식수와 폐수 세정
- 개발협력을 위한 능력 함양
- 재생가능한 에너지(2009년 5월부터)

연간 총 예산: 800~1,000만 유로

⑥ Handicap International(벨기에)

-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KFPD)의 능력함양
- 정부와 국제기구 단계에서 장애인의 위상강화에 관한 로비&인식
- 함흥 정형외과 센터, 평양 정형외과 회복부와 신정호수에 있는 재활센터에 정형외과 도구 및 기술훈련 제공을 통해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 함흥 국가 정형외과 병원과 독천 광산 병원에 지원 제공

- 동림군의 장애/노년 가정에 지원 제공
- 전국 11개 특수학교의 특수 교육 개발, 특히 원산 맹인 학교에 중점.

연간 총 예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750,000 유로
(유럽연합 비정부주체 예산선, 유럽연합 특별 수처 예산선, 벨기에 협력, 스웨덴 협력,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지원함)

⑦ 스위스 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1997년 이후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북한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북한과의 협력 하에 빈곤 감축, 생계개선, 지역과 국가 기관의 능력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2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농업분야로서, 통합양곡관리(옥수수과 양배추를 위한 생물학적 병해충 관리와 윤작)와 경사지 관리 분야가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법, 은행 및 재정, 평화중재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위한 평양 비즈니스스쿨, 연수 및 훈련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개인 및 기관을 위한 능력함양 분야이다.

2010년 연간예산: 250만 스위스 프랑(국외에 거주하는 직원 비용은 제외)

또한 WFP는 매년 이동과 임산부 또는 수유부에게 제공되는 영양강화 식품을 위한 우유 분말을 현물로 지원 받는다.

2010년 연간 분담금: 508만 스위스 프랑(교통비와 입장 비용 포함)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2

2011년 특별기획

북한법 시리즈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¹⁾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과 ‘농장법’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주의농촌문제 테제’²⁾,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양정법’을 참조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한 재산권은 ‘토지법’과 기타 관련 법령의 재산권 규정에 나타나 있다. 이들 법령을 대상으로 각각 법의 목적과 특징, 중요한 조항들, 개정 상황, 관련 기관과 조직, 북한 경제정책이나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공통주제로 해설하고자 하였다. 이번 호에 실리는 법령 해설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농장법’, ‘사회주의농촌문제 테제’, ‘농업법’, ‘인민경제계획법’ 등 5개 법령이며, 나머지는 다음 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1.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 초안

□ 규약의 목적과 특징

- 북한의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 초안(이하 ‘규약’)은 1958년 11월 24일 제정되고 총 55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 북한에서 1958년 8월 협동화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와 경영, 사회주의 생활공동체의 형태를 갖추게 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농업협동조합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의 협동농장이 농업과 농촌의 경제와 생활공동체로서 기초를 형성함에 따라, 그 법적 지위,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조합 기관과 그 사업, 경영과 노동조직,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이 글은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의 박정원 소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최은석 박사의 해설을 요약·정리한 것임.

2) ‘우리나라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법령이 아니라 노동당의 농업강령임.

□ 규약의 주요 조항

- 조합의 정체성: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 하에 근로농민들이 자원적으로 단합하여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을 공동소유로 하고 생산과 분배를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며, 공산주의적 협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합원들의 살림을 풍족하게 만드는 집단적 경리”라고 규정함(제1조).
- 조합의 설립 목적: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과업을 적극 수행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며,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은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을 준비”하는 데에 있음을 명시함.
-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의무는 조약의 규약과 제반규정 준수, 조합결정의 집행 등이며, 권리는 노동하고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의한 보수를 받는 것 등임(제9조, 제10조).

□ 규약의 개정사항

- 1958년 최초 제정 이후 개정사실은 미확인됨.

□ 규약에 나타난 기관이나 조직

- 조합의 최고기관: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제13조)
- 사업
 - 조합규약과 제반규정의 제정 및 수정
 - 당과 정부의 결정·지시의 집행
 - 연간 및 전망계획의 비준
 - 조합의 연말 결산과 수입분배안의 비준 등
- 운용
 -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반수이상, 대표자회의는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참가와 참가자 과반수로 결정(제15조).
 - 조합의 집행기관인 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구성(임기 1~2년)(제16조, 제17조).

□ 경제정책 및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 농업협동화 배경
 - 6·25 전쟁 이후 농촌경제의 복구, 노동력의 집단적·효율적 동원 체제 확립
 - 농촌지역의 정치적 혁명 및 혁명 기지화 토대의 완성
 - 토지개혁에 의한 토지 균등분배와 토지 소유권 약화, 농민의 사회주의적 노동자화
- 농업협동화 수단과 발전
 - 농민의 경제 상황, 사상 수준에 맞는 형태의 협동조합 선택
 - 단계별 확대: 초기 15~20호 규모에서 협동조합의 관리경험이 축적된 후 40~100호 규모의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킴.
 - 단계별 심화: 1958년 농업협동화 완성 이후 협동조합은 농촌의 생산, 유통, 금융, 소비 등의 경제활동 부문을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
- 규약의 효력과 영향력
 - 초기 북한 농업경영체제의 수립과 기반 조성에 있어 원칙과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북한의 농업정책의 발전은 물론 경제정책의 수립과 전개에 많은 영향을 끼침.
 - 북한 경제의 장기침체, 중앙집권적 경제관리체제의 약화에 따라 초기의 의미가 크게 퇴색함.

□ 통일과 관련한 시사점

- 규약은 협동농장의 구성 및 운영 원칙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북한 농업의 사회주의 소유제와 사회주의 분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북한을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북한의 농업생산 여건도 변화함에 따라 북한 협동농장의 초기 정체성은 크게 퇴색함. 제도적으로도 농업부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적용되고 실질적으로도 비공식적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규약이 가지고 있는 규정은 더 이상 잘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통일 과정에서 북한지역 농민의 법률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차원과 신뢰보호의 차원에서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이 원론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의미가 있음.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농장법

☐ 법의 목적과 특징

- 농장법의 제정 목적
 -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장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사회주의 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제1조).
- 농장법의 주요 내용
 - 농장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담보 정리
 - 당국의 농장 지도: 농장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의 기초 위에서 농장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도록 함(제6조).
 - 국가기관의 농장 지원: 당국과 국가기관은 농장에 대해 다방면적인 지원을 강화함(제7조).

☐ 중요 조항

- 농장의 경영활동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국가는 농장의 경영활동을 실리주의 원칙에서 과학화, 합리화 하도록 함(제4조).
- 농장의 관리조직 조항
 - 농장은 정해진 관리 기구에 따라 관리위원장 또는 지배인, 기사장 같은 관리성원을 둠(제21조).
-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 강화 원칙 조항
 - 사회주의 원칙에 맞게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함(제5조).
 -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경영활동을 고도로 현대화, 조직화, 과학화, 합리화하며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를 엄격히 실시함(제22조).
- 농장의 수매참여와 결산분배 조항
 - 농장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에 따라 결산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함(제44조).
 - 농장은 농업생산물의 수매시에 농업생산물을 종자와 식량, 집짐승먹이 같은 것으로 정해진 수량만큼 남겨두고 당국에 수매하여야 함(제48조).

- 북한 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해, 국가예산납부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납일당 정해진 연체료를 물림(제57조).

☐ 법의 개정 내용

- 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채택한 이후 개정 사실 미확인됨.

☐ 법조문상 관련 기관 및 조직

- 농장의 조직 단위
 - 농장은 리를 단위로 조직하며, 필요에 따라 리의 일정한 지역에 농장을 따로 조직할 수 있음.
 - 농장 조직에 대한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과 중앙로동행정 지도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함.
- 관련기관과 조직
 - 관련기관: 농장조직에 대한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한다(제8조). 농장조직승인을 받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에 농장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제12조).
 - 작업반과 분조: 농장은 작업반과 분조를 생산구조와 규모, 농장원들의 생활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반과 분조를 고착시켜야 한다(제16조).
 - 기구: 농장은 농장운영을 위하여 농장원총회,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와 필요한 관리기구를 둘수 있다. 그러나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17조)

☐ 경제정책이나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일반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하였음.
-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의 범위 안에서 분배방법을

개선하여 평균주의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분조(10~20명)의 생산 실적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도

□ 통일 관련 시사점

- ‘농장법’은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농장의 사업을 개선하며 사회주의 농촌정리제도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농장법의 주요 내용은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동소유와 공동이용, 농장에 대한 국가 및 국가기관의 지도와 지원, 농장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농장 생산조직의 구성과 임무, 분조관리제·작업반우대제·독립채산제의 실시 원칙, 사회주의 분배 원칙에 따른 국가납부와 결산분배 실시 등 협동농장의 모든 경영과 생산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랜 경제침체와 식량난으로 인한 현실적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제도의 권능은 약화되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분조 규모의 축소 및 우대제 적용, 생산계획의 하향 조정, 초과생산분의 자유처분권 인정 등 분조관리제에 대한 개선 조치가 발표됨.
 - 2002년에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농업부문에서도 식량가격 현실화, 토지사용료 등 부과,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의 완화 등 법규정의 완화 조치가 취해짐.
- 이 상황에서 북한은 최근 ‘농장법’을 제정하면서 여전히 사회주의 농업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근본적인 농업정책의 개혁은 법 개정으로 뒷받침 된 농업관리체제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 남북 경제통합시 효율적인 농업경영체로 신속하게 전환되는 것이 중요함. 협동농장의 구조개편은 구성원의 총의에 맡기되 국영농장과 국유재산의 처리 방향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음.

3. 사회주의농촌문제 테제

□ 목적과 특징

- 사회주의농촌문제테제는 북한에서 인민경제 2대 부문의 하나로 농촌문제를 자

리매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음.

- ‘농촌테제’에서는 농민문제와 농업문제가 사회주의 혁명단계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폐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만 중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함.³⁾
 -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킬 것을 강조함.
- ‘테제’를 실천한 사례로서 ‘청산리방법’
-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제도를 창조하고 이를 ‘청산리 방법’이라 한 데에서 유래됨.
 - 청산리 정신의 본질을 “혁명 활동의 첫 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 혁명적 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대중지도에 관한 사상”으로 규정함.⁴⁾

□ 중요 내용

-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라는 농업강령 발표
 - 1946년부터 시작된 토지개혁을 거쳐 1958년에 농업의 협동화 작업이 마무리되자, 북한 당국은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명목 하에 1964년 2월 25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라는 농업강령을 발표하였음.⁵⁾
- ‘테제’의 강조 사항
 -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
 -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 농촌에 대한 도시지원을 강화
 -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 수준에 부단히 접근시키며,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

3) 박길성, “북한사회와 농민”, 『北韓研究』, 통권 제8호, 대륙연구소, 1992. 여름호, p.154.

4) 『경제사전(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498 참조.

5) 통일원, 『95 북한개요』, 1995, p.206; 『조선중앙년감』, 1975, p.12 참조; 김일성,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p.203~248; 박영호 외, 「농촌테제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이룩된 위대한 전변」, 농업출판사, 1994.

인민적 소유에 접근시킬 것을 제시⁶⁾

□ 테제 강령의 개정 내용

- 1964년 2월 25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이후 강령 개정 사실은 미확인됨.

□ 관련 기관 및 조직

- 테제의 강령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노동당 제4기 9차 전원회의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을 조직할 것을 결정함.
 - 이 결정에 따라 노동당의 관장 하에 각 군 단위로 ‘농근맹조직위원회’를 편성
- 1965년 3월 25일 평양 대극장에서 ‘농업근로자동맹’ 창립대회가 개최⁷⁾
 - 농업근로자동맹은 모든 협동농장원(농민)과 농업부문 종사자들을 가맹원으로 구성
 - 농업근로자동맹은 가맹원들에게 당의 지도노선과 정책을 교양하고 당과 농업부문 종사자들을 연결하는 일을 수행

□ 경제정책이나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 ‘테제’의 강령에 의거 농업정책으로서 ‘주체농법’ 창시
 - 1970년대에 들어 농어부문에서 주체사상에 상응하는 주체농업을 주창함.⁸⁾
 - 주체농법의 주요 내용은 과학농법, 집약농법, 농업의 공업화 및 현대화⁹⁾
-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의 기업적 방법 지도관리 제시
 - 대안의 사업체제: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형태¹⁰⁾

6) 박정동, “사회주의 농업체제 개혁에 관한 사례연구 - 중국과 북한의 비교 -”, 『研究資料 99-10』, 韓國開發研究院, 1999. 6, p.15.

7) 北韓研究所, 『北韓總覽(1945~1982)』, 1983, pp.270~271 참조; 新東亞, 『金正日 北韓大百科』, 東亞日報社, 1995年 1月號, p.320 참조.

8) 박영호 외, 「농촌테제의 광희로운 빛발아래 이룩된 위대한 전변」, 농업출판사, 1994, p. 211 참조.

9) 「경제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85, p.420.

10) ‘대안의 사업체제’란 1961년 12월 김일성이 생산실적이 부진했던 대안전기공장의 현지지도를 통하여 직접 제시한 공장경영관리 방식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지배인 관리체제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관리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공장관리에서 군중노선의 원칙이 강조되어 낡은 자본주의적 경제관리 방법의

-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농촌정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고 규정

○ ‘농촌테제’ 속의 북한 농업과 농민, 북한 농촌문제의 해결 방안

- 농업과 농민: “농민은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역량이다. 로동계급의 영도 밑에 로농동맹을 부단히 강화해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 수 있으며,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경제의 2대 부문의 하나이며, 그것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공급” 하는 것임을 강조함.¹¹⁾
- 농촌문제의 해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기본과업으로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고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업을 공업화·현대화하고 농민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며 단일한 전면 소유제 확립을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것을 실현방도로 농촌문제 해결의 실현조건”으로 뒀을 밝힘.¹²⁾

□ 통일 관련 시사점

잔재를 청산한 경제관리형태라고 한다.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1991, p.599; 즉, 북한은 당초 공업관리에 있어서 지배인 유일관리체제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지배인이 관리·운용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유일관리체는 관료주의와 기관본위주의와 같은 개인의 독단과 주관이 개입될 뿐만 아니라 기업관리에 하부 직원의 직접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결함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제도이다. 통일원, 「95 북한개요」, 앞의 책, p.127.

1962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책임 아래 생산활동을 관리하며, 공장당위원회에는 당간부, 행정간부, 지배인, 기사장, 기술자, 근로자(생산핵심당원)등이 참여한다. ②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 하에서 계획작성, 생산 및 기술지도 사업은 기사장의 지도하에 집중적으로 수행되며 자재공급사업, 후반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및 경제활동은 지배인의 지도하에서 통일적으로 수행된다. ③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로서 각 부 관리국→공장·기업소→직장→생산현장의 순으로 생산을 조직·지도하며, 상급기관이 자재를 책임 공급한다. 그런데 여기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직장은 생산단위 조직의 하나인데, 규모가 큰 공장·기업소의 경우 그 아래에는 수 개의 직장이 있고 각 직장은 다시 수 개의 작업반으로 나뉘어진다. 이계만, “北韓經濟制度的 憲法的 基礎”, 「統一問題研究」 제5권 1호, 1993, pp.276~277.

11) 박길성, “북한사회와 농민”, 「북한연구」 통권 제8호, 1992. 여름호, p.158 참조.

12) 김일성, 「주체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p.203~232 참조; 박기순, “농촌테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 「주체의 나라(2)」, 평양출판사, 1989, p.1 참조.

- 북한은 끊임없이 전인민적 소유제로의 농업관리조직 개편을 시도하고 있음. 1994년 2월 북한이 ‘테제’ 발표 30주년을 맞아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농업대회’에서 김일성은 ‘서한’을 통해 협동농장들을 전인민적 소유 형태인 ‘농업연합기업소’(또는 국영농장경영위원회)로 점차 전환시켜 농업의 공업화를 실현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 이는 동구권,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및 농업개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임.¹³⁾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과 제도에 따라 협동적 소유가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고 있음. 남북 경제통합 준비에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농업법

□ 법의 목적과 특징

- 북한 농업법의 제정 목적
 - 농업법은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자원의 보호와 농업생산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농촌 경리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농업법의 구성
 - 제1장과 제6장은 각각 ‘농업법의 기본’과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제2장부터 제5장은 ‘농업생산’,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농업자원의 보호’, ‘농업생산물의 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 농업법은 북한 농업부문의 기본법적 성격
 - 농업법은 농업발전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포괄하고 농업의 모든 분야를 규제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기본법임을 강조함.
 - 농업법은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국영농장과 협동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농장법은 협동농장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13) 통일원, 「95 북한개요」, pp.156~158.

□ 중요 조항

○ 농업에 대한 규정

-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경제의 2대 부문의 하나이며,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공급함.
- 북한 농업정책은 ‘협동경리’의 ‘국영경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도통제(제6장)

- 일반적인 ‘지도사업과 감독통제사업(제68조)’, ‘기업적 방법으로 관리운영(제71조)’, ‘국영농목장과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기업소의 독립채산제’,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제72조),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른 분배’(제74조) 등을 규정함.

○ 분조관리제 운영

- 분조관리제: 협동농장의 분조를 단위로 하여 노력, 토지, 부림소, 농기구 등을 고정시키고 계획을 준 다음 그 수행 정도를 평가하여 분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제도
- 분조: 협동농장의 작업반 아래 조직되어 있는 생산 및 노력조직의 하부 단위

○ 농업의 경리형태

- 국영경리와 협동경리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
- 국영경리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며 협동단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경리를 점차 국영경리로 전환

□ 법의 개정 내용

○ 농업 관련 법령의 채택 및 수정

- 북한은 농업법 외에도 농업 관련 법령¹⁴⁾을 최근 새로 채택(입법)하거나 수정보

14) 북한의 농지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는, ○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1946. 3), ○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1946. 3), ○ 토지소유권증명서 교부에 관한 세칙(1946. 5), ○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1946. 8), ○ 지하자원, 산림, 수역 국유화령(1947. 12), ○ 산림관리에 관한 규정(내각결정 제2호, 1950. 1), ○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1958), ○ 토지관리규정(1960. 7), ○ 토지법(1963, 1977, 1999), ○ 민법(1990), ○ 토지임대법(1993, 1999, 2008. 8), ○ 부동산관리법(2009. 11), ○ 농장법(2009. 12) 등이 있다.

북한의 농업조직 및 관리체계에 관한 법령으로는, ○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1949. 12), ○ 내각 임산국 산하 각 기관에 관한 규정(임산국 명령 제1호, 1950. 1), ○ 지방주권기관 구성법(1954. 10), ○ 농업협

충(개정)하는 등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새로 채택한 농업관련 법령

- 농약법(2006년 8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39호로 채택)
- 농장법(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채택)
- 노동정량법(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채택)

○ 수정·보충한 농업 관련 법령

- 농업법은 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호로 채택된 이후, 2002년 6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3호로 수정보충(1차), 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2차)되었음.
- 양정법은 1997년 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4호로 채택된 이후,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1차), 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2차), 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3차)되었음.

□ 법조문상 관련 기관 및 조직

○ 중앙 농업지도기관

- 군농업협동조합(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 내 농기계작업소, 농기계공장, 관개관리소, 자재공급소, 수의방역소 등을 직접 운영
- 방역위원회: 내각은 병해충 발생 지구에 방역위원회를 설치 운영
- 농업과학원: 평양 농업과학원 산하에 해주·송도원·경성·혜산 등 주요 농업 생태지역에 14개 분원, 벼·강냉이·남새연구소 등 30여 개의 연구소에서 연구사

동경영의 강화 발전에 대하여(1954. 3), ○ 농업협동조합 조직적 강화대책(1954. 11), ○ 농업협동조합기 준규약(1958. 11), ○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여 그의 규모를 확장할 데 관하여(내각결정 제125호, 1958. 12), ○ 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 조직할 데 대하여(내각결정 제157호, 1961. 12), ○ 사회주의 농촌문 제 테제(1964. 2), ○ 토지법(1963, 1977, 1999), ○ 환경보호법(1986, 2000. 7) ○ 민법(1990), ○ 사회 주의상업법(1992. 4), ○ 인민경제계획법(1999. 4), ○ 양어법(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제2222호, 2001. 4), ○ 산림법(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제2626호, 2001. 10), ○ 과수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정령 제3453호, 2002. 12), ○ 재정법(2004. 4), ○ 농약법(2006. 8), ○ 국가예산수입법(2005, 2007, 2008), ○ 물자소비기준법(2009. 11), ○ 수출품원산지법(2009. 11), ○ 농업법(1998, 2002, 2009. 11), ○ 양정법(1997, 1998, 2005, 2009. 11), ○ 노동정량법(2009. 12), ○ 농장법(2009. 12) 등이 있다.

업 추진

- 산림과학분원 : 산하에 산림경제학연구소, 경제림연구소, 산림보호학연구소, 산림과학연구소를 두고, 해산, 함흥, 해주, 웅진, 화평 등 5개 지역에 시험장을 설치
- 이 외에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 통일 관련 시사점

- 북한 ‘농업법’은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자원의 보호와 농업생산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농촌정리 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농업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북한 농업부문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첫째, 농업법은 농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음.
 - 둘째, 농업법은 다른 농업 관련 법령에 담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법률임.
 - 셋째, ‘농장법’은 주로 협동농장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인데 비해 ‘농업법’은 국영농장과 협동농장 전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북한 농업법과 관련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시 참고해야 할 사항
 - 농지의 소유관계를 제외하면 농업법에서는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이 분리되지 않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을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임.
 - 통일 후 농장구조 개편 방식 선택에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한의 ‘농업농촌발전기본법’에 근접시키는 방식으로 점진적 개정이 필요함.

5. 인민경제계획법

☐ 법의 목적과 특징

- 인민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비준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사회주의경제의 계획경제 원칙을 법제화하고 경제계획 작성을 제도화
- 국가 운영에 있어서 계획 및 실행과정의 법제화를 도모
- 인민경제계획법은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처음 정식으로 채택된 법령임.
- 제한적이나마 대외 경제개방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면서 대내 경제부문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

☐ 중요 조항

- 사회주의경제 원칙의 고수
-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원칙을 강조하고, 자립적 민족경제토대를 강화함(제2조).
-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 밑에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정책이며, 인민경제의 통일적 장악과 유일적 계획에 의한 관리운영 원칙을 규정함(제3조).
- 인민경제계획 사업의 원칙
- 인민경제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 관리 실현의 기본 수단임(제4조).
- 생산자 대중과 토의하여 작성된 계획을 생산자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인민경제계획사업의 중요 원칙임(제5조).
-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사회주의 계획사업 체계이며 방법임(제7조).

☐ 법의 개정 내용

- 인민경제계획법은 199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제정되고, 2001년 5월, 2009년 8월, 2010년 4월 6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8호로

수정보충) 개정됨.

- 2010년 4월 6일 인민경제계획법은 계획경제의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7개 조항을 개정함.
 - 국가의 통제를 완화했던 2001년 5월 인민경제계획법, 그리고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확연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 2010년 개정안은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
 - 2001년 개정에서 삭제되었던 예비숫자 및 통제숫자 등 과거 계획경제의 규율을 강조하는 표현이 재등장함.

☐ 법조문상 관련 기관 및 조직

-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 인민경제계획 작성을 위한 조직계획서를 작성(제10조~제12조).
- 내각과 지방정권기관: 인민경제계획을 최고인민회의 또는 지방인민회의의 심의에 제기(제22조).
-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인민경제계획 실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제33조).

☐ 경제정책이나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 지속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현을 강조
 -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실패를 계획경제 원칙의 포기에서 찾고 있음.
 - 이 법의 제정은 북한 경제의 현실이 과거의 통제와 계획을 벗어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됨.
 - 국가경제에 대한 통일적 관리·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체제의 안정을 구하려는 배경이 있음.
- 이 법에 따른 농업정책의 변화와 개선은 없음.

☐ 통일 관련 시사점

- 인민경제계획법은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일면 실리를 도모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 법칙과 현실 조건을 고려하여 과학성·현실성·동원성이 보장된 경제계획을 수립해야 함.
- 국가는 경제사업에서 실리도 중시해야 함.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 규정의 실리적 태도는 개정을 통해 약화되고 있음.
- 인민경제계획법은 통일 전 남북한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 단계에서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추진 방안 마련에 참조할 수 있음
- 통일 과정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을 참조하여 개정이 필요함.

부 록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초안)

1958년 11월 24일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 작성위원회

총 칙

제1조 조합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하에 근로농민들이 자원적으로 단합하여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을 공동소유로 하고 생산과 분배를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며, 공산주의적 협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합원들의 살림을 풍족하게 만드는 집단적 정리이다.

조합은 일체 사업을 민주주의원칙에 의하여 관리운영한다.

제2조 조합의 목적은 로동계급과의 동맹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과업을 적극 수행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완성하며, 점차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을 준비하는 데 있다.

제3조 조합은 국가인민경제계획에 립각하여 농업생산을 주로 하면서 부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상품류통, 신용 및 교육, 문화, 보건사업을 옹계 관리운영하여 자기의 정리를 부단히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킨다.

제4조 조합은 조합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의 집단주의적 도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공산주의를 지향하여 간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토지 및 생산수단

제5조 조합은 통합된 모든 토지와 그에 속한 년년생 작물을 공동소유로 한다.

조합은 경지면적을 부단히 확장하며, 경지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절차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조합은 조합원용 채소전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공동소유토지 중에서 매 농호당 30~50평의 터밭을 줄 수 있다.

제7조 조합은 각종 생산수단들과 시설 및 설비품들을 공동소유로 하고 그를 계속 증대시키

며 철저히 보관관리한다.

조합은 트랙토르와 화물자동차를 위시한 현대적인 농기계 및 운수수단들을 소유한다.

조합원 농호들은 자기터밭을 다루며 가축, 가금류를 사양관리함에 필요한 약간의 시설 및 소농기구들을 가질 수 있다.

제8조 농촌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조합의 규약을 승인하고 가입금을 내는 자는 조합원으로 될 수 있다. 과거 지주, 친일파 등 정치적 불순자는 후보 조합원으로 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 조합과 사회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일정한 기간 로력을 통하여 개조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조합원으로 될 수 있다.

조합가입금은 매 조합원에 대하여 100원으로 한다.

조합가입은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 대표자회의(이하 총회 또는 대표회의라 함)에서 결정된다.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제9조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원은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의 결정과 명령들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며 조합의 규약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 2) 조합원은 생산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노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작업을 질적으로 보장하며 노동생산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조합원은 국가 및 조합공동재산을 소중히 관리하여 그를 침해 손상하는 현상과 투쟁하여야 한다.
- 4) 조합원들은 노동계급과 동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하에 항상 당과 인민정권을 옹호하며 전체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농촌의 온갖 착취적·비근로적 현상 등 일체 자본주의적 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혀 적들의 온갖 파괴, 암해활동과 반혁명분자들의 준동을 미연에 방지하여 그를 폭로 분쇄하여야 한다.
- 5) 조합원은 자체의 정치, 문화 및 기술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조합원 호상간에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적 도덕을 지켜야 한다.
- 6) 조합원은 문화적인 향토건설사업과 보건위생사업에서 모범이 되어 자기의 집과 부락을 잘 거두는 데 일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경영에서 노동하며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의한 보수를 받는다.
- 2) 조합원은 조합 내에서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의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을

가진다.

3) 조합원은 조합사업개선을 위한 건의와 비판을 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하는 조합원은 공동소유로 된 생산수단과 공동재산을 분할받지 못하며, 당년에 번로력일에 대하여는 연말 결산시 또는 전분로 분배를 받는다.

제11조 후보조합원은 조합 내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결의권을 가지지 못하며, 그 이외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국가의 법령과 조합의 규약 및 제반규정을 계속 지키지 않거나 조합발전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조합원에 대해서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결정으로서 후보 조합원으로 내리우거나 제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시·군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명처분을 받은 자가 자기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도인민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조합은 자기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제반규정을 위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의 정도에 따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결정으로서 견책, 경고, 엄중경고, 책벌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의 기관과 그의 사업

제13조 조합의 최고기관은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다.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규약과 제반규정의 제정 및 수정
- 2) 당과 정부의 결정·지시의 정확한 집행대책과 중요한 당면문제의 토의
- 3) 생산·건설·분배·상품유통·신용·교육·문화·보건사업에 대한 연간 및 전망계획의 비준과 그의 정확한 집행대책의 토의
- 4) 조합의 연간 결산과 수입분배안의 비준
- 5) 공동축적 사회문화펀드(기금) 및 원호펀드 규모의 설정, 원호대상자들의 결정
- 6) 작업반 편성, 작업반별 생산과제 및 자재소비기준의 비준
- 7) 등급별 작업정량, 노동보수기준, 로력일의 결상 및 삭감과 중대 제기준의 설정
- 8) 농기계 임경소 및 기타 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비준
- 9) 관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사업의 청취 토의
- 10) 관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그 위원장들의 선거 및 소환
- 11) 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일꾼들에 대한 비준
- 12) 조합원·후보조합원의 가입, 탈퇴, 책벌 및 제명의 결정

13) 조합기본자산의 취득과 그 처분범위의 설정 및 조합재정상태에 대한 보고 청취

14) 조합의 기타 기본문제들

제14조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는 관리위원회가 월1회 이상 소집하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소집한다.

제15조 총회는 조합원총수의 반수 이상, 대표자회의는 대표자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함으로써 성립되며, 그의 결정은 참가자의 반수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대표자회의의 대표자선출비율은 관리위원회가 규정하되 대표자의 총수는 전체조합원수의 30%를 넘어서야 하며, 그의 선거는 6개월 또는 1년에 1차씩, 작업반 및 기타 단위들에서 실시한다.

제16조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는 조합사업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2년을 임기로 하는 관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을 직접 선거한다.

관리위원회의 성원은 15~25명으로 한다.

제17조 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집행기관이며 조합사업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앞에 책임을 진다.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 1) 조합의 규약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며 조합사업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한다.
- 2)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를 소집하며 정기적으로 자기사업정형을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앞에 보고한다.
- 3) 관리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선거하며, 부기장(부기원), 생산지도원, 통계원, 창고원, 작업반장, 분조장, 민주선전실장, 보건일군, 고아원, 상점 일군, 전문가, 기술자 등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8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월 2회 비상관리위원회를 소집하며, 조합의 결정을 집행하며, 작업반 및 기타 단위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하며, 조합 앞에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며, 국가와 사회기관들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제19조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리위원장의 사업을 도우며, 관리위원장이 없을 때에 그의 사업을 대리한다.

제20조 부기장(부기원)은 규정에 의하여 부기계산을 진행하며, 조합재정과 재산을 관리하며, 관리위원장의 지시를 집행한다.

조합의 일체 현물화폐의 수입지출에 대하여서는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기장(부기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21조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는 1~2년을 임기로 하는 5~15명의 감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중에서 감사위원장을 직접 선거한다.

조합관리위원회의 위원들과 부기·창고·상점 일군들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천거될 수 없다.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 1) 조합관리기관들의 조합규약과 제반규정의 준수정형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집행정형을 감독하며, 조합원들의 신소청원을 제때에 처리한다.
- 2) 조합의 국가의무수행정형과 조합재산의 보관관리, 재정부기계산, 로력일의 평가, 상품류 통·신용·보건·후생시설 등의 일체 경리활동정형을 검열하며, 국가 및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일어난 사건들을 제때에 처리한다.
- 3)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특히 연간 정형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앞에 보고한다.

경영조직

제22조 조합은 경제활동을 국가의 인민경제적 수요에 상응하게 계획화한다.

조합은 전망계획과 연간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자기경리를 계획적으로 운영한다. 조합에서 작성한 계획은 시·군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는다.

조합은 연간계획에 기초하여 작업반 및 기타 단위에 계획과제를 시달린다.

제23조 조합은 자연경제적 조건을 옳게 리용하여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킨다.

- 1) 조합은 국가적 수요와 지대적 조건에 적응하게 각종 알곡작물을 위주로 하고 그의 재배를 계속 발전시키며, 저류채소 및 목화, 아마, 담배, 호뿌 등 공예작물과 유지작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그의 수확고를 계통적으로 제고한다.
- 2) 조합은 공동축산에 기본을 두고 그를 확대발전시키며 이에 개인 부업축산을 결합시켜 축산물생산을 부단히 증가시킨다.
조합은 사료기지를 공고히 구축하고 돼지를 대대적으로 사육하여 육류를 많이 생산하며, 조선소에서 젖을 짜는 동시에 그를 젖소로 개량하여 우유생산을 증가시키며, 가금을 많이 사육하며 밀원지를 조성하여 양봉을 더욱 발전시킨다.
조합은 조합원 농호들로 하여금 공동경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3두까지의 비육돼지와 약간 수의 닭오리, 토끼 등을 기를 수 있다.
- 3) 조합은 뽕밭 직장량 및 피마주 재배면적을 확정하고 그를 잘 가꾸어 채엽량을 높임으로써 고치생산량을 부단히 증가시킨다.
- 4) 조합은 과수원을 확정하고 비배관리사업을 개선하여 그 수확고를 제고한다.
- 5) 조합은 조합림을 조성하고 그 보호관리를 잘하여 신체의 응제를 자체로 해결하며, 지정된 국가림에 대한 조림보호사업을 담당 수행한다.

6) 조합은 호수, 저수지, 하천 및 논밭 등을 리용하여 담수양어를 적극 발전시키는 동시에 해안지대에서는 어로양식, 가공 등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킨다.

7) 조합은 농업생산물의 가공, 건제생산, 철공소, 목공소 등을 조직 경영하며, 기타 부업 생산을 광범히 조직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다.

제24조 조합은 노동생산능률을 제고하며 내부 예비를 동원리용하여 절약제도를 확립하며, 생산물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킨다.

제25조 조합은 현물로 조성된 공동 폰드(기금)와 일체 여유량곡을 국가에 판매하여 공예작물, 유지작물, 축산물, 잠견, 과일, 채소 등 농업생산물들에 대한 국가수매 과제를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조합은 국가 및 조합생산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운영한다.

제26조 조합은 상점을 경영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과 수매사업을 수행한다.

제27조 조합은 신용부를 두고 조합원들의 생활향상과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부사업과 저금사업을 조직 실시한다.

제28조 조합은 학교, 탁아소, 유치원, 구락부, 휴양소, 진료소, 민주선전실 등 교육·문화·보건시설들과 공동식당, 세탁소, 재봉소, 목욕탕, 리발소 등 후생시설들을 관리운영한다.

제29조 조합은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를 위시한 농촌에서의 기술혁명을 수행한다.

1) 조합은 농업에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높은 수확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판개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며 치수사업을 강화하는 등 자연개조사업을 수행한다.

2) 조합은 자연·지리적 조건에 상응하게 중소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며 농촌의 전기화를 실현한다.

3) 조합은 국가의 기술적 지도와 방조 밑에 트랙토르 및 자동차를 위시한 선진 농기계를 적극 도입하여 기계화 작업반을 운영한다.

4) 조합은 포전작업의 기계화와 경지의 합리적 리용 및 그 보호를 위하여 토지건설사업을 진행한다.

5) 조합은 포전의 토양조건에 적응하게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확립하며 각종 비료를 다량소비하여 토지의 비옥도를 계통적으로 높인다.

6) 조합은 선진영농기술과 농업과학이 달성한 제반 성과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며 토지리용률을 제고하고 집약적 영농방법을 적극 발전시킨다.

조합은 시험포전을 설치하여 다수확 시험사업을 계통적으로 진행한다.

제30조 조합은 각종 생산시설과 교육·보건·후생시설 문화주택을 건설하여 사회주의적 문화농촌을 건설한다.

로동의 조직, 보수 및 규율

제31조 조합에서 로력조직의 기본형태는 고정작업반이다.

- 1) 조합은 생산부문의 구성과 그 규모, 조합원들의 기술·기능 정도, 거주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인원으로 작업반을 조직하고 모든 작업에서 책임제를 실시한다.
- 2) 작업반에서는 일정한 토지, 력축, 농기구와 어선, 어구를 위시한 각종 생산 도구, 경영건물 및 생산시설을 고착시킨다.
- 3) 작업반에는 그 규모와 작업의 범위, 포전 및 거주조건에 따라서 적당한 성원으로 조직된 몇 개의 분조를 둘 수 있다.

제32조 작업반장은 조합의 결정과 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반 사업을 직접 지도하며 맡겨진 생산과제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작업반장은 작업반의 생산수단을 옹계 관리리용하여 작업반 성원들이 수행한 작업과 생산정형 및 수득한 로력일을 정기적으로 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3조 조합은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작업을 적기에 보장하기 위하여 년간에 의한 시기별 또는 월별 작업계획을 세운다.

작업반은 년초에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규정한 로력일수와 계획을 정당한 리유없이 초과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그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비준을 받아 처리한다.

조합은 계절적으로 부족되는 로력과 특수한 기술·기능이 요구되는 때에는 외부로력을 채용할 수 있다. 채용한 외부로력에 대한 보수는 로력일에 의한 분배 또는 임금으로 지불한다.

제34조 조합의 작업은 작업정량에 의하여 도급제를 실시하여 로동의 결과는 로력일로 평가 계산하여 동일한 로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준다.

제35조 관리위원회는 등급별 작업정량표를 매년 제정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비준을 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로력일을 계산한다.

제36조 관리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조합원이 번 로력일을 공시하며, 조합원들이 1년에 번 총로력일을 결산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가 있기 전 2주일 전에 공시한다.

제37조 조합관리일군들의 보수는 종합경영리에의 규모, 담당한 직무사업능력, 사업년한 및 사업성과에 따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가 결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8조 조합경영리에 있어서 로동은 매개 조합원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조합은 1년 동안에 남자는 230로력일, 녀자는 180로력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벌어야 한다. 임신부와 한 돌 미만의 어린이를 가진 모성은 130로력일 이상을 벌어야 하며, 오랜

병이나 기타 사고가 있는 조합들에 대하여서는 경한 부문에서 일하게 하여 그의 의무로
력일을 총회 또는 대표회의에서 따로 결정한다.

제39조 산모에 대하여서는 산전, 산후 각 1개월간을 작업에서 쉬게 하며, 그동안은 그가 지
난 해에 번 하루 평균로력일의 70%를 매일 계산하여 준다.

조합은 자기의 로동의무를 충실히 선행한 녀성조합원들에게 그의 요구에 의하여 매월 3
일까지의 유급휴가제를 실시한다.

제40조 작업반들에서 작업을 옳게 조직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자재를 절약하고 부과
된 생산과제를 초과완수하였을 경우에 조합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비준을
받아 그에 해당하는 로력일을 가산하여주며 또한 우대한다.

작업조직을 잘못하였거나 작업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결과 부과된 생산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작업반에 대해서는 그 성원들이 번 총로력일의 1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제41조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유없이 공동작업에서 리탈할 수 없다.

조합원들은 자기가 한 작업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지며 로동규률을 위반하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으로서 로력일을 계산
하지 않는 제작업을 시키거나 5 로력일까지 삭감할 수 있다.

재산관리 및 수입문제

제42조 조합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비준된 연간재정계획을 집행하며 부기
제도를 확립하고 재정규률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 조합의 모든 공동재산은 해당 작업반장 및 창고원과 그의 취급자에 이르기까지 보
관책임제를 실시하며 대장에 정확히 기장정리하고 이를 수시로 실시확인하여야 한다. 조
합의 현금자산은 거래은행에 예금한다.

제44조 조합수입의 분배는 현물 및 현금 총수입 중에서 우선 국가납부, 종자, 사료, 비료,
기타 생산적 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입 중 15~30%의 공동축적фон드(기금), 3~7%의
사회문화фон드 및 필요량의 원호фон드(기금)을 조성하고 그 나머지를 로력일에 따라 조합원
들에게 분배하는 원칙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조합 수입이 많아지고 투자가 더 많이 요구
될 때에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공동축적фон드 및 사회문화фон드를 더
높은 비율로 설정할 수 있다.

제45조 조합의 불분할фон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조합원들에게 분할하여 줄 수 없는
조합공동경리의 물질적 기초이다.

불분할фон드는 공동소유로 된 고정재산들과 조합원들의 가입금으로서 형성되며 매년 조성
되는 공동축적фон드에 의하여 부단히 증대된다.

공동축적폰드는 조합의 확대재생을 위한 각종 생산수단의 구입과 생산적 건설 및 문화주택건설 등에 쓴다.

제46조 사회문화폰드는 간부양성, 조합이 운영하는 학교·유치원·탁아소 및 편의시설 등의 경영, 조합원들의 휴양·보건위생 및 문화사업, 조합로동과정에서 부상당한 환자의 치료 등에 쓴다.

제47조 원호폰드는 로력이 부족한 애국렬사 유가족과 인민군 후방가족을 위시하여 로동능력상실자, 년소자 및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한 자 등의 살림과 그 자제들의 교육비를 도와주는 데 쓴다.

애국렬사 유가족과 인민군 후방가족에 대해서는 조합의 평균생활수준을 반드시 보장한다.

제48조 조합은 조합경제형편과 조합원들의 생활상 요구를 고려한 기초 우에서 로력일에 의한 현물 및 현금전불제를 실시한다.

현물전불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분배된 량의 30%까지, 현금은 60%까지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49조 조합의 연간결산서는 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비준을 받는다.

정치문화사업

제50조 조합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기향토와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모든 재능과 충성을 바치며, 당과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경각성 있게 수호하며, 사회주의적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조합원 호상간의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도록 공산주의사상으로 부단히 교양한다.

조합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권을 조합원들에게 일상적으로 해설 선전하며, 조합원들이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 동원되도록 한다. 조합은 농촌에서 일체 낡은 유습과 개인 리기주의, 착취 및 비근로적 현상,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새로운 것을 적극지지 발전시킨다.

제51조 조합은 농촌에서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시킨다.

조합원들로 하여금 중등 이상의 지식수준과 높은 기술·기능수준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등의무교육과 기술의무교육의 실시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근로자학교를 운영하며 조합원들 속에 과학지식을 보급시킨다. 조합은 구락부, 민주선전실 및 각종 문화씨클을 운영하여 군중문화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여 체육사업을 발전시켜 조합원들의 체력을 향상시킨다.

조합은 보건위생사업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건강을 도모하며, 마을과 향토를 아담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한다.

제52조 조합은 조합 내에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한다.

제53조 조합은 사회주의 중산경쟁을 조직전개하여 집단적 혁신운동을 더욱 발전시킨다.

부칙

제54조 조합은 …조합이라고 부르며 …도 …군(시) …리에 둔다.

제55조 조합규약은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토의결정한 후 시·군인민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채택

제1장 농장법의 기본

제1조(농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은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장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농장의 토대강화원칙)

농장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여 농업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사회주의농업기업소이다. 국가는 농장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자립성을 강화하며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3조(농장의 조직원칙)

농장의 조직은 농장을 새로 나오거나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거나 없애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농장의 조직기준을 바로 정하고 농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도록 한다.

제4조(농장의 경영활동원칙)

농장의 경영활동을 바로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농장의 경영활동을 실리주의원칙에서 과학화, 합리화하도록 한다.

제5조(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강화원칙)

국가는 사회주의 원칙에 맞게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6조(농장에 대한 지도원칙)

농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농장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농장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농장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농장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7조(농장에 대한 지원원칙)

농장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국가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농장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농장의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2장 농장의 조직

제8조(농장조직의 요구)

농장은 리를 단위로 조직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리의 일정한 지역에 농장을 따로 조직할수 있다. 농장조직에 대한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한다.

제9조(농장조직신청)

농장은 내오려는 농업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조직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농장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농장조직신청문건에는 농장명, 조직목적, 소재지, 급수, 면적, 생산업종과 지표, 생산규모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0조(농장조직신청문건의 심의)

농장조직기관은 농장조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안에 심의하여야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조직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농장조직결정)

농장조직기관은 농장조직신청문건을 심의한 다음 농장조직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그정형을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농장의 등록신청)

농장조직승인을 받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에 농장등록신청 문건을 만들어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농장의 등록)

농장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30일안에 심의하고 농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농장의 재등록)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의 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0일안에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경유를 받아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농장등록증의 재발급)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16조(작업반과 분조의 조직)

농장은 작업반과 분조를 생산구조와 규모, 농장원들의 생활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반과 분조를 고착시켜야 한다.

제17조(농장의 기구조직)

농장은 농장운영을 위하여 농장원총회,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와 필요한 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농장원총회)

농장원총회는 농장의 최고기관이다.

농장원총회는 국가의 정책과 법의 집행, 농장규약의 채택, 토지를 비롯한 중요생산수단의 관리, 작업반과 분조의 조직, 농장원등록, 결산분배 같은 농장운영과 관련한 중요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9조(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농장의 집행기관이며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는 농장의 생산, 로력, 자재, 재정, 후방, 수매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제20조(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농장관리사업을 감독통제하는 농장의 감사기관이며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감사위원회는 법규범의 준수, 로력, 재정, 공동재산관리를 비롯한 농장의 전반적인 관리정형을 검열하고 대책을 세운다.

제21조(농장의 관리성원)

농장은 정해진 관리기구에 따라 관리위원장 또는 지배인, 기사장같은 관리성원을 둔다.

농장의 관리성원은 자기의 직무상책임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

제22조(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 실시)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경영활동을 고도로 현대화, 조직화, 과학화, 합리화하며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농업생산계획의 작성과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농업생산계획을 작성하며 농업지도기관

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농장은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작업반, 분조별로 분담하고 항목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4조(농업생산조직)

농장은 생산참모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작업반과 분조의 생산지표와 생산규모의 선정, 작물 및 품종의 배치, 로력과 농기계의 배치 같은 생산조직을 바로 하여야 한다.

제25조(고리식 또는 순환식생산체계수립)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집짐승을 기를 물거름을 생산하고 물거름을 쳐서 알곡생산을 늘이며 그 알곡을 먹이로 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고리식생산체계, 순환식생산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26조(종자생산, 공급)

종자는 농업생산을 좌우하는 기본고리이다.

농업지도기관과 종자관리기관, 원종장, 채종종장, 종축장 같은 종자생산공급기관, 기업소는 종자생산체계를 바로 세워 생산성이 높고 지대의 기후풍토에 맞으며 순결률이 높은 종자를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된것만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영농준비와 영농작업수행)

농장은 영농일지와 포전별영농기술공정표의 작성, 비료, 농약, 농기구를 비롯한 자재의 확보 같은 영농준비를 제때에 빈틈없이 하며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토지의 조사, 장악, 등록)

농장은 농업토지를 해마다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토지는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에게 마음대로 넘겨줄수 없다.

농업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농업토지의 정리)

농장은 농업토지정리계획을 세우고 땀기논과 비탈밭, 빈땅 같은것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토지정리를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쉽게 할수 있는 대상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정리하는 농업토지는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0조(지력제고)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것은 농장의 중요임무이다.

농장은 토양분석을 포전별, 필지별로 세밀하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토지개량을 계획적으로 하며 유기질비료와 미생물비료 같은것을 많이 내어 부침땅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제31조(농업토지리용률의 제고)

농장은 자연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지대의 특성에 맞게 경종체계를 바로 세우고 그에 따라 선진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용하여 농업토지의 정보당 수확고와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32조(농업토지람용의 금지)

농장은 농업토지를 농업생산에만 리용하며 그것을 목이거나 람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토지를 건설부지 같은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대토를 확보하고 국토환경보호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과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토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토지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3조(물원천의 확보)

농장은 영농기전에 작업반, 분조별로 물소요량과 물확보량을 따져보고 한해 농사에 쓸 물원천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농장은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더 많은 물을 잡아야 한다.

제34조(물의 공급, 리용)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는 물사령체계를 바로세우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을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농장은 기상기후조건과 포전의 특성,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맞게 논물대기 및 발관수를 짜고들어 진행하며 물을 절약하고 물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35조(관개수리시설과 설비의 보수)

농장은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보수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경상보수는 자체로 하여 대보수는 관개수리기관, 기업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36조(큰물과 고인물에 의한 피해막이대책)

농장은 농장림을 조성하고 잘 가꾸며 중소하천정리와 제방쌓기, 사방야계공사, 배수시설 건설 같은것을 하여 큰물과 고인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농업토지가 류실, 매몰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37조(영농설비의 리용)

농장은 트랙도르와 자동차, 모내는 기계, 탈곡기 같은 영농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씨 뿌리기와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를 비롯한 모든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38조(영농설비와 농기구의 보수정비)

농장은 농기계수리기지를 꾸리고 영농설비와 농기구에 대한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며 그것을 알뜰히 다루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농장은 15일 설비점검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39조(부림소관리)

농장은 작업반별부림소확보계획을 정확히 주고 어김없이 실행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림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농장은 부림소우리를 질적으로 짓고 필요한 관리도구를 갖추고 부림소먹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0조(영농자재리용의 효과성제고)

농장은 영농자재의 리용에서 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영농자재를 랑비하지 말아야 한다.

제41조(로력배치)

농장은 로력배치상태를 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부문별, 단위별로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부문별, 단위별로 배치된 로력은 고착시켜야 한다.

제42조(로력일평가)

농장은 로력일수행정형을 생산공정별, 시기별로 종합분석하여 총화하며 농장원별로 일한정형을 제때에 평가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로력일은 해마다 재사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3조(재정총화)

농장은 재정총화를 10일, 월, 분기, 상반기, 년별로 하여야 한다.

농장의 수입지출정형은 공시하여야 한다.

제44조(농장의 결산분배)

농장은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결산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고정재산의 등록과 실사)

농장은 고정재산을 국가고정재산과 농장고정재산으로 갈라 현명 또는 화폐적으로 등록하며 그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을 이관, 인수, 폐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농업생산정형의 등록과 보고)

농장은 농업생산물을 계량하여 빠짐없이 등록하고 농업지도기관과 통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7조(농업생산물의 허실방지와 보관)

농장의 농업생산물의 수확, 탈곡, 가공을 제때에 하며 허실,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한 농업생산물은 정해진대로 포장하고 기술적 및 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시설에 보관 하여야 한다.

제48조(농업생산물의 구매)

농장은 농업생산물을 종자와 식량, 집집승먹이 같은 것으로 정해진 수량만큼 남겨두고 국가에 구매하여야 한다.

비법적으로 농업생산물을 조성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9조(농업생산물의 공급)

농업생산물의 공급은 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은 계약단위에서 정해진 기간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될수 있을 경우에는 계약단위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로 처리할수 있다.

계약된 농업생산물을 류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0조(농업생산물의 직매)

농장은 남새, 과일 같은 일부 농업생산물을 직매점을 통하여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은 받아야 한다.

제51조(농업생산물의 수출)

농장은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수출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농장사업에 대한 지도)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3조(농장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영농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연유, 비료, 농약, 살초제, 농기계, 농기구, 부속품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농장의 로력과 트랙터르 같은것은 영농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54조(농장원생활조건보장)

농장원은 농업생산을 책임진 직접적담당자이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실림

집과 식량, 빨감, 먹는물 같은것을 책임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농장사업의 정보화실현, 기술자, 전문가양성)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장사업을 정보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6조(농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농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농장관리운영을 바로 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7조(연체료지불)

국가예산납부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일당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다.

제58조(손해보상)

농업생산물을 제때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9조(중지, 원상복구)

대토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토지를 농업생산과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원상복구시킨다.

제60조(토지의 회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업농장에서 농업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회수한다.

제61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1. 농장조직신청을 허위로 제기하여 승인받았을 경우
2. 농장등록과 변경등록을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아 농장등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 요구를 어겨 농장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농업토지를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거나 승인없이 지목을 변경하였을 경우
5. 농업토지를 정리하지 않았거나 지력을 높이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농업토지를 묵었거나 람용하였을 경우
7. 피해막이대책을 세우지 않아 농업토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8. 물관리와 영농설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농업생산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승인없이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에 동

원하였을 경우

10. 농업생산물을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아 허실하였거나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11. 비법적으로 농업생산물을 조성하였거나 그것을 상적행위에 리용하였을 경우
12. 농업생산물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13. 농업생산계획과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14. 농업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에게 리용하게 하였을 경우

제62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61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 - 1964년 02월 25일

해 제

농촌사회를 군단위로 집단화시켜 농촌경제의 전인민적 소유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발표된 글이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으로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제시했으며,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의 군(郡)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했다.

이전까지 각기 따로 거론되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이 테제에서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도 한 특징으로 지적된다.

원 문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농민문제, 농업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이 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특히 레닌은 농민문제를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적문제로 내세웠으며 농촌문제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인정하였다. 레닌은 농민문제의 정확한 해결과 로농동맹의 강화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된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명확한 방도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제시하였다.

농촌문제는 지난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밑에 있었거나 아직도 그 예속밑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들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성과적 해결여부는 혁명의 승패와 사회적진보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는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해결에서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도 농촌문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민은 노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력량이다. 노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을 부단히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경제의 2대부분의 하나이며 그것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공급한다.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 지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농촌 경리를 공업의 발전에 따라세워야만 전체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바랄수 있으며 인민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할수 있다.

농민문제, 농업문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함 중국적으로 해결된다.

농촌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고 농민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과 노동계급의 숭고한 임무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혁명을 계속하며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기 위하여 농촌문제의 해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I.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

농촌문제는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각이하게 제기된다.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여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생산 관계의 질곡에서 해방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는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사회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서 자본주의요소를 청산하고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개조함으로써 농민들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농업생산력을 사적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실물교육과 자원성의 원칙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방조에 의거하여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협동화를 실현함으로써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개인농민경리에 비해서나 자본주의농촌경리제도에 비하여 결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주며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준다.

문제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농촌사업을 어떻게 하며 농촌경리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는 농촌문제가 그 이전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제기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화하

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낙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다.

사회주의농촌정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는 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꾸준한 투쟁과 노력에 의해서만 완전히 해결될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이 과업은 이미 제기되었다. 우리의 농촌사업은 웅당 이 과업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사업에서 반드시 세개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로, 농촌정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가와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

1.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해를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착취계급이 없어지고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다음에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남아있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있다는 사실자체가 혁명을 계속해야 하며 특히 농촌에서 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만일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실현되었다고 하여 혁명을 중단한다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양양된 농민들의 열성을 계속견지할수 없으며 그것을 더욱 높일수 없다.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고는 사회주의농촌정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수 없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앨수 없다.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이것은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낙후성은 우선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이 도시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이 노동자들보다 사상의식이 뒤떨어져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낙후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이며 사회주의하에서 그것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은 공업 및 도시의 발전수준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바로 이러한 낙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고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경리에서는 협동적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또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며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공업과 도시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의 세가지 혁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세가지 분야에서 농촌의 낙후성을 없애야 한다.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어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 과정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가운데서도 사상혁명은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과업이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만 치우치고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엄중한 착오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사회주의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 계급잔여분자들의 파괴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나타나며 또한 농민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에서 나타난다.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속에서 사상투쟁을 강화하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할수 없으며 원썬들의 침해로부터 이 제도를 지켜낼수도 없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사회주의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제도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자각적으로 열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이 본질적우월성을 나타낼수 없으며 따라서 농업생산과 기술, 농촌문화도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생활이 높아진다고 하여 농민들의 사상의식이 저절로 개조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낡는 경제기초를 청산하며 농민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조건을 지어준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도 농민들의 의식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 특히 소소유자적근성이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며 사상사업이 약화도리 때에는 그것이 되살아난수도 있고 더욱 조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직 오랜 기간에 걸치는 참을성있는 교양과 부단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농민들의 사상의식

을 완전히 개조할수 있다.

사상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소홀히 하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하며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그들의 부단히 높아가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더욱더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킬수 없고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일수 없으며 그들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할수 없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을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상혁명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도 역시 잘못이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이라하여 농민들의 사상도 개조하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도 강화하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도 높여야 한다.

2.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는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제도의 발생과 공고발전을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농민은 오직 노동계급의 령도와 방조하에서만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설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다.

노동자와 농민은 같은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는 동맹자이며 다같이 사회주의적근로자이다.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는 호상 밀접한 관계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소유의 두 개 형태이며 다같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뿐만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책임지며 전인민적소유의 발전뿐만아니라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책임진다. 개인농민경리때에는 주로 매 농민이 자기의 경리와 생활에 대하여 책임을 졌지만 협동화된 다음에는 당과 국가가 협동농장들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공업은 인민경제의 지도적부문이며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농촌에 비하여 앞서나아가고 있다. 지도적 부문인 공업이 농업을 도와야만 농촌경리를 공업과 같이 현대기술로 장비할수 있으며 선진적인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여야만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올릴수 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협동화가 완성된후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뒤떨어진 농업국가였던 나라에서는 혁명이 승리한후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하여 얼마동안은 농촌에서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현대적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농민들의 자금지출은 전사회의 리익을 위한것이며 농촌경리의 장래발전과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회주의공업의 기초를 쌓은 다음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데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때부터는 농촌을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은 농민을 정치사상적으로 지도할뿐만아니라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입을 높여주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을 고르게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농촌사업을 소홀히 하고 농촌을 도와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농업을 희생으로 하여 공업만 발전시키고 농촌을 희생으로 하여 도시만 꾸린다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없어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더욱더 커지게 될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농민들의 적극성을 발양시키수 없으려 농촌경리를 발전시킬수 없고 농민생활을 높일수 없다. 이것은 결국 공업자체와 전체 인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다.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은 자본주의사상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며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뒤떨어지는것이 법칙으로 되어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농촌을 홀시하는사상을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주권을 잡는 첫날부터 자본주의가 남겨놓은 농촌의 낙후성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도와주며 뒤떨어졌던 농촌이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수준에 더욱더 가까워가는것이 합법칙적이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힘을 증 시키고 공업과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부단히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한걸음한걸음 줄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농민들의 적극성을 계속 발양시킬수 있으며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고 농민생활을 높일수 있다. 이것은 결국 공업자체와 전체 인민경제의 발전을 더욱 추동하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3.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연계

사회주의하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기술, 문화, 사상분야에서 뒤떨어져있을뿐아니라 또한 이것으로 하여 소유관계에서 뒤떨어져있으며 경제관리의 수준에서도 뒤떨어져있다.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차이이다. 경제관리수준에서의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도 역시 중요한 차이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려면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는 동시에 소유관계와 경제관리수준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도시에 비한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없앨수 있으며 이러한 락후성과 관련되어있는 도시와 농촌간의 모든 차이를 없앨수 있고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도 없앨수 있다.

경제관리수준과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촌경리의 지도관리를 개선하여야 하여 협동적소유를 점차적으로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 끌어올려야 한다. 다른 편으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협동적소유를 발전시키고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정확한 호상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촉진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반적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방향은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것이다.

농업협동경리는 대규모의 사회주의적경리이며 그것은 현대적기술로 빨리 장비되고 있다. 농업의 경영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가까와가는만큼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방법도 웅당 공업의 기업관리방법에 더욱더 접근시켜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농업협동경리를 반드시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기업적방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모든 경영활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은 공업에 비하여 기술장비가 약할뿐아니라 기술지도에서는 더욱 뒤떨어져있다. 개인농민경리의 협동화와 함께 농촌경리의 관리운영도 계획화되고 조직화되었으나 이면에서도 공업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져있다.

기술지도의 강화, 모든 경영활동의 가일층의 계획화와 조직화, 바로 이것이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을 개선하는 기본 방향이며 경제관리에서의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없애는 기본방향이다.

기업적방법에 의한 농업협동경리의 지도와 관리는 농촌기술혁명을 촉진시키며 농업관리에서의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없애고 토지, 농기계를 비롯한 다른 생산수단들과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며 농촌경리에서의 생산문화를 높일수 있게 한다. 그것은 농업생산의 장성과 협동경리의 공고화, 농민들의 생활향상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전인민적소유(공업)와 협동적소유(농촌경리)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농민의 사회경제적치지, 노동계급과 농민의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적문제이다.

농업에서 지배적인 협동경리제도는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적응하며 농민들의 의식발전정도에 알맞은것이다. 농업협동경리제도는 커다란 우월성을 발휘하면서 생산력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협동경리제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하에서 농업협동경리제도가 고정불변한것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동적소유도 발전하며 변화한다. 농촌경리의 물질절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문화수준과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협동적소유를 발전시키고 더욱더 완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호상관계,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에 관한 문제를 옹게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가화하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 즉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채종농장과 종자처리장, 농사시험장, 종축장과 수의방역소 등을 강화하고 이 기업소들로 하여금 협동경리의 농업생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기업소들을 물질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모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국가기업소들을 계속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전인민적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농업생산에서 점차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밀접히 결합시켜 나아가야만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강화할수 있으며 공업의 기계기술, 선진적기업관리와 생산문화를 농촌경리에 더 잘 보급할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만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고 그것을 전인민적소유로의 점차적전환과정을 순조롭게 할수 있으며 촉진할수 있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길이다.

만일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약화시키며 두 소유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이 약화될것이며 공업의 기계 기술, 선진적인 기업관리와 생산문화를 농촌경리에 잘 보급할수 없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사회주의적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으려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로의 점차적전환도 순조롭게 실현할수 없다. 이것은 결국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낮추고 로농동맹을 약화시키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난관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와 반면에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협동적 소유를 조급하게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도 안된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고 공업로동과 농업로동간에 큰 차이가 남아있고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이 로동계급에 비하여 뒤떨어져있는 조건하에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개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주의농촌의 발전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적소유를 더욱더 전인민적소유에 접근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조성하면서 협동적소유를 점차적으로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II.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과업

우리 당은 농촌문제의 해결에서 항상 맑스-레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켜왔으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왔다. 우리는 농업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은 빠른 속도로 계속 장성하였다. 우리의 협동농장들은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었다.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빨리 높아지고 그들의 정치적, 로력적 열성은 더욱더 높아가고 있다. 농촌의 면모가 달라졌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생활은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농촌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증명하여준다.

오늘 우리앞에는 농촌경리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을 더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당의 농촌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더한층 촉진하여야 한다.

1. 농촌기술혁명

농촌기술혁명은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 들여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우리 당은 농촌에서 협동화를 실현하는 한편, 곧 기술혁명의 수행에 착수하였다. 우리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돌렸다.

수리화는 농촌기술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자연지리적 조건, 특히 기후조건에 많이 의존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기후변동이나 기타 우연적요인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생산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지어주는 것이다. 수리화의 실시는 큰물과 가뭄 피해를 이겨내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며 농업생산의 부단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논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해마다 큰물과 가뭄 피해가 심한 우리 나라 농촌경리에서 수리화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수리화에 힘을 돌렸으며 특히 농업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전개하였다. 우리는 수리화에서 이미 기본적인것은 해결하였으며 흉년을 모르는 튼튼한 농업생산토대를 닦아놓았다.

우리의 앞으로의 과업은 어떠한 가물이 드나 큰물이 나도 항상 풍작을 이룩할수 있도록 수리화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며 더욱 확대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벼의 생산을 증가시키며 알곡총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2~3년안에 논면적을 70만정보까지 늘이는 것이다.

지금 하고있는 대규모의 관개공사들을 빨리 완공하며 새로운 관개공사를 더 많이 실시하여야 한다. 이미 있는 관개시설들을 정비하고 보강하여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치산치수사업, 특히 중소하천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농업에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농민들의 로동을 쉽게 하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화

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천년동안 뒤떨어진 농기구를 가지고 온갖 고역에 시달려온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역사적임무이다. 농촌정리의 기계화를 힘있게 추진시켜 농업로동의 생산능률을 빨리 높이는 동시에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며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쉴뿐아니라 학습과 문화생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는 농업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의 과업은 발갈이로부터 가을걷이와 탈곡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하며 농촌정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선 가장 고되고 품이 많이 드는 발갈이와 김매기, 수송작업의 기계화에 힘을 집중하여 가까운 년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농촌정리의 기계화를 위하여서는 앞으로 트랙토르대수를 7만~8만대(15마력 환산으로), 자동차는 3만~3만 5,000대에 이르게 하며 다른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결정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 농촌정리는 자연지리적조건에서나 작물구성과 경종체계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농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기계들을 널리 창안제작하여야 하며 동시에 토지를 정리하고 경종체계를 개선하는 등으로 기계화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기화는 농촌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촌을 전기화하지 않고는 수리화와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문화적인 농촌건설을 기대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전체 농촌리의 93.3%, 전체 농가의 71%에 전기가 들어갔다.

나라의 전기화를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대규모의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병행하여 추진시키며 동시에 중소규모의 발전소들을 전국 각지에 많이 건설하는 것이다.

당의 전기화방침을 계속 관철하여 가까운 년간에 모든 농촌과 모든 농가에 다 전기가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정리에 전기동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탈곡, 양수, 사료의 분쇄와 절단 등 한자리에서 진행되는 작업들은 모두 전기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개 농가들에서 라디오 또는 유선방송을 들을수 있게 하며 여러가지 전기용품을 널리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화는 농작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농촌정리에서의 화학의 적용은 토양을 개량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며 농작물의 생장과 결실을 촉진하며 병해충과 잡초를 없앨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화학공업이 빨리 발전한 결과 1963년에 농경지 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은

300킬로그램에 이르렀으며 그 품종구성은 더욱 개선되었다. 농촌에 대한 농약의 공급량도 훨씬 많아졌다.

화학화에서의 과업은 우리 나라의 토양과 농작물에 맞는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충분히 보장하며 여러가지 살충제와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이다.

농경지 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을 가까운 년간에 500킬로그램에 이르게 하며 장차로는 1톤이상의 수준에 올려야 한다. 과학적시비체계를 세워 화학비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는 농촌기술혁명의 네가지 기본구성부분이다. 기계화, 전기화에만 치우치고 수리화, 화학화를 소홀히 한다면 농사에서 수확고를 부단히 높일수 없다. 반대로 수리화, 화학화에만 힘을 넣고 기계화, 전기화를 하지 않는다면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없고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줄수 없다.

공업의 발전정도와 농촌의 구체적형편에 따라 선후차는 있을수 있지만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참말로 튼튼히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기술혁명의 네가지 기본과업 즉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면서 농업과학의 성과와 선진영농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며 집약적인 영농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경리의 집약화, 이것은 영농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방침이다.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집약농법은 가장 선진적인 영농방법이며 그것은 농사에서 다수확의 기본으로 된다.

집약적영농방법에서 이미 얻은 풍부한 경험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농작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토지를 정리하고 개량하며 할수 있는 모든 곳에서 2모작체계를 도입하며 간작, 혼작 등을 더 널리 실시하여야 한다. 육종사업을 강화하여 종자를 개량하며 자급비료를 더 많이 내며 모든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하고 논밭을 알뜰하게 가꾸어야 한다.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곡생산이다. 알곡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주민들에게 식량을 넉넉하게 공급할수 있으며 농촌경리의 다른 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우리는 알곡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이미 식량을 자급자족할수 있게 되었다.

알곡생산에서의 당면과업은 벼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알곡 총수확고를 훨씬 더 높여 전체 인민이 이밥을 먹을수 있도록 하며 축산업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다른 모든 부문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는것이다.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공예작물의 재배, 축산업, 과수업, 잡업 등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여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을 튼튼한 식량, 원료 가지로 전변시키며 우리 농민들을 유족하게 잘 살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농민들의 로동을 쉽게 하여주고 농촌에서도 기본적으로 8시간로동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할 것이다.

2. 농촌문화혁명

농촌문화혁명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 기술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인습을 없애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농촌문화혁명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실현할수 없으며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1958년부터는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도시에서뿐만아니라 농촌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다 7년제까지의 일반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농촌에 기술학교가 널리 설치되어 수많은 농촌청소년들이 기술교육을 받고있다.

이제 문제는 후대들에게 전반적으로 기술교육을 주는것이다. 가까운 시일에 9~10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성인교육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 모든 농민들이 초급중학교이상의 일반지식과 농사일에 필요한 기술지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적기계기술에 기초한 농촌경리의 빠른 발전은 더욱더 많은 농촌기술간부를 요구한다.

앞으로 몇해동안에 매개 협동농장에 5명이상의 기사, 매개 작업반에 2명의 기수 또는 기사를 배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대학, 고등기술학교들을 통하여 농촌청년들속에서 농업에 필요한 각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야 한다. 농촌기술간부의 대렬을 빨리 늘이는 동시에 그 질적구성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문화혁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농촌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문화생활조건

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다.

농업협동화가 실현된후 우리 농민들의 문화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매개 농촌리에 진료소가 설치되고 농민들에게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있다. 농촌에서 여러가지 토질병과 전염병들은 자취를 감추고있다. 모든 농촌리에서 공동비용으로 탁아소,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 수많은 문화주택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건설되었다. 여러 가지 출판물들이 많이 농촌에 배포되며 광범한 농민들이 군중적문에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날 침체하고 어지럽던 우리 농촌이 오늘은 활기있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새농촌으로 꾸러지고 있다.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완강한 투쟁이 요구된다.

농촌녀성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참가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어주어야 한다. 녀성들에게 로력보수를 계속 주면서 산전, 산후 휴가를 완전히 보장하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건설된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잘 꾸리고 더 잘 운영하여 녀성들이 마음놓고 생산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주택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 모든 농민들이 아름답고 아담하고 편리한 문화주택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 여러 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더 잘 도모하여야 한다.

농촌에 신문, 잡지, 도서들을 더 많이 보내며 모든 농촌리에 구락부를 건설하며 농민들속에서 군중문화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에서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생활관습을 완전히 없애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촌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로동자와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점차 없애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점차 기사,기수의 수준에 끌어올리도록 할것이다. 우리는 교육, 보건, 주택조건, 문화후생시설을 비롯한 모든 문화생활조건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더욱더 줄이며 그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할 것이다.

3.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진행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선진적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농민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의 각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들의 사상의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로동당의 주위에 굳게 뭉쳤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사회주의전취물을 무한히 귀중하게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지키며 더욱 공고발전시키려는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농민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을 사랑하고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도덕의 미풍이 더욱 발양되고있다. 농민들의 로력적열성과 창발성은 고도로 양양되고있다. 농민들의 로력적열성과 창발성은 고도로 양양되고있다. 위대한 공산주의학교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농촌에서 빨리 확대발전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농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고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농민들이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개조되고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농촌에서의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과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농촌사업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고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여야 한다.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농민들은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는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착취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견결한 혁명정신으로, 자기의 향토와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으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튼튼한 무장시켜야 한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에게 남았는 개인리주의와 소소유자적근성을 없애고 그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남아있는 리기주의사상은 수세기에 걸쳐 대대손손으로 계승되어 온 뿌리깊은 사상이다. 농민들속에서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공동재산을 애호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농민들이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사상을 가지고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농민들로 하여금 로동을 즐기고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거슬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며 그것을 착취계급의 사상으로서 미워하고 배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농민들이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공동로동에 더욱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속에서 낡은 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지향하는 정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여야 하며 그들을 혁명적락관주의로 무장시켜야 한다.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씨족관념과 문벌주의를 반대하며 그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더 훌륭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렬한 지향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며 계속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속에서의 공산주의교양은 반드시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군중교양의 기본방법은 사람들을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의 경험은 이 방법이 군중교양에서 가장 힘있는 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긍정적모범을 보급하며 사람들을 성의껏 도와주고 꾸준히 설복하여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농민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야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은 주로 그들의 실천활동, 집단로동을 통하여,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하여야한다. 농촌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확대하고 심화시켜 농민들의 집단적생산혁신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며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한다.

우리는 농민들의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농업생산과 기술, 농촌문화를 더욱 빨리 발전시킬것이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로동자와 농민들사이의 사상의식수준에서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할것이다.

4. 농촌에 대한 지원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은 로농동맹을 강화하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도시 및 로동자구와 함께 사회주의농촌을 튼튼히 꾸리며 점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부터 농촌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특히 농업협동화를 실시하면서부터 모든 분야에 걸쳐 농촌에 대한 지원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농민경리의 사회주의적협동화는 당과 로동계급의 령도, 사회주의적국영공업의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었다. 우리의 협동농장들은 당의 정확한 지도와 국가의 막대한 물질기술적방조와 전체 인민의 지원에 의하여 그리고 이에 무한히 고무된 협동농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정치경제적으로 빨리 공고화되었다.

우리 당은 농촌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부단히 강화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농촌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였다.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는 방대한 규모에 달한다. 1959년부터 1963년까지의 5년동안에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 기본건설투자총액가운데서 15.8%가 농촌경리의 발전과 농촌문화건설에 돌려졌다. 국가는 또한 협동농장들에 막대한 자금을 대여하여주었으며 그가운데서 많은 부분은 상환을 면제하여주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건설투자와 재정적방조에 의하여 방대한 관개공사들과 치산치수사업이 진행되고 농촌경리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촉진되었으며 농촌문화건설이 널리 실시되었다.

우리의 공업은 해마다 더 많은 농기계, 화학비료, 농약, 건설재료와 여러가지 소비품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다. 우리는 농촌에 방대한 로력적방조도 주었다.

국가는 농업현물세를 감면하며 공예작물수매가격을 높이며 농기계작업료, 관개사용료와 농기구의 가격을 낮추며 농촌어린이들에게 옷을 무료로 공급하는 등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대책을 취하였다.

농촌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며 협동농장들을 공고히 하고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오늘 농촌경리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과업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리익은 농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이미 마련된 조건에서 농촌에 능히 더 많은 방조를 줄수 있게 되었으며 또 응당 주어야 한다.

농촌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이며 물질기술적방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업부문들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 농촌에 현대적농기계, 화학비료, 건설재료 등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의 부담으로 각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 농촌에 보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은 고도로 집약화되어있으며 농촌경리의 기계화는 오랜 시일을 요한다. 우리의 농촌로력에서는 아직도 로인들과 녀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에 청장년로력을 더욱 보충하여주며 농촌에 대한 사회적로력방조를 더 계획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생활양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주고 그들의 수입을 높여야 한다.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업상품을 더 많이 공급하며 농촌에서의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의 발전에도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한다.

농촌에 노동자, 제대군인들을 더 많이 보내고 혁명가유가족, 피살자가족들을 고착시키며 핵심대렬을 계속 확대하여 농촌진지를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모든 당조직, 국가기관, 사회단체들과 그 일군들이 농촌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농촌에 더 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 걸쳐 농촌을 더 힘있게 도와줌으로써 노동계급의 선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고 전체 인민경제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며 사회주의도시와 사회주의농촌을 다같이 튼튼히 꾸리고 더욱더 번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하여나아가감으로써 협동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주며 장차로는 농민근로계도 노동자들과 같이 모든 생산조건과 생활조건을 국가적으로, 전사회적으로 보장하여주도록 할 것이다.

5.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지도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은 협동경리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며 전 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관계를 강화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 첫날부터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개선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지도 체계와 방법을 개편하였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 당의 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구현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의 보급은 우리의 모든 당 및 국가 기관과 사업에서 전변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협동화된 농촌의 새 환경에 맞게 농촌지도사업을 개편하게 하였다. 특히 당은 청산리방법을 침투시키면서 당시 협동농장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기능을 수행하던 군인민위원회의 일군들로 하여금 현지에 내려가 사람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농장의 모든 사업을 직접 조직하여주며 구체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농촌현실의 빠른 변화는 농촌경리에 대한 새로운 더 높은 수준의 지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협동농장들의 규모가 커지고 농업기술이 더욱 발전하였으며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는 급격히 증대되었다.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과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졌다. 농촌사업은 그 범위가 확대되고 훨씬 더 복잡하여졌으며 급격히 증대되었다.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과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졌다. 농촌사업은 그 범위가 확대되고 훨씬 더 복잡하여졌으며 농촌경리앞에는 더욱더 방대한 과업이 나서게 되었다. 행정기관으로서의 군인민위원회는 이미 농촌경리를 원만히 지도할수 없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1962년초에 새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동시에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창설은 농촌의 변화된 현실에 맞게 농업지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획기적조치였으며 농촌경리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결합시킨 창조적인 대책이었다.

우리 나라에 창설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이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업기술자들과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 관개관리소 등 농촌경리에 봉사하는 국가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협동농장들의 경영활동을 현지에서 직접 조직하며 지도한다. 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직접 실행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이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경영위원회는 지난날과 같은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방법에 의하여 농촌경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수 있으며 특히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다. 경영위원회가 조직된 결과 매개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이 개선되었을뿐만아니라 군내 협동농장들의 련계도 강화되었다.

경영위원회는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공업과 농업간의 생산적련계를 강화한다. 경영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전인민적소유가 협동적소유에 더 넓게, 더 깊이 침투하게 되었으며 기술, 문화, 사상의 각 방면에 걸쳐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경영위원회의 창설은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사회주의적국영공업의 물질기술적 방조를 강화하고 협동농장들로 하여금 이러한 방조를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로동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킨다.

우리의 과업은 경영위원회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농촌경리를 능숙하게 지도하며 협동농장들에 더 효과적인 방조를 주는데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낡은 행정식사업방법을 완전히 버리고 경영위원회의 본래의 사명에 맞게 협동농장들을 반드시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계획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조직, 토지와 농기계 및 관개시설의 리용, 기술발전, 자재의 보장, 로동력의 배치와 조직, 생산물의 분배, 재정관리 등 협동농장들의 모든 경영활동을 직접 조직하여주며 구체적으로 도와주어

야 한다.

기업적지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이다. 농업생산도 공업생산도 같이 하나의 기술공정이다. 농촌경리에서 기술의 역할은 더욱 높아가며 생산과정은 기술적으로 더욱 복잡하여지고있다. 지금은 기술을 떠나서는 농사를 지을수 없으며 기술을 모르고는 농사를 지도할수 없다. 경영위원회는 일군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기술자들을 옹게 동원하여 농촌경리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촉진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생산이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주인은 사람이다. 농업에서 주인은 농민이다. 농민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동원하지 않고는 농촌경리를 발전시킬수 없다. 농민들과 사업하지 않고는 농촌현실을 충분히 료해할수 없으며 농촌경리를 옹게 지도할수없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청산리방법에 튼튼히 서서 항상 현지에 나가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현실을 깊이 료해하는 기초우에서 협동농장들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경영위원회는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농업생산에 복무하는 국가의 모든 물질기술적수단들과 자재들은 경영위원회의 직접적관할하에 있거나 또는 경영위원회를 통하여 농촌에 들어간다.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가 효과있게 실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결정적으로 경영위원회의 활동여하에 달려있다.

경영위원회는 군내 농촌경리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맞게 관개시설, 농기계, 화학비료 등 설비와 자재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위원회는 자기 관할하에 있는 국가기업소들과 국가의 기술수단 및 물자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옹게 관리하여 그것들이 농촌경리에 더 잘 복무하며 협동농장들에 더 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경영위원회는 군내의 모든 협동농장들을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하고 다각적으로 발전되고 수익성이 높은 사회주의경리로 만들어야 한다.

군경영위원회와 함께 도농촌경리위원회 및 중앙농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야 한다.

도농촌경리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과 국영농목장들을 직접 지도하고 도와주면서 도내 농촌경리의 발전을 전반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도농촌경리위원회는 군에 농기계와 비료, 농약들 영농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며 작물배치, 종자선정, 시비체계의 수립등 기술적지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중앙농업위원회는 농촌경리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면서 주로는 농업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농촌경리의 전망적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중앙농업위원회는 농업부문의 과학연구사업과 간부양성사업, 대규모의 자영개조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이 사업들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지도체계는 농업의 경영관리를 선진적공업관리의 수준에 더욱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농촌경리발전의 당면한 문제들과 전망적문제들의 해결을 옹계 배합시키는 우월한 체계이다.

우리의 모든 농업지도기관들,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이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나타낼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발전은 비상히 촉진될 것이다.

Ⅲ.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군인 역할과 임무

사회주의건설에서 농촌사업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사업의 하나이다. 농촌사업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의 락후성, 농민구성의 복잡성, 농촌경리의 자연적, 계절적 제약성 등과 관련되어있으며 또한 중요하게 농촌의 분산성과 관련되어있다.

농촌사업의 대상은 전국 각지에 널려있는 농촌마을들이며 넓은 지역에 널려있는 작업장들이며 소집단으로 널려 일하며 살고있는 농민들이다. 농촌경리가 협동화된 결과 농촌의 분산성이 훨씬 퇴치되었으나 그것은 의연히 도시 및 로동자구와 구별되는 농촌의 중요한 특징으로, 공업과 구별되는 농업의 특징으로 남아있으며 장차로도 계속 그러한것으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농촌에서의 모든 사업은 언제나 이 특징을 고려하여 거기에 맞게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지역내의 모든 대상들을 지거점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는 그 크기가 알맞춤하여야 하며 그 단위의 범위내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을 비롯한 다른 조건들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거점은 해당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이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단위로 되고있으며 거점으로 되고 있다. 우리의 군들은 그 크기에 있어서나 간부와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있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단위로서 가장 적합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을 실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농촌과 로동자구를 직접 지도하는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이다. 당과 정부의 모든 정책이 군을 통하여 직접 농촌과 로동자구에 들어간다. 군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농촌과 로동자구에 내려가 근로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모든 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조직하고 집행한다.

군은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로 되고 있다. 지방공업이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며 농촌경리의 발전도 군이 직접 지도한다. 군소재지와 농촌 건설도 군단위로 진행되며 지방에서의 공급사업, 교육, 문화, 보건 사업도 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다.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거점이다. 농민들은 군을 거쳐서 당의 정책을 받아들이며 군을 거쳐서 로동계급과의 생산적, 경제적 관계를 맺으며 도시의 문화와 생활풍습을 배운다.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의 군의 커다란 역할은 곧 사회주의농촌의 발전에서 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군은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되며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된다.

우리 당은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의 위치와 역할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이 방향에서 군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왔다.

당은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기관들을 유능한 간부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었다. 군에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지방공업경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학교, 병원, 도서관, 영화관 등 많은 문화후생시설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1962년에 열렸던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는 창성군의 사업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군들앞에 나선 과업을 명확히 내세움으로써 군사업을 새로운 더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울수 있게 하였다.

군을 튼튼히 꾸리며 군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의 과업은 사회주의농촌의 발전과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데 있다.

농촌경리에 대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군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1. 군내 지방공업의 역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공업이 빨리 발전하였다. 매개 시, 군에 직물 또는 편직물 공장, 장유공장, 가구공장 등 평균 1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되어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방에 공장을 광범히 건설한다는 것은 공업을 농업에 더욱 접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군들에 건설된 지방산업공장들은 주로 지방원료를 가공하여 소비품을 생산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산업공장들은 여러가지 소비상품을 생산하여 군내의 농촌에 공급하는 동시에 도시에도 공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은 여러가지 농산물과 부업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높여주며 농업생산과 농촌부업의 발전을 더욱 추동한다. 지방산업공자들은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과 생산문화, 기술을 농촌에 보급하며 농민들에게 로동계급의 정치적, 사상적 영향을 주는데서도 큰 작용을 한다.

모든 군들에서는 이미 마련한 토대에 의거하여 지방공급을 더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은 지방의 원료원천을 널리 동원하여 가공하며 특히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과 부업산물을 가공하는데 더욱 주력하여야 한다.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은 군의 농촌경리와 기타 부문들에 대하여 새 기술을 보급하는 기지로되어야하며 높은 생산문화와 선진적기업관리의 모범으로 되여야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은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과 기타 지방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고 농업생산과 농촌부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공업과 농업의 관계를 강화하는데서 지방공업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규모의 중앙공업기업소들도 지방에 널리 분포되어있다. 거의 모든 군들에 한두개 또는 그 이상의 중앙공업기업소들이 있다. 이것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큰 힘으로 되며 또한 공업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면에서 유리한것이다.

지방에 있는 중앙공업기업소들은 주변의 협동농장들을 물질기술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협동농장들은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낱새, 축산물 등 식료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군은 군내의 중앙공업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간에 밀접한 관계

를 지어주며 호상방조를 강화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

사회주의농촌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연계를 강화하여야만 농촌에 공업상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공업상품에 대한 농촌의 수요를 장성시키고 상품의 실현을 촉진하여 공업발전을 더욱 추동할수 있다. 또한 이 연계를 강화하여만 농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도시주민들의 식량과 공업의 원료수요를 보장할수 있으며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고 농촌경리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수 있다.

군은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연계를 지어주는 거점으로 되며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 된다. 농촌에서 나는 생산물은 군을 거쳐서 도시에 공급되며 도시에서 생산되는 공업제품은 군을 거쳐서 농촌에 공급된다. 군이 공급기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연계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으며 이것은 결국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향상이나 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살회주의건설이 전진하면 할수록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연계는 더욱더 밀접하여지며 따라서 이 연계를 지어주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

농촌경리가 발전하고 농민들의 수입이 높아짐에 따라 농민들은 질 좋고 다양한 공업상품을 더 많이 요구한다. 군은 자체의 공급기지를 강화하고 농촌상점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상품배정을 잘하여 농민들에게 공업상품을 제때에 원만히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상업기관들은 공업기업소들이 농촌의 수요에 맞게 제품을 더 훌륭하게, 더 많이 생산하도록 생산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다른 편으로 농업생산의 장성하고 농촌경리가 다각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농촌에서의 상품생산물이 빨리 증가된다. 군은 자체의 수매기지를 강화하고 수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농촌의 상품생산물을 제때에 사들임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늘리고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도록 하는 동시에 도시주민들과 공업에 대한 식량 및 농산원료의 공급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상업은 본질상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다. 농촌사업은 농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다. 군상업기관과 수매기관 일군들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립장에서 자기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군은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과 함께 농민들을 위한 생활봉사를 개선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둘러야 한다. 매개 농촌리에 상점은 물론, 리발소, 목욕탕, 세탁소, 의복 및 가구 수리소, 합숙 등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을 완비하고 그것들을 잘 운영하여 농민들의 모든 생활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농촌리들을 농업의 튼튼한 생산세포로 만들뿐아니라 농민들을 위한 훌륭한 공급세포로, 훌륭한 봉사세포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3.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

군은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도 사회주의농촌의 발전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군소재지에는 학교, 병원, 영화관, 서점, 도서관 등 여러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이 갖추어져있으며 이것들을 군소재지와 군내 농촌주민들을 위하여 복무한다. 군은 농촌 학교, 진료소들을 직접 관리하며 군내 농촌의 전반적문화위생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농촌의 당간부들과 관리 기술간부들도 주로는 군교육기관들을 통하여 양성된다. 농촌주택들과 문화후생시설의 건설 사업은 군에 소속된 농촌건설대에 의하여 진행된다.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군은 농촌학교들을 잘 꾸리고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어 농촌청소년들을 지덕체를 다 갖춘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군은 군내의 농촌청소년들에게 다 기술교육을 줄수 있도록 기술의무교육제르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군은 자체의 고등기술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을 통하여 농촌간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군은 군병원과 농촌진료소들을 잘 꾸리고 농촌보건망을 높여 농촌에서의 보건위생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의 전반적문화사업에 대한 군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소재지에는 도시의 선진적인 문화와 생활풍습을 농촌에 보급하는 기지로 된다. 군소재지를 아름답게, 아담하게,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려 농촌이 이를 따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군소재지에는 농촌에 대하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범으로 되어야 함 새로운 사회주의생활양식의 본보기로 되어야 한다.

군은 농촌건설대의 력량을 동원하여 군소재지의 군내 농촌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농촌건설대는 군내 농촌의 주택들과 문화후생시설의 건설사업을 책임적으로 맡아 수행하여야 한다.

군이 이 모든 사업을 원만히 집행할 때 군내 농촌문화혁명은 더욱더 촉진될것이다.

4. 농촌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기관이며 군사사업의 참모부이다. 군당위원회는 군내 모든 당조직들을 직접 지도하며 군내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한다.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는 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군당위원회의 주되는 사업대상은 농촌이다. 군당위원회는 군내의 농촌당조직들을 직접 지도하며 농촌에서의 모든 경제문화사업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군당위원회가 지도하는 다른 부분들의 사업도 다 농촌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농촌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지 않고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을 높일수 없으며 따라서 농촌의 빠른 발전을 보장할수 없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의 농촌사업지도를 계속 개선강화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첫째로, 군당위원회는 농촌경리의 발전과 농촌문화건설에서 키잡이의 역할을 잘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과 기술, 농촌건설, 농촌문화 사업 등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인민위원회와 다른 군내 행정경제기관들이 직접 조직하며 집행한다. 군당위원회는 경제문화사업을 직접 집행하는것이 아니라 당적으로 지도하며 통제한다.

군당위원회는 군내 행정경제기관들이 당정책에 튼튼히 서서 농촌에서의 경제문화사업을 옹계 수행하게끔 방향을 제시하여주며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는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집행정형을 자주 검열하고 통제하며 잘못되는것은 제때에 고쳐주어야 한다.

농촌경제문화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특별히 중요한것은 사업의 선후차를 옹계 가리고 해당시기의 조되는 사업에 힘을 집중하는 동시에 모든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것이다. 농촌사업은 다른 부문의 사업보다도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군당위원회는 반드시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부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해결하면서 농촌에서의 모든 경제문화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로, 군당위원회는 농촌에서의 당사업과 정치사상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농촌당조직들과 사업하며 농촌간부들과 사업하며 농촌당원들과 농민군중과 사업하여야 한다. 농촌당세포들과 리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하

고 도와주어 농촌의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의 당적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간부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줌으로써 모든 농촌간부들이 당정책에 따라 자기 사업을 옹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전체 농촌당원들이 농민군중속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과 계급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모든 농민들이 당의 농촌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당사업에서 군중로선에서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의 모든 당조직들이 다 움직이도록 하며 모든 간부들, 모든 당원들, 모든 농민들이 다 움직이며 다 자각적으로 일하며 다열성과 창발성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농민들의 사상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농촌에서의 사상혁명의 직접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군당은 농촌당조직들은 발동시키고 농촌당원들과 천리마기수들, 열성농민들을 발동시켜 농민들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을 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군당위원회들이 농촌경제문화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농촌당정치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군내의 전반적농촌사업에서 참모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IV.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당면한 몇가지 대책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의 우월성과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는 부단히 발전하고있다.

농업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따라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높아졌다.

전쟁의 폐허우에서, 농기계도 없고 로력과 축력도 부족한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조직된 우리 나라 협동농장들이 오늘에와서는 생산을 계속 늘이며 농장원들의 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는 공고한 사회주의적경리로 자라났다. 전쟁으로 인하여 주택과 가장집물을 거의다 잃어버리고 먹을것과 입을것도 부족하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중농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변이다.

우리의 과업은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

이는것이다.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가 급속히 강화되었으나 원래 우리 농장들이 너무나 빈약한 토대에서 조직되었기때문에 아직도 부유한 농장으로 되지는 못하였다. 농민들의 생활이 빨라 높아졌으나 원래 우리 농민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왔기때문에 아직도 넉넉하지 잘 살지는 못하고있다. 해방후, 특히 농업협동화가 우리 농촌이 너무나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기때문에 아직도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져있으며 농민들의 생활도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만 못하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모든 협동농장들을 부유한 농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모든 농민들을 유족하게 잘 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더욱 줄이며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여기에 접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업생산을 훨씬 더 높이는 동시에 협동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으로 계통적으로 덜어주어야 한다.

오늘 공업의 위력이 커지고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더욱 튼튼히 닦아진 조건에서 우리는 협동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며 그들에게 더 큰 국가적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취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대책으로서는;

첫째로,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없애는것이며,

둘째로, 농촌기본건설에서 지금까지 협동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하던것도 앞으로는 국가자금으로 진행하도록 하는것이며,

셋째로, 국가의 부담으로 농민들에게 문화주택을 지어주는 것 등이다.

1. 농업현물세제의 폐지

우리 나라에서 농업현물세제는 해방직후인 1946년에 토지 개혁에 뒤이어 실시되었다.

해방전에 우리 농민들은 소작료, 강제공출을 비롯한 다른 가렴잡세로 수확의 대부분을 지주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략탈당하였다.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단일한 현물세제가 실시됨으로써 농민들은 이러한 착취와 략탈에서 해방되었으며 다만 수확고의 25%만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 있어서 혁명적인 변혁이었다.

농민들이 국가에 바치는 현물세는 노동자, 사무원들의 식량을 보장하며 공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사회주의적국영공업이 발전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가 닦아져감에 따라 국가는 농민들의 현물세부담을 점차적으로 덜어주었다. 수확고의 25%이던 현물세율을 전후에 와서는 평균 20.1%로 낮추고 1959년부터는 그것을 또다시 8.4%로 낮추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협동농장들에 대하여 현물세를 덜어주었으며 일부 농장들에 대하여서는 현물세를 완전히 면제하여 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3,700여개의 협동농장들가운데서 1963년말까지 현물세를 완전히 면제받은 협동농장수는 1,331개에 달한다.

우리 당 제4차대회는 7개년계획기간에 농업현물세제를 전반적으로 없앨 것을 결정하였다. 이제는 이 결정을 집행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의 3년간에 걸쳐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현물세를 이미 면제받은 협동농장들을 내놓고 2,400여개의 농장들이 현물세를 바치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이가운데서 800여개의 농장들을 면제하여주어 현물세제를 완전히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현물세의 면제는 매개 협동농장들의 경제형편을 충분히 참작하여 뒤떨어진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첫해에는 경제토대가 비교적 약한 농장들을 면제하여주고 다음해에는 중간수준의 농장들을 면제하여주고 비교적 부유한 농장들은 마지막해에 면제하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현물세제의 폐지는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는 중요한 대책으로 될뿐만아니라 우리의 농민들을 온갖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력사적사변으로 될 것이다.

2. 국가부담에 의한 모든 농촌기본 건설의 실시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방대한 기본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기본건설에서 대규모의 대상들은 모두 국가 투자에 의하여 실시하고 중소규모의 대상들은 주로 협동농장들의 자체 투자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지난 5년동안에 농촌기본건설 총투자액가운데서 국가투자가 60%이상, 협동농장들의 자체 투자는 약 40%를 차지하였다.

우리는 종전에 협동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실시하던 기본 건설도 올해부터는 국가자금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기구, 중소농기계, 부림소 등은 앞으로도 협동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중소관개공사, 하천정리, 양수시설, 탈곡장, 축사, 창고, 농촌발전소의 건설과 전기가설 등 기본건설은 다 국가자금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농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방대한 추가적부담을 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책의 실시는 협동농장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농장들로하여금 영농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리면서도 농장원들에 대한 분배몹을 훨씬 더 높일수 있게 할것이다. 그것은 또한 농업에 대한 전반적기본건설투자액을 장성시키고 농촌기본건설을 더 계획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질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촌정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빨리 강화하게 될것이다.

3. 국가부담에 의한 농촌문화 주택의 건설

우리 나라 농민들은 수천년동안 허물어가는 오막살이에서 살아왔다. 해방후 농촌주택문제는 농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간절한 문제의 하나로 나섰다. 혹심한 전쟁피해는 도시와 함께 농촌에서의 주택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였다.

우리 농민들은 생활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수많은 새 주택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농촌건설대가 조직된후 농촌주택건설은 더욱 널리 전개되었다. 농촌에서의 주택사정은 이미 결정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촌주택문제를 더 원만히 풀기 위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국가부담에 의하여 농민들에게 문화주택을 지어주어야 한다. 모든 농민들에게 다 훌륭한 문화주택이 차례지도록 하려면 앞으로도 농촌주택건설사업을 계속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 로력을 국가가 부담할뿐아니라 이미 농촌건설대가 지어준 문화주택들의 건설비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농민들에게도 노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국가가 주택을 보장하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전체 인민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만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이와 같은 인민적시책을 실시할수 있다.

우리는 국가의 부담으로 농촌문화주택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가까운 몇해동안에 농촌의 면모를 완전히 개변하도록 할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대책외에도 협동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 수입을 높이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도를 강구실시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위한 방대한 국가적대책들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로동계급이 더욱 발전시켜야 농촌에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으며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올릴수 있

다. 노동자들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촌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 운수, 건설 등 모든 부문에서 부단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농민을 도와주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신성한 의무이며 그것은 전국가적, 전사회적 리익에 맞는 것이다. 농민들을 백방으로 도와주어 그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지을수록 도시 주민들과 공업을 위하여 더욱 튼튼한 식량, 원료 기지가 마련될 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이 더욱더 촉진될 것이다.

우리의 농민들은 농촌정리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농민들은 로동계급의 적극적인 지원에 호응하여 증산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노동자들과 도시주민들에게 식량, 축산물, 남새, 과일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더 많이 보내주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이 장성하면 할수록 공업발전이 촉진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가는 농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하여줄수 있을 것이다.

* * *

농촌문제를 계속 성과적으로 해결하여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숭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임무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은 지난날 뒤떨어지고 가난하던 우리 농촌을 현대적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며 남조선 농민들과 인민들을 더 힘있게 성원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농촌문제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농촌정리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에게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과 로동계급의 강력한 주권이 있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위력한 자립적경제토대가 있으며 노동자, 농민들과 전체 인민이 당주위에 굳게 뭉쳐나아가는이상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자로 될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와 같이 농촌전선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31~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

주체87(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호로 채택
 주체91(2002)년 6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3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

제1장 농업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은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농업자원 보호와 농업생산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농촌 경리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농업은 인민경제 2대부문의 하나이다.

국가는 농업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고 공업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농업정책에 의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농업생산수준이 높아졌으며 사회주의적인 농업경리제도가 굳건히 다져졌다.

국가는 농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생산을 고도로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농업의 경리형태는 사회주의적경리형태이다.

농업의 사회주의적경리형태는 국영경리와 협동경리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국영경리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며 협동경리를 성숙된 조건과 가능성,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점차 국영경리로 전환하도록 한다.

제5조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이다.

국가는 농업근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며 그들이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하여 농업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농업생산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여러 부문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7조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 지대의 조건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영농방법이다.

국가는 농업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주체농법을 발전풍부화시키고 그것을 농업생산

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다.

제8조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 농업을 적극 도와주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농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농업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10조 국가는 농업에 대한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단위의 창발성을 높이며 농업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제11조 국가는 농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농업생산

제12조 농업생산은 알곡, 남새, 공예작물, 축산물, 과일, 누에고치 같은것을 생산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농업생산의 다른 부문을 배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농업생산부문의 배치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지대의 자유경제적조건을 타산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을 전문화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과학기술발전수준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작물별, 집짐승종류별, 수종별, 누에종류별 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15조 종자생산에 선차적관심을 돌리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농업지도기관과 종자관리기관, 원종장, 채종농장, 종축장, 종묘장, 종란장 같은 종자생산공급기관, 기업소는 종자생산공급체계를 바로세워 생산성이 높고 지대의 기후풍토에 맞으며 순결률이 높은 종자를 제때에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종자를 생산공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종자의 생육조건을 보장하고 퇴화를 막으며 종자의 보관관리를 정해진대로 하여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된것만 리용한다. 그러나 알곡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대의 시험재배에서 좋은 것으로 평가되

있을 경우에 심는다.

종자의 등록과 검사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17조 농업에서 기본은 알곡생산이다.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벼, 강냉이, 감자, 콩을 비롯한 다수확알곡작물의 파종면적을 늘이고 비배관리를 잘하며 논벼생산에서 영양랭상모재배, 수직파재배, 불경재배, 소식재배, 밭농사에서 사이그루재배, 섞음그루재배, 같은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부침땅의 정보당 수확량을 높여야 한다.

제18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남새밭면적을 알맞게 정하고 영양가와 수확량이 높은 남새종류와 품종을 널리 받아들이며 남새의 정보당 수확량을 높여야 한다.

남새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기별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계단식재배, 온실재배를 하며 여러가지 앞선 남새재배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호, 기름, 약용, 섬유작물 같은 공예작물을 적지에 집중적으로 심으며 비경지를 리용하여 더 많은 공예작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20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모작방법을 받아들여 부침땅의 단위당 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다모작의 규모는 로력, 종자, 물, 비료조건을 타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축산물생산은 공동축산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부업축산을 배합하여 한다.

축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풀먹는 집짐승을 위주로 하면서 지대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집짐승을 기르며 그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2조 과일생산은 사과, 배를 위주로 하고 울과일과 늦과일, 로력과 농약이 적게 드는 수종, 품종을 배합하여 한다.

과수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실정과 지대적조건에 맞게 과일생산을 조직하며 점차 고급과일생산비중을 높여야 한다.

제23조 잠업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누에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누에를 배합하고 앞선 누에치기방법을 받아들여 고치생산을 늘여야 한다.

누에치기는 적기에 집중적으로 하며 먹이조건, 로력조건에 따라 균중적으로도 하여야 한다.

제24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영농공정에 따르는 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는 물사령체계를 바로세우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을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대기방법을 개선하여 물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

용하여야 한다.

관개용수를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작업의 종류와 범위를 늘이고 기계수단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업의 기계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용뜨락또르같은 기계설비는 농업생산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킬 수 없다.

제27조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비료, 복합미생물비료, 유기질비료, 농약, 살초제 같은것을 제때에 확보하고 과학적으로 리용하여 그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사람에게 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농약, 살초제는 농업생산에 리용할수 없다.

제28조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병해충예찰예보체계를 세우고 병해충을 제때에 적발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병해충발생지구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방역위원회를 내올수 있다.

제29조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바람, 고온, 저온, 우박, 서리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 농작물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작물의 손실을 막는데 필요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 자재, 로력을 동원시킬 수 있다.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제30조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농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나라의 귀중한 밑천이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31조 농업에서 토지는 기본생산수단이다.

농업토지에서는 농업생산에 리용하거나 리용하기로 된 토지가 속한다.

농업생산에 리용하는 토지에 대한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32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토지를 정기적으로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농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에 리용하려는 토지는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며 농업토지의 지목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석지를 개간하고 새땅찾기운

동을 적극 벌려 더 많은 농업토지를 얻어내야 한다.

토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는 내부망공사를 비롯하여 설계에 예견된 공사를 끝내고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개간한 농업토지를 농업생산단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개간한 농업토지를 넘겨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제때에 농업생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양분석을 주기적으로 하고 농업토지를 계획적으로 개량하며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여 농업토지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양분석시약, 토지개량제 같은것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계획을 세우고 뚝기논과 비탈밭, 빈땅 같은것을 정리하여야 한다.

정리하는 농업토지는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6조 농업지도기관과 과수농장, 잠업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 뽕밭적지를 바로 정하고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에 편리하게 건설하여야 한다.

과일나무, 뽕나무의 수종, 품종 배치와 그루바꿈은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제37조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 농목장, 해당 기업소는 관개수리시설과 설비를 개건확장하며 그것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중소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보수정비는 그것을 리용하는 단위가 할수 있다.

제38조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는 농업생산용저수지의 물을 제때에 확보하여야 한다.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저수시설을 마련하여 더 많은 물을 잡아야 한다.

제39조 전력공급기관, 기업소는 농업부문에 대한 전력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필요한 전력을 영농시기별로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형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농업부문에 요구되는 전력수요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40조 기계공업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업소는 농기계를 비롯한 농업설비와 농기구, 부속품을 수요대로 생산보장하며 농업설비, 농기구에 대한 보수정비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는 농업설비, 농기구를 알뜰히 다루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 국가는 농기계생산과 수리에서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대상과 신용보증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2조 화학공업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 농약, 살초제를 제때에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제43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림집짐승을 마련하고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44조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자, 집짐승먹이, 수의약품, 연료 생산기지과 인공수정기지 같은것을 실정에 맞게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제45조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풀먹는 집짐승을 기르기 위한 풀판적지를 조사장악하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좋은 풀판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협동농장의 농업토지와 관개수리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건설 같은 농업생산과 관련한 기본건설은 계획에 예견하여 국가자금으로 한다.

협동농장은 물질적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중소규모의 기본건설을 자체자금으로 할수 있다.

제47조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운수기관은 영농기자재를 농업생산의 기본단위인 농목장에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영농기자재는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48조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세포공학, 유전자공학을 비롯한 현대생물학과 농업생산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과 새로운 농업생산기술, 수단,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을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제49조 농업자원을 보호하는것은 농업생산의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방도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보호체계를 세우고 농업자원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0조 농업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피해로부터 농업자원을 보호할수 있는 물도랑과기, 하천정리, 사방야계공사, 제방공사와 사방림, 방풍림, 수원함양림의 조성, 다락밭건설 같은것을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대상을 조사장악하고 피해막이대책을 세우며 농업토지가 류실, 매몰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큰 규모의 농업자원보호시설은 전문기업소가, 작은 규모의 농업자원보호시설은 해당 리용 단위가 보수정비한다.

제52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토지를 농업생산에만 리용하며 그것을 목이거나 람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토지를 건설부지같은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대토를 확보하고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과 그 지대의 생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건설이나 해로운 물질에 대한 처리를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국가는 농업자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농업토지, 작잠림지, 밤나무림지, 관개수리 시설과 농사시험장, 원종장, 채종농장, 종축장의 필요한 지역에 보호구역 또는 격리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이나 격리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55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업자원보호구역에서 농업자원보호와 관련이 없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지 말고 돌, 나무, 모래, 흙 같은것을 채취하거나 파지 말며 격리구역에서 종자생산에 피해를 줄수 있는 작물을 심거나 집짐승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제56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 있는 좋은 토종을 보호증식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토종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7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업생산에 리로운 동식물의 생육, 번식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58조 기상수문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불리한 기후에 의한 농업자원의 손실을 미리 막을수 있도록 기상예보통보체계를 세우고 기상 예보와 통보의 신속성, 과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저수지, 갑문관리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에 의한 피해로부터 농업자원을 보호할수 있게 배수시설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제59조 농업생산물의 관리는 농업생산물을 장악, 보관하고 처리하는 사업이다.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은 농업생산물생산정형을 장악하여야 한다.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계량하여 빠짐없이 등록하고 농업지도 기관과 통계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의 수확, 탈곡, 선별, 운반, 가공, 처리 같은것을 알뜰히 하여 허실과 부패변질, 불량품을 없애야 한다.

제62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포장용기를 마련하고 쓸수 있는 용기를 제때에 회수리용하며 농업생산물포장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포장용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는 계획된 용기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63조 수매량정기관과 상업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기술적 조건과 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매한 농업생산물의 보관은 수매량정 기관, 기업소 또는 상업 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수매한 량곡을 국가중간창고에 실어나를 때까지의 보관은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제64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국가계획과 계약 그밖에 정해진데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벼는 겉곡으로 또는 정미하여 국가에 납부하거나 수매할수 있다.

제65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국가에 납부하거나 수매할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물에 대한 검사는 국가품질감독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기관이 위임한 기관, 기업소, 단체도 검사를 할수 있다.

제66조 농목장은 납새, 과일, 젖 같은 일부 농업생산물을 직매점을 통하여 판매할수 있다.

직매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농업생산물의 종류, 수량과 시기는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67조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수출할수 있다.

종자를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농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8조 농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농업관리를 개선하며 농업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농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69조 농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농업지도체계를 바로세우며 농업기술발전과 농업발전전망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농업생산전반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70조 지방농업지도기관은 지방의 농업생산을 책임지고 지도하며 농업에 대한 물질기술적 방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71조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은 농업사령체계와 기술지도체계를 세우고 농업생산의 모든 공정을 장악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며 농업을 기업적방법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2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농목장과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기업소는 국가의 계획적지도 밑에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며 기업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

농장은 농업관리운영에서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3조 국가의 토지를 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제때에 바쳐야 한다.

제74조 농목장은 농업에 대한 계획화사업과 로력, 재정관리를 잘하고 경제적공간을 리용하여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며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분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5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농업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76조 농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농업자원보호와 농업생산물관리질서를 지키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7조 농업생산물실적을 허위보고하였거나 부침땅을 람용하였거나 또는 농업시설물, 설비, 자재를 파괴, 손상시켰거나 농업생산물에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부업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단체에서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알곡수확량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업토지를 회수한다.

제78조 이 법을 어겨 농업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북한 인민경제계획법

주체88(199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

주체90(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2314호로 수정보충

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제1조 인민경제계획은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국가의 지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비준과 시달, 실행과 그총화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 수 있도록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킨다.

제3조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지도밑에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한 계획에 따라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제4조 인민경제계획은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면서 균형을 합리적으로 맞추도록 한다.

제5조 인민경제계획을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세우고 작성된 계획을 생산자대중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인민경제계획사업의 중요원칙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사업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자대중의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6조 인민경제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법칙과 현실적 조건을 옹계 타산하여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계획실행규률을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내도록 한다.

제7조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계획사업체계이며 방법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계획사업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맞물리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계획기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 인민경제계획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일군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능력 있는 계획일군을 체계적으로 키우도록 한다.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제10조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은 경제사업의 첫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조직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계획작성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의 정책은 인민경제계획작성의 기준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의 리용기준, 경영실태, 통계,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추세, 자연부원상태, 인구수 같은 기초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기초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는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할수 없다.

제13조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지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하여야한다. 인민경제계획지표의 분담은 국가적요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제14조 인민경제계획은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현행계획은 전망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제15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발전방향에 따라 생산적고정재산의 갱신과 확대, 자연부원의 개발, 과학기술발전 같은 경제발전에 주는 요인을 타산하여 인민경제 전망계획을 세워야한다.

제16조 인민경제현행계획의 작성은 예비수자를 묶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장성의 가능성을 타산하여 예비수자를 묶어야 한다. 예비숫자는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 국가계획기관은 예비수자를 검토하고 인민경제발전 방향에 따라 통제수자를 묶어 해당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받은 통제수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제수자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균중토의를 진행하고 인민경제계획초안을 만들어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제기된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초안을 만들어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 인민경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에 등록된 지표에 따라 세운다. 새로운 지표를 계획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국가계획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맞물리지 못하였거나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지표, 비준된 설계문건이 없는 지표는 인민경제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제21조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은 작성된 인민경제계획을 심의, 승인하고 집행할 단위에 내려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을 제때에 심의, 승인받아 집행할 단위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22조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작성된 인민경제계획을 최고인민회의 또는 지방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각과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불가피한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계획과 그 조절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지방의 인민경제계획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24조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비준된 인민경제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구체화하여 10월말까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 받은 인민경제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을 제때에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을 등록하지 않고는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제26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대조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계획의 시달정형을 료해하며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제27조 인민경제계획을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인민경제계획실행의 직접적 담당자는 생산자대중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자들에게 인민경제계획과 그 실행방도를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정확히 맺어야 한다. 계약은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제30조 해당 기관은 분기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월별로 분할하여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월별 분할은 분기인민경제계획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준비를 하여야 한다. 계획실행준비를 하지 않고는 생산과 건설을 할 수 없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 협동생산계

획에 예견된 제품은 월상순안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로동행정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인민경제계획실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 자재는 계획과 계약에 따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어 인민경제계획실행에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여유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동원, 조절하여야 한다.

제35조 내각과 해당 기관은 생산지휘체계를 바로세우고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그 실행대책을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매일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제품생산과 건설은 할수 없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민경제계획을 변경시켜 실행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총화

제37조 인민경제계획실행총화를 바로하는 것은 계획규률을 강화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정확히 실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총화하여야 한다.

제38조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은 월별, 분기별, 상반기, 년간으로 총화한다. 기업소와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순별로도 총화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예비적으로 총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계획기간이 끝나는 차제로 인민경제계획실행에 대한 완전총화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계획실행에 중심을 두고 련관된 지표들의 계획실행정형도총화하여야 한다.

제40조 인민경제계획실행 평가기준은 통계기관에 등록된 계획이다. 통계기관은 등록된 계획과 장악된 계획실행실적으로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에게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은 공시할 수 있다.

제6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

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국가계획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계획작성방법을 개선하고 그에 기초하여 계획사업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5조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며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제47조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류용, 낭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8조 이 법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3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농업정책

-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 (로동신문 7.19)
 -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종업원과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농업근로자의 꺾기모임이 17일에 진행되었음.
 -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꺾기모임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 계속 힘을 쏟으며 지대적 특성에 맞으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우량 품종의 종자를 널리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함.
 - 현대적인 기계수단이 갖추어진 조건에 맞게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나가야 함. 또한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 관철에 있어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여 쌀로서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해야 함.
- 논벼 생육후반기에 놓쳐서는 안될 문제 (로동신문 7.28)
 - 7~8월의 논벼농사는 뿌리농사라는 말이 있음. 이 시기는 아지치기가 끝나고 이삭아지가 결정되며 이삭이 생겨 여무는 기간임. 이 시기에 벼뿌리가 왕성하게 자라 길게 뻗어야 많은 영양물질을 빨아들여 논벼생육후반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앞선 논물관리방법을 받아들여 논벼뿌리활성을 높여야 함.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논물깊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 군에서 토양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논물관리방법을 받아들였음.
 - 둘째,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뿌리가 왕성하게 자랄 수 있게 영양원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함.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장을 비롯한 일꾼들은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미생물비료를 만들어 농장에 제공하여 농장에서 논벼뿌리발

육을 왕성하게 하는데 필요한 미량원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 하였음.

- 빠른 속도로 널리 보급되는 우렁이유기농법 (로동신문 8.1)
 - 우렁이유기농법은 물속에서 풀을 먹으며 자라는 우렁이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전혀 쓰지 않거나 또는 적게 쓰면서도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선진적인 농사방법임.
 - 농업성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인 우렁이 도입면적이 지난해에는 수천 정보로서 전년도의 8배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수만 정보로 지난해에 비하여 4배 이상 늘어났음.
 - 우렁이도입면적이 늘어나는데 따라 김매기에 들던 노동력과 농약이 절약되었으며 우렁이배설물에 의하여 토양 속의 유기질함량이 높아지고 논벼 생육상태가 좋아지고 있음.
- 기상조건과 논벼, 강냉이농사대책 (로동신문 8.6)
 -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8월 상순과 중순기간에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견됨.
 - 논벼농사에서는 8월 상순부터 원그루품종의 이삭패기가 시작되는 조건에서 이삭당 알수를 늘리고 천알무게를 늘릴수 있도록 비배관리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함.
 - 받을잎이 나오고 자라는 시기부터 이삭패는 시기사이에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와 뿌리썩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함.
 - 수정이 잘되지 않는 강냉이밭에서는 꽃가루 묻혀주기를 해야 함. 강냉이의 이삭당 알수는 수정후 20일 안에 결정되므로 수염이 마르는 시기에 질소비료를 알비료로 주어 후반기 영양을 좋게 해야 함.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로동신문 8.12)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63차 전원회의가 10일 평양에서 진행됨. 전원회의에는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중앙과 지방의 농근맹일꾼이 참석함.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농근맹조직과 농업

근로자 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라고 하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사회주의경쟁, 대중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함.

- 또한 단위별, 영농공정별 경쟁과 품종별 농작물 수확고를 높이며 과학농사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경쟁을 실속있게 벌리고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데 대하여 언급함.

2. 벼농사

☐ 풀베기, 풀거름

- 매일 수천 톤씩 베어들인다 (로동신문 7.26)
 - 울산군 협동농장에서의 농장, 작업반, 분조별 경쟁이 일어 하루 수천 톤씩 풀을 베어들이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
 - 군에서는 더 많은 풀을 베어들이기 위한 단계별 풀베기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베어놓은 풀을 제때에 수송하게 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음.
 - 연하, 성봉협동농장에서는 운반수단에 집중하고 있음. 작업반마다 1,000톤, 수백 톤 규모의 퇴적장을 만들어놓고 풀을 실어들이는 족족 쌓고 있음.
- 풀거름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 (로동신문 7.28)
 - 7~8월은 풀베기를 해야 할 시기임. 풀은 유기질비료생산의 중요한 원천임.
 - 풀을 베어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적장을 잘 만들어야 함. 퇴적장을 만들지 않고 풀거름을 생산하면 장마철 빗물에 의하여 비료성분이 씻겨 없어짐.
 - 여름철에 베는 풀은 탄소율이 낮고 물기가 70~80% 정도 충분히 들어있으므로 퇴적장에 소석회만 쳐서 쌓을 수도 있음. 풀더미를 다 쌓은 다음 반드시 흙을 덮어주어 물기와 비료 성분이 달아나거나 빗물에 씻겨내리는 것을 막아주어야 함. 풀을 쌓은 다음에는 늦어도 한달 안으로 더미를 뒤적여주어야 함.
- 질 좋은 풀거름을 더 많이 (로동신문 8.1)
 - 창도군에서는 올해 7~8월 풀베기 기간에 지난해보다 1.5배나 더 많은 풀거름을 생산할 목표를 수립하였음.

- 풀을 제때에 베어들이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한데 이어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에 풀베기과제를 정확히 주었음.
 - 대백협동농장, 지식협동농장에서는 베어낸 풀을 제때 실어들여 진거름도 퍼면서 높이 쌓고 있음.
- 당면한 풀베기와 풀거름 생산에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8.4)
- 풀은 대체로 5월부터 자라기 시작하여 8월에 거의 다 자람. 이시기 어느때 풀을 베는가에 따라 풀거름 생산실적이 크게 좌우됨. 풀거름 생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풀이 자라는 특성을 파악하고 적기를 정하여 풀베기를 해야 함.
 - 이를 위하여 평원군에서는 풀베기일정계획을 세우기 전에 군안의 풀베기 적지를 돌아보며 풀의 종류와 특성, 자라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동시에 지난 몇 해 동안의 풀베기정형을 분석하였음.
 - 모든 농장일꾼과 작업반초급일꾼은 지대적 특성에 맞게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베는 족족 실어들이도록 하고 있음.
- 수송수단을 효과있게 이용 (로동신문 8.4)
- 김정일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지력을 높이고 땅을 갈구자면 밀보리짚도 이용하고 풀베기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축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함.
 - 풀베기에서 은천군 일꾼들이 중시한 문제는 수송임. 풀을 벨수 있는 곳들이 대체로 강기슭이나 늪을 비롯한 수송조건이 불리한 지대들이었기 때문임.
 - 작업반, 분조의 실정에 맞게 트랙터를 비롯한 수송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풀이 많이 쌓였을 때마다 집중적으로 실어들이도록 함. 또한 수송수단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벼풀을 길썬까지 끌어내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음.
- 당면한 풀베기전투에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8.7)
- 평안북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선천군 은정협동농장에서 풀베기를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질 좋은 풀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를 농업부문 일꾼에게 알려주었음.
 - 정주시와 녕변, 천마, 염주, 태천, 대관, 동창군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시, 군의 협동농장에서 풀베기가 벌어지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풀거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꾼들을 시, 군에 내려

보내어 기술지도를 하고 있음.

○ 매일 80여만 톤의 풀베기 진행 (로동신문 8.16)

- 알곡 증수의 커다란 예비의 하나가 풀거름 생산 증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한 각지 농촌 일꾼들은 풀베기 사업에 앞장서고 있음.
- 평양시 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에 풀베기계획을 정확히 주고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만경대구역, 락랑구역, 력포구역, 강동군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그날 계획한 풀베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황해북도의 린산군, 연탄군, 중화군, 서흥군에서도 지대적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을 대대적으로 베어들이고 있음.
- 평안남도를 비롯한 다른 도의 농촌에서도 집집승우리 주변과 산기슭, 포전 가 사이에 퇴적장을 만들어 놓고 풀을 베어들이는 족족 쌓고 있음.

□ 가을걷이

○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서 주어진 본분을 다하자 (로동신문 8.27)

- 올해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철에 끝내기 위한 경쟁을 전국에 호소하는 쉼 기모임이 26일 장산협동농장에서 진행됨.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위원장, 리철만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허영호 도당위원회 비서 등이 참가함.
- 모임에서는 룡천군 농근맹 부위원장 김경수의 보고에 이어 장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방순화, 신암협동농장 작업반장 박원무, 장산협동농장 트랙터 운전수 장금철 등이 토론함.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룡천군 내 협동농장에서 당면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적기에 제대로 끝내야할 것을 강조했으며, 선전선동수단과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 가을걷이 준비로 들끓는다 (로동신문 9.2)

- 황해남도 도당위원회에서는 큰물피해 후 애써 가꾼 낱알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안의 농촌에서도 가을걷이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해주시와 각 군의 농기계작업소에서는 농기계의 수리정비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용진군 농기계작업소 일꾼, 노동자, 기술자들은 수습중에 달하는

많은 부속품을 생산하였음.

- 신천, 안악, 재령군의 농기계작업소에서도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부속품 생산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한편 기능이 높은 기술자, 수리공을 지역별로 파견하여 협동농장의 트랙터 수리를 적극 돕고 있음.
- 청단군 동대농장에서는 벼탈곡기를 노동력과 전기를 절약하고 탈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개조하여 제때에 낟알탈기를 끝낼 수 있도록 하였음.

○ 논벼 가을걷이에서 적기보장 (로동신문 9.20)

- 벼가을걷이를 제때에 해야 낟알손실을 막고 소출과 품질을 높일수 있음. 벼가을걷이를 늦게하면 벼대와 이삭목이 꺾어지고 벼알이 쉽게 떨어지므로 낟알손실을 보게 됨. 또한 들짐승, 우박에 의한 피해도 많이 받을 수 있음.
- 반면 벼가을걷이를 지나치게 일찍하면 앞에서 만들어진 빗합성 물질이 이삭에 채움겨가지 못하여 벼알이 완전히 여물지 못하고 천알무게가 가벼워져 소출이 떨어짐.
- 벼알은 꽃이 피어 수정된 다음 길이, 너비, 두께의 순서로 커지는데 벼알이 여물어감에 따라 농마, 기름 등 마른물질 함량이 점차 늘어남. 그러므로 생리적으로 볼 때 벼알의 길이, 너비, 두께가 다 늘어나고 벼알의 물기함량이 18~20%로 떨어지며 마른물질함량이 최대로 늘어났다가 더 늘어나지 않는 때를 가을걷이 적기로 규정할 수 있음.
- 논벼가을걷이 적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정확히 규정하여 애써 가꾼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도록 해야 할 것임.

○ 벼가을을 본격적으로 (로동신문 10.6)

-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꾼들은 농장에 필요한 지원노동력과 설비, 영농물자 등을 보장해주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제기되는 문제를 현지에서 해결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군농업경영위원회 일꾼들은 농장의 일꾼들과 합심하여 포전별, 날짜별로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가을걷이와 함께 운반을 동시에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평원군안의 협동농장에서도 가을걷이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 맞게 일제히 가을걷이에 들어감. 특히 삼봉협동농장에서는 《나를 따라 앞으로!》란 구령에 맞추어 가을걷이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벼가을을 끝냈다(로동신문 10.22)

- 태천군 은홍협동농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벼가을을 끝내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음. 지난 1일 벼가을을 시작한 그날부터 모든 작업반에서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1.6배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그리하여 모든 작업반에서 한 주일 동안에 벼가을을 끝내는 성과를 이룩함.
-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도 작업반간, 분조간 경쟁을 통해 지난 9일까지 벼가을을 모두 끝냄. 사리원시 미곡,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벼가을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벼가을을 먼저 끝낸 단위에서는 그 기세로 낱알털기를 다그치고 있음.

○ 벼가을걷이를 끝냈다(로동신문 10.225)

- 평안북도 도당위원회에서는 가을걷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지중하여 봄내, 여름내 애써 지어놓은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꾼들은 협동농장 작업반에 내려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업근로자들이 가을걷이를 빨리 끝낸데 이어 낱알털기를 실시하도록 추동하고 있음.
-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장산협동농장, 산두협동농장, 태천군 은홍협동농장,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를 제일 먼저 끝냄. 신의주시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체 면적의 벼가을을 빨리 끝내는 성과를 기록함.

□ 낱알털기

○ 낱알털기 능력을 1.2배로 높일 목표 (로동신문 9.6)

- 안악군 협동농장에서는 낱알털기 능력을 1.2배로 높일 수 있게 탈곡기를 개조하였음.
- 탈곡기를 개조하면 낱알털기 속도를 높여 종전보다 시간당 낱알을 수백 kg 이상 더 털어내게 됨. 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를 낮추면서도 북데기(타작 후 남는 으스러진 곡식의 줄기) 처리능력을 높일 수 있음.
- 이에 따라 마명, 봉성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에서 탈곡기 개조사업에 앞장서고 있음. 또한 당조직에서 작업반에서의 탈곡기 개조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8월말까지 탈곡기 개조를 성과적으로 끝냈음.

3. 발농사

☐ 콩농사

- 콩수확 준비를 빈틈없이 (로동신문 8.10)
 - 콩수확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은 콩농사를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임. 각지 농촌경리부문에서는 품들여 가꾼 콩을 허실 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함.
 - 농기계수리정비와 농기구 준비에 선차적인 힘을 쏟아야 함. 농기계작업소와 농기구공장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농기계수리와 부속품 생산을 다그쳐야 함.
 - 거두어들인 콩을 제때에 질적으로 털어 보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탈곡기 수리와 탈곡장 정리를 잘해야 함. 또한 모든 농장에서는 건조장과 창고에 빗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함.

☐ 가을걷이

- 당장이라도 탈곡할 수 있게 (로동신문 8.14)
 - 강서구역 삼묘협동농장에서 강냉이 탈곡기 수리정비를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는 농장에서 강냉이 가을걷이를 적기에 빨리 끝내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추진한 것임.
 - 일꾼들은 이미 있는 탈곡기의 수리정비를 실시하면서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비부속품도 넉넉히 갖추어놓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장의 작업반에서도 자체로 탈곡기를 수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었음.
 - 현재 농장의 기계화작업반원들은 수십대의 트랙터와 연결농기계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정비를 질적으로 하고 있음.
- 강냉이 가을걷이 준비를 철저히 갖추자 (로동신문 8.16)
 -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은 강냉이 가을걷이 준비사업의 성과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력해야 함. 협동농장 일꾼들은 작업반, 분조의 강냉이 가을걷이 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옳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함.

- 농기계의 수리정비에 힘을 써 트랙터,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의 만가동을 보장해야 강냉이를 제때에 수확하여 짧은 기간에 털어낼 수 있음.
 - 각지 농기계작업소에서는 농기계부속품생산에 힘을 쏟아야 함.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는 것과 함께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추진하여 부속품의 질을 높이고 수리기일을 앞당겨야 함.
 - 탈곡장보수를 잘해야 하며, 강냉이 가을걷이에 필요한 소농기구들을 넉넉히 마련해야 함.
- 밀, 보리수확 한창 (로동신문 8.22)
- 양강도 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봄내, 여름내 가꾼 낱알을 제철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삼수군에서는 밀, 보리가을을 끝낸데 이어 탈곡을 실시하면서 종자보관을 실시하고 있음. 대흥단군은 밀, 보리가을에 기세를 올리고 있음.
 - 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기능공들이 종합수확기의 만가동을 적극 보장하고 있음. 그리하여 군에서는 수확이 시작된 지 보름 남짓한 기간에 900여 정보의 밀, 보리가을을 해내는 성과를 거둠.
- 강냉이 가을을 제철에 끝내자 (로동신문 9.4)
- 강냉이 가을은 한 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임. 강냉이 가을을 제철에 빨리 해야 벼가을걷이와 가을밀, 보리심기를 비롯한 영농작업도 적기에 진행할 수 있고 낱알털기와 농사를 결속하는 사업도 순조롭게 할 수 있음.
 -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포전을 밟아보면서 강냉이가 익은 상태에 따라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해야 함.
 - 강냉이 가을걷이 일정계획은 포전별 가을걷이 순차와 날짜별 작업량,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밝히는 방법으로 세워야 함.
 - 또한 가을한 강냉이는 그날로 탈곡장에 실어들어야 함. 이와 함께 공정별 작업진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상황에 따라 노동력을 기동성 있게 배치하여야 함.

- 실어들인 강냉이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함. 가을한 강냉이는 옥수수껍질을 제때에 벗기고 털어내어 그 보관관리를 잘해야 함.
- 강냉이 가을걷이에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9.21)
 - 황주군당위원회에서는 봄내, 여름내 애써 지어놓은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해 농장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에서 강냉이의 품종별 특성과 기후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강냉이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이동수리를 조직하여 트랙터의 가동률을 더욱 높이고 있음. 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총동원하기 위한데도 힘을 넣어 강냉이를 가을하는 족족 걷어들이고 있음.
- 강냉이 가을걷이를 빠르게 (로동신문 9.27)
 - 9월 중순부터 도안의 전반적인 시, 군에서 강냉이 가을걷이에 일제히 진입하였음. 평안북도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가을걷이전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강냉이가을걷이를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기술적 지도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강냉이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면서 경제조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강냉이가을걷이에서는 정주시와 선천군, 꾀산군이 앞서 나가고 있음. 룡천, 태천, 철산, 동림, 피현, 박천군을 비롯한 군에서도 강냉이 가을걷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모작

-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를 제철에 (로동신문 9.22)
 - 애써 지은 농작물을 제때에 거두어들이는 것과 함께 가을철 씨불임을 제철에 하는 것 또한 당면한 과업임.
 - 앞그루밀, 보리는 가을에 심는 것이 좋음. 그래야 생육기일을 충분히 보장하여 두벌농사앞뒤그루에서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음. 가을밀, 보리씨뿌리기

적기는 10월 상순까지의 짧은 기간임.

- 농촌경리부문은 가을걷이와 씨뿌리기가 겹치는 조건에 맞게 치밀한 계획을 통하여 씨뿌리기 적기를 철저히 보장해야 함. 또한 가을밀, 보리씨를 뿌릴 포전을 잘 선정하고 준비를 해야 함.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가을밀, 보리씨뿌리기와 관련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해야 함. 또한 각 협동농장에서는 노동력과 기계수단,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가을걷이를 빠른 속도로 마무리하여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을밀, 보리심기 한창 (로동신문 9.23)

- 황해남도에서 가을밀, 보리심기가 시작되었음. 황해남도 은천군 삼산협동농장에서는 가을밀, 보리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음.
- 은천군은 밀, 보리심기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음. 가을걷이를 한 즉시 적지를 바로 정하고 씨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음. 신천, 안악, 재령군의 농촌에서도 가을밀, 보리심기를 적기에 실시하고 있음.
- 연안군 읍협동농장에서는 씨뿌리기를 하기 전에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냄으로써 해마다 밀, 보리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보았음. 이 농장의 경험을 적극 본받아 연백별안 농촌에서는 포전마다 거름을 넉넉히 실어내고 가을밀, 보리심기를 하고 있음.

4. 감자농사

☐ 감자농사 정책

○ 대흥단군 일꾼과 농업근로자들 (로동신문 7.21)

- 대흥단군 일꾼과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수만m의 배수로와 승수로를 보수하거나 새로 뚫으며 대흥단식과학농법의 요구대로 감자밭비배관리를 잘하여 큰물과 병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 놓았음.
- 7~8월은 고산지대의 감자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 이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큰물과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자각 하에

군인민위원회, 군농업경영위원회 일꾼들이 앞장서서 배수로, 승수로 정리를 단 5일 동안에 마무리 지음.

- 또한 기술일꾼, 트랙터운전수, 시약공들은 모든 감자포기에 농약이 골고루 뿌려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기술적 요구대로 실시하였음.

○ 감자가공품생산에 큰 힘을 (로동신문 8.1)

- 황해남도 도당위원회 지도 하에 도에서는 감자가공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감자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모든 군에 생감자가공을 위한 국수생산설비를 갖추어놓고 감자가공품을 생산하게 하였음.
- 안악군에서는 생감자가공을 위한 설비를 10여 대나 제작하고 원료의 선별부터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흐름식으로 꾸려놓아 모범을 보이고 있음.
- 연안, 배천군을 비롯한 연백별안의 군에서도 감자가공기지를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꾸리고 감자가공품생산에 들어갔음.

□ 감자 수확

○ 고산지대 농촌에서 감자캐기 시작 (로동신문 9.16)

- 모든 농장별이 감자캐기로 뚫고 있음. 농장일꾼들은 작업반에 나가 감자캐기에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모든 일을 기술적 요구대로 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음.
- 신흥, 농사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의 기계화초병은 농기계에 대한 정비를 꼼꼼하게 하여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매일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캐낸 감자를 제때에 실어들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 군감자수송대의 운전사들은 감자를 캐는 족족 실어들이기 위하여 자동차 관리에 어느때보다도 힘을 넣으며 운반회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장진군과 부전군에서는 포전별, 날짜별 감자캐기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있으며, 농장에서는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작업반에서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하고 있음.

○ 매일 수천 톤의 감자 수확 (로동신문 9.22)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대흥단군에서의 하루 감자수확량은 수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백 톤이나 더 많은 감자를 캐내고 있음.

- 대홍단군에서는 올해 포전마다 정보당 40~70톤의 질 좋은 거름을 내고 30여 종의 수만개의 중소농기구를 장만하여 감자농사준비를 빈틈없이 하였음. 특히 농장마다 유기질복합비료생산공정을 꾸리고 생산을 늘려 정보당 2톤 이상의 유기질복합비료를 포전에 실어냈음.
- 군의 모든 농장에서는 포전별, 날짜별 감자캐기계획을 세우고 감자종합수확기가 포전에 일시에 들어가 작업할 수 있게 받머리감자수확부터 빨리 끝내도록 하였음. 동시에 농기계를 만가동시켜 감자줄기를 걷어내게 하고 감자종합수확기를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작업할 수 있게 하였음. 이에 따라 감자캐기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음.

○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 (로동신문 9.25)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대홍단군 감자가공공장의 하루 감자가공능력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배로 뛰어오름.
- 감자처리공정을 담당한 생산자들은 높아진 감자가공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해 감자운반승강기, 감자흠분리기, 감자운반용벨트콘베어를 비롯한 많은 기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가동하고 있음.
- 세척, 분쇄, 정제공정을 맡은 생산자들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설비의 운전조작을 책임지고 하고 있음. 포장공은 작업장의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음.

5. 축 산

☐ 축산동향

○ 효능 높은 수의약품 새로 개발 (로동신문 7.21)

- 최근 국가과학원 도서관의 과학자들이 축산업부문에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던 집짐승과 가금의 구루병치료예방약을 개발하였음.
- 폐사율이 높은 집짐승과 가금의 구루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수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은 축산물 생산을 늘리는 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 중 하나임.
- 종전에 축산업부문에서는 집짐승과 가금의 구루병을 예방치료하는 데 값비싼

비타민 D3나 린산칼시움을 이용했으나 고회석을 원료로 하는 효능 높은 구루 병치료예방약을 개발하였음.

- 도 단위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이 수의약품은 집집승과 가금의 구루병과 골연 증 등에 대한 완치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비해 원가가 훨씬 싸 며 어디서나 쉽게 만들 수 있어 실리가 큼. 이 성과는 국가과학기술성으로 등 록되었음.

○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닭알을 (로동신문 7.28)

- 사리원닭공장의 일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닭알을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정상공급할 목표를 세우고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 고 있음.
- 당조직의 지도 하에 공장에서는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먹이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 기술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새 기술을 받아들인 결과 한달 동안 수십 톤의 먹이를 해결할 수 있었음.
- 한편 공장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여 놓은 먹이가공기지의 설비를 더욱 완비하고 만부하로 돌리고 있음. 이러한 노력으로 생산된 닭알이 사리원 시민들에게 공 급되고 있음.

○ 돼지공장건설 적극 추진 (로동신문 8.2)

- 회령시에서는 규모가 큰 돼지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군인건설자, 시의 당원, 근로자들은 수만 m³의 토량을 처리하고 방대한 기초굴 착과 지반형성, 지대정리를 단 5일 동안에 완수하였으며 돼지공장 앞도로 공 사를 한주일에 끝내는 성과를 창조하였음.
- 보조생산건물과 후생시설건설을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을 맡은 회령시의 청년 돌격대원들은 기초굴착과 기초콘크리트치기, 지하구조물공사와 벽체쌓기를 짧 은 기간에 끝냈음.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도림업관리국, 회령탄광기계공장, 청진강재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에서는 돼지공장 건설을 함께 책 임진 입장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량품종의 염소가 수만 마리로 (로동신문 8.10)

- 김정일은 “축산업에서는 마리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 높은 집짐승을 널리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함.
 - 김정일은 2003년 황해남도 계남목장에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의 염소를 보내 줌. 계남목장은 새 품종의 염소에 대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선진적인 교배방법을 받아들여 젓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의 염소마리수를 늘려나감.
 - 계남목장의 노력으로 새 품종의 염소마리수가 늘어났으며, 이에 맞게 도농촌 경리위원회에서는 계남목장에서 생산한 새 품종의 종자염소를 각 군에 계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음.
 - 이 과정에서 지난 8년간 도적으로 새 품종의 염소마리수는 수만 마리로 늘어났으며, 젓생산량도 크게 늘어났음. 계남목장만 보더라도 8년 전에 비해 수십 배나 되는 염소젖과 젓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음.
- 축산물 생산에서 계속 혁신 (로동신문 8.27)
- 각 도당위원회에서는 각지 현대화된 돼지공장에서 과학화,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축산물 생산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사리원돼지공장에서는 생산공정간 연계를 긴밀히 하고 어미돼지사양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는 동시에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주고 있음. 그리하여 전월에 비해 새끼돼지생산을 1.2배 이상 높였음.
 - 함주돼지공장에서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고 있음. 평북돼지공장에서는 생산성장의 예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새끼돼지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성과를 높이고 있음.
- 부림소 마리수를 늘린다 (로동신문 9.15)
- 황해남도 농촌에서 부림소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에 송아지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분조를 조직하게 하고 그 관리를 실속있게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여주기사업에서는 송아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분조의 조직과 그 관리 방

법 등을 강조함. 이와 함께 소우리를 잘 짓고 소의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문제도 알려줌.

- 채령, 신천군에서는 책임성 높은 농장원을 송아지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분조에 선발배치하고 그들이 소의 사양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원화리에 종합축산기지가 세워진다 (로동신문 9.21)

- 평원군에서는 원화협동농장에 현대적인 종합축산기지와 마을을 새로 세우고 농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목표를 세웠으며, 김정일은 농장의 축산토대를 잘 가꾸라는 의미에서 양, 돼지 등 집짐승 종자를 수백마리 보내었음.
- 지난 4월 종합축산기지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건설에 동원된 일꾼들은 모래원 천지인 하천 기슭에서 블록과 기와를 생산하여 한동의 집짐승우리 벽체쌓기를 이틀 동안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함.
-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철근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음. 못쓰게 된 기계를 산소용접을 하여 토막을 내고 도로까지 등짐으로 날라 수백리 떨어진 철근생산기지까지 운반하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였음.
- 1만 수천㎡의 부지에 세워지는 현대적인 종합축산기지건설이 완공되면 축산물 생산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해에 1천 톤의 질 좋은 유기질 비료가 생산되어 알곡생산도 높아지게 됨. 현재 종합축산기지의 집짐승우리 건설은 내외부 미장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살림집의 벽체미장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 고기와 알생산을 늘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자 (로동신문 10.27)

- 두단오리공장 종업원궐기모임이 25일 진행됨. 모임에는 리일환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김영남 평양가금지도국 국장, 관계부문 일꾼들, 공장종업원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리과대학 교원, 연구사를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가함.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빨리 자라면서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우량품종을 적극 받아들이고 종업원의 기술기능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현대적인 설비를 능숙하게 다루도록 할 것임을 밝힘.
- 사양관리와 위생방역사업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하고 미생물발효먹이와 동물성단백먹이를 생산하여 오리의 증체율을 높일 것임. 유기질 복합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업과 축산을 같이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할 것임.

○ 현대적인 돼지공장건설 마감단계 (로동신문 10.29)

- 회령시에서 현대적인 돼지공장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섰음. 이 돼지공장은 넓은 면적에 높은 생산능력을 갖춘 종합적인 축산기지임. 먹이가공으로부터 생산물 처리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려진 이 공장이 완공되면 인민생활향상과 농업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됨.
- 지난 4월 초 착공이 시작되었으며, 짧은 기간동안에 일꾼과 근로자들은 4만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돼지호동을 비롯한 20여 개의 생산 및 보조건물의 벽체쌓기와 지붕씌우기를 끝낸 기세로 마감공사속도를 높여감.
- 먹이가공공정을 비롯한 여러 공정의 설비조립을 맡은 건설자들은 힘을 합쳐 설비를 철저히 표준설계의 요구대로 조립하고 있음. 미장을 맡은 건설자와 도포포장을 맡은 단위에서도 높은 실적을 내고 있음.

6. 농업기반

□ 토지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사업

○ 치산치수사업을 군중적으로 (로동신문 7.31)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에서는 봄철에만 산들과 도로, 철길주변에 나무를 심었고, 2,800여 정보의 나무모밭에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를 심었음.
-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신의주시 선상지구에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영양단지성형공정과 야외삽목장, 수백㎡의 태양열온실을 가진 현대적인 양묘장건설을 기본적으로 끝냈으며 도안의 도로, 철길주변과 산들에 1억 3,40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전국적으로 봄철에 2만 4,200여 정보의 수유나무림, 1만 3,500여 정보의 종이원료림을 조성하였음. 또한 근 1,000km에 달하는 강하천을 정리하고 70여 km의 해안방조제를 보수했음.
- 황해남도에서는 벽성군 석동물길을 비롯한 70여 km의 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하고 룡매도간석지건설과 분지만소금밭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남포시 와우도 구역, 함흥시 회상구역에서는 중소강하천을 규모있게 정리하였음.

○ 늘어나는 선경도시, 선경마을 (로동신문 7.31)

- 올해 봄철에 각지에 8,500여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새로 건설되었으며, 수만세대의 살림집과 수천동의 공공건물이 보수되었음.
 - 평양시의 일꾼, 근로자들은 130여 만㎡의 녹지와 4만 3,100여 만㎡의 화단을 조성하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지구에 100여 세대의 살림집과 구십동의 공공건물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각지에서 새 도로건설과 이미 있던 도로의 기술개건에 힘을 넣어 새 도로를 건설하고 150km의 새 도로를 건설하고 450여 km의 도로기술개건을 성과적으로 진행했음. 또한 양어장건설과 보수사업도 진행되었음.
- 광산간석지 2단계공사 힘있게 추진, 9개 섬을 연결 (로동신문 8.24)
- 광산간석지 2단계 공사를 힘있게 추진하여 8월 23일까지 7호 방조제 1차 물막이공사를 완공함으로써 9개 섬을 연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9개 섬을 연결함으로써 앞으로 6호 방조제마감막이공사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음.
 -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와 광산간석지건설사업소가 맡은 10호 방조제전투장에서는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라는 구호 아래 10호 방조제를 설계대로 빨리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와 신의주간석지부재공장은 1호, 2호, 3호, 4호, 5호 방조제건설을 맡아 난관을 뚫고 나가면서 1차 물막이를 끝낸 기세를 몰아 상부구조완성을 위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능금도간석지 방조제공사 적극 추진 (로동신문 10.3)
- 황해도간석지건설사업소에서 능금도간석지 방조제공사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능금도간석지 건설은 또 하나의 대자연개조사업임. 이 공사가 완공되면 은룬군에는 많은 면적의 새땅이 생겨나게 됨.
 - 이 일대는 물보장조건이 좋아 물길공사만 하면 논벼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음. 또한 이 일대는 물길공사만 잘하면 장마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지을수 있음.
 - 돌보장을 맡은 건설자들은 간석지방조제공사를 성과적으로 해내는가의 여부가 본인들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 하에 발파를 위한 도갱굴진을 빨리 끝내기 위해 공구를 제때에 마련하면서 교대당 굴진속도를 높이고 있음.
 - 방조제공사를 맡은 운수직장일꾼과 건설자들도 운수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

면서 방조제공사에서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음.

○ 날바다를 가르며 제방이 뻗어간다 (로동신문 10.13)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에 참가한 황해남도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이 9월 한달 동안에 6만 5천여 m³의 흙을 처리하고 수만 m³의 돌을 채취하여 근 500m의 장석을 입히는 성과를 거둠.
- 과거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위훈을 세운 신흥, 양화, 청단간석지건설사업소의 노동자들이 연속천공, 연속발파로 연일 많은 돌을 채취하면서 제방을 기술적으로 쌓아가고 있음.
- 기계화사업소 노동자들은 자신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며 공사의 전진속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굴착기운전공과 자동차운전사들은 1구역과 6구역의 간석지건설장에서의 룬전기재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음. 주택건설사업소 노동자들은 간석지제방과 도로에 대한 기술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음.

○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에 온 힘을 (로동신문 10.24)

- 강원도 도당위원회 지도하에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에서는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에서 중심고리를 쥐고 역량을 집중하여 조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강원도에서는 지난 장마철에 입은 큰물피해흔적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데 중심을 두고 천내군 장풍천제방공사를 비롯한 시, 군의 하천정리를 끝내기 위한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 평강군에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수십정보의 논밭을 새로 복구하였음. 회양군과 금강군에서는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를 제때에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강하천정리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 있음. 도안의 시, 군에서는 장마철 피해를 입은 여러지역의 하천제방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음.

□ 물길공사, 저수지, 물보장 사업

○ 단천항 방파제공사 완공 (로동신문 8.22)

- 룡해운성 당위원회의 지도하에 10년 이상 걸리는 단천항 방파제 공사를 2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성함.

- 청진항만건설사업소대대와 홍남항만건설사업소대대의 일꾼들은 공사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거석조립, 대형부재조립, 뿔부재조립을 비롯하여 일정계획을 단 하루도 어김없이 수행하였음.
 - 기동려단 운수중대, 령남배수리공장대대, 항만운수중대의 수송전사들도 가파른 길을 넘나들며 하루 천여리 수송길을 달렸음.
 - 방과제공사가 완공된 건설장에서는 지금 부두완성공사가 마감단계에 접어들었음. 2, 3, 4호 부두공사가 이미 완공되었음.
- 하천을 새로 정리 (로동신문 9.27)
- 장마로 송화군의 약산천과 홍암천 제방이 여러군데 파괴되었음.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파괴된 약산천과 홍암천의 제방을 잘 정리하여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막돌채취를 맡은 근로자는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게 하였음. 군급기관 일꾼과 공장, 기업소노동자, 사무원들은 약산천 정리를 힘있게 추진하였음.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에서는 어려운 구간을 맡아 짧은 기간에 정리하여 제방을 튼튼히 쌓았음.
 - 군녀맹일꾼, 여맹원들은 수천m의 홍암천정리를 스스로 맡아 책임졌으며, 군의 책임일꾼들은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이신작적의 모범을 보였음.
 - 군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리와 구조물을 더욱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7. 산림

☐ 나무모 생산

- 가지삽목으로 이깔나무모 생산 (로동신문 8.6)
- 국토환경보호성의 해당 부문 일꾼들이 푸른 가지삽목에 의한 이깔나무모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지 양묘장에 나간 일꾼들은 푸른 가지삽목에 의한 이깔나무모 생산방법의 우월성을 해설해주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음.

- 양묘장에 나간 일꾼들은 우선 모판소독을 잘하고 습도와 온도를 알맞게 보장하도록 기술지도를 앞세우고 있음.
 - 린산, 연탄, 정평, 벽성, 은률군의 해당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덕천시, 평원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에서도 높이 세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마감나르기 성과 계속 확대 (로동신문 8.10)
- 강계임산사업소에서는 탄광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동발나무와 통나무를 보내주기 위한 마감나르기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작업소에서는 상차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자동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한편 큰물피해가 없도록 산지도로와 다리의 보수공사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 사업소의 일꾼들은 철도역과 가까운 작업소에 성능이 좋은 룬전기재를 배속시켜 마감나르기에서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 있음.
-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 완수 (로동신문 8.12)
- 임업성적으로 8월 10일 현재 십여 개의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 완수단위가 나왔으며 그 중 여러 단위에서 올해 통나무생산계획을 두 달이나 앞당겨 수행할 것으로 보임.
 - 강계임산사업소의 통나무 생산자들은 앞선 나무베기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결가지따기, 나무모으기, 사이나르기 등의 노력을 통하여 전반적인 작업공정에서 짧은 기간에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을 끝냈음.
 - 양강도 임업관리국 아래 유평임산사업소, 함경남도 임업관리국 아래 장진임산사업소, 평안남도 임업관리국 아래 평화임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관리국 아래 임산사업소에서도 난관을 해결하며 자체의 채벌조건과 실정에 맞게 산지통나무 생산계획을 완수하였음.
- 나무모생산의 튼튼한 토대 마련 (로동신문 9.14)
- 온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회전식분무장치에 의한 나무모 생산방법이 널리 도입되고 있음.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양묘장에서 회전식분무장치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을 도입하였음.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비롯한 각지 양묘장에서 회전식 분무장치에 의

한 나무모생산방법을 도입한 것은 나무모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됨.

- 회전식분무장치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면 야외에서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할 수 있음. 또한 적은 종자와 토지, 노동력 등으로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나무모 생산기일을 앞당길 수 있음.
- 동림군, 선천군, 철산군, 신의주시, 정주시를 비롯한 평안북도안의 시, 군에서도 회전식분무장치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나무모를 키워내고 있음.

○ 겨울철 통나무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로동신문 10.29)

- 강원도림업관리국에서 겨울철 통나무생산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음. 관리국에서는 지난해 통나무 생산경험에 비추어 생산준비에서 차례를 옮겨 정하고 일꾼들이 사업에 앞장서서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 관교림산사업소에서는 이달에 벌써 많은 구간의 도로닦기를 진행함. 통천림산사업소에서는 토장건설과 통쏘이길, 소밭구길과 자동차길닦기를 비롯한 겨울철 통나무 생산준비를 힘있게 실시하고 있음.
- 안변림산사업소에서 트랙터와 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에 대한 수리정비와 대용연료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착실히 해나가는 한편 부림소에 대한 관리를 잘해가고 있음.

8. 기타 작물

☐ 과수

○ 세계 굴지의 과일생산기지 (로동신문 7.23)

- 김정일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인민에게 과일을 공급하는데 뿐만 아니라 나라의 과수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본보기 농장이다”라고 말함.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 수준에 있어서 으뜸가는 본보기 과일생산기지임. 현재 농장의 과수원 총면적은 1천 여 정보나 됨.
- 농장의 과일나무 재배밀도는 대단히 높음. 세계적으로 앞선 과수재배기술인 V

- 형초밀식재배에 성공하여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 올라섰음. 또한 능률 높은 기계설비가 갖추어지고 방울식관수체계가 도입되는 등 과수업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음.
- 현대적인 돼지공장에 유기질비료공장을 건설하여 해마다 수천 톤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과수원의 지력을 더욱 높이는 한편 과수와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웠음.
- 최첨단을 자랑하는 과일가공기지 (로동신문 7.23)
-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은 연건평이 수만㎡에 달하고 여러 가지 과일을 농축하여 사이다, 쨈, 술, 식초, 향수, 샴푸, 린스 등 과일가공품을 한 해에 수만 톤을 생산해내고 있음.
 - 작업장마다 CNC화된 생산설비가 갖추어져 종합지령조종실을 통해 생산공정을 감시, 조종할 수 있어 원료처리부터 여과공정, 농축공정, 제품완성과 포장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었음.
 -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과일을 원료로 하여 만들기 때문에 가공품의 질이 매우 높으며, 제품포장공정은 흐름식으로 되어 있어 생산능률이 대단히 높음.
- 과수농장들 간 경쟁을 선포하는 모임 진행 (로동신문 7.31)
- 룡전과수농장, 덕성과수농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과일군, 고산과수농장 간에 현대적인 대규모과일생산기지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이 선포되었음.
 - 모임에서는 과일생산체계와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우량품종의 사과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모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등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 잘 갖추어나갈 것을 강조했음.
 - 또한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건설하여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실현하여 정보당 과일수확고를 높일 것을 강조했음.
- 사과맛 경쟁이 벌어진다 (로동신문 8.10)
- 김정일은 “아무리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라고 하여도 비배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훌륭한 결실을 볼 수 없다”고 말함. 이에 농근맹중앙위원회에

서는 각지 과수농장에서 사과맛 경쟁을 벌리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꾼들은 연구사와 함께 사과의 맛, 크기, 모양, 색깔에 이르기까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영농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농장에서는 키낮은사과나무의 접그루, 품종, 재배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나무의 자라기와 열매맺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여름가지자르기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룡전과수농장에서는 고성능분무기를 비롯한 약뿌리는 기계의 조작을 잘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데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

○ 사과따기 시작 (로동신문 8.23)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심은 키낮은사과나무는 수확고가 높을뿐 아니라 심어서 1~2년이면 열매를 딸수 있는 실리가 큰 우량품종의 사과나무임.
- 김매기, 약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키낮은사과나무를 정성껏 가꾼 결과 2년 전 봄에 심은 나무마다 평균 수십알, 최고 100여 알의 크고 탐스런 열매가 달린 것은 물론 올해 봄철에 심은 키낮은사과나무에도 열매가 많이 달림.
- 사과의 당함량과 산함량을 따져가며 호원별 사과따기적기를 바로 정하여 모든 작업반에서 사과따기가 시작됨. 4, 8작업반에서는 하루동안에만도 10여 톤의 사과를 따들임.

○ 드넓은 과원에서 사과따기 한창 (로동신문 9.23)

- 북청군 룡전과수농장에서는 사과따기가 한창임. 농장에서는 노동력과 기계를 집중하여 우량품종의 사과를 정성껏 따들이고 있음.
- 함경남도당위원회와 북청군당위원회에서는 올해 과수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우량품종의 사과나무재배기술을 완성하여 과일생산을 늘리기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 각 농장의 일꾼, 종업원은 수백정보의 과수원에 질좋은 유기질거름과 흙보산 비료를 많이 내어 땅의 지력을 높이고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시하였음.
- 룡전과수농장의 사과따기에서는 과수 제4작업반과 제3작업반이 앞서고 있음. 기계화작업반의 트랙터운전수, 자동차운전사는 잘 익은 사과를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과일보관고로 실어나르고 있음.

○ 평양과수농장 현대화공사 시작 (로동신문 10.13)

- 평양과수농장 현대화공사가 시작됨. 과수연합총회사와 평양시 과수연합회사, 력포구역의 책임일꾼들은 여러차례 현지를 답사하면서 공사대상과 공사량을 정확히 확정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웠음.
- 과수농장 현대화공사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단계 과수원 토지정리 면적만 해도 수백정보에 달함. 이곳 일꾼들은 올해에 자체의 힘으로 15만 여 m²의 토량을 처리하여 수십정보의 토지를 정리하고 수천 m의 도로공사, 1만 5천 여대의 콘크리트지대세우기를 진행할 목표를 세웠음.
- 이 공사가 끝나면 과수농장의 청춘과원에서는 사과는 물론 추리, 복숭아, 배 등 갖가지 울과일과 늦과일이 생산되게 됨. 이미 수십정보의 새 과수원에 새 울 콘크리트지대생산이 성과적으로 끝남.

□ 남새

○ 새형의 남새온실 건설 (로동신문 9.7)

- 황해북도 사리원시 대성협동농장의 넓은 부지면적에 건설된 새형의 남새온실은 한 개 호동의 면적이 수백m²임. 이런 10개의 호동이 지열과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겨울에도 신선한 남새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의 실정에 맞게 지열과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온실설계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하고 노동력 조직과 자재보장사업을 추진하게 하였음.
- 공사가 입체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지휘부의 일꾼들은 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주변정리와 울타리쌓기를 비롯한 모든 일을 일정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조직하고 있음.

□ 버섯, 약초

○ 실리가 큰 새로운 버섯품종 개발도입 (로동신문 8.24)

-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 일꾼, 과학자들이 겨울철에도 재배를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저온성 느타리버섯품종을 연구해낸데 이어 이것을 전국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연구소에서는 해당 단위에서 겨울기간에도 버섯재배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과

학기술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연구소적인 중심과업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 연구소의 과학자와 종업원들은 많은 단위에서 수시로 요구되는 버섯종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종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과학자들은 현지에서 종균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도입하여 종전의 수십배나 되는 많은 양의 종균을 손쉽게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유채

- 많은 면적에 유채를 심었다 (로동신문 10.7)
 - 강원도에서 유채를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안의 농촌, 기관, 기업소에서 모두 유채심기를 실시하여 많은 면적에 수확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유채를 제철에 심어 가꾸고 있음.
 - 도당위원회에서는 유채농사를 잘한 단위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 모든 단위에서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안변도 사평협동농장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그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에서는 높아진 열의에 맞게 가을에 유채를 더 많이 심을 높은 목표를 내걸고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9. 기타 보도 동향

□ 농기계

- 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로동신문 8.5)
 - 해주연결농기계공장의 일꾼, 노동자, 기술자들이 모내는기계 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수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규격품작업반원들은 3대혁명소조원과의 연계 밑에 수많은 자료를 조사한데 기초하여 온도자동조종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공정상 요구에 맞게 열처리를 과학화할 수 있게 하였음.
 - 장비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가열로 운영방법을 연구완성하여 전기

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소재생산을 늘릴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음.

- 가공직장의 일꾼, 노동자, 기술자들은 모내는기계의 부속품 생산에 필요한 지구, 공구를 자체로 창안제작하여 생산성을 종전에 비하여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음.

○ 농기계 수리정비를 앞세우자 (로동신문 8.14)

- 가을걷이 시기 전에 농기계 수리정비를 빈틈없이 해놓아야 가을걷이 시기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애써 가꾼 낱알을 적기에 빠르게 거두어들일 수 있음.
- 각지 농기계작업소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지혜와 힘을 합쳐 농기계수리와 부속품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나가야 함. 각지 농촌에서는 농기계 수리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함. 협동농장 일꾼들은 가을걷이 준비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농기계 수리정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시급히 풀기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각지 트랙터부속품 공장과 연결농기계공장을 비롯하여 부속품생산을 맡은 단위의 일꾼, 노동자들은 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더 많은 농기계부속품을 농촌에 보내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탈곡기를 자체의 힘으로 (로동신문 9.13)

- 청단군 동대농장에서는 가을걷이를 앞두고 모든 작업반의 이미 있던 벼탈곡기를 능률적인 탈곡기로 교체함.
- 새로 제작설치한 벼탈곡기는 종전의 벼탈곡기에 비해 노동력이 절반이나 줄어듦. 또한 다루기 간편하며 동력을 적게 씀. 탈곡과정에서 먼지가 나지 않아 작업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벼탈곡의 질이 높음.
- 농장에서는 여러해 전부터 한 개 작업반씩 능률적인 이 벼탈곡기를 만들어 교체하였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제11작업반의 탈곡기를 교체함.

□ 장마철 대비, 큰물 피해복구

○ 장마철 피해방지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로동신문 7.19)

-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에서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준비성 있게 추진하면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중소발전소관리국에서는 장자강에 세운 홍주청년 1호, 2호 발전소가 큰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관리국 일꾼들은 시, 군중소형발전소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큰물피해를 받지 않게 언제구조물관리, 수문조작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장마철 병해충과 피해막이대책 (로동신문 7.20)
-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병해충을 보면 해충으로는 벼잎말이벌레, 벼강충이, 병으로는 벼희잎마름병, 벼무늬마름병, 강냉이뿌리썩음병 등이 있음.
 - 벼잎말이벌레와 벼강충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벼를 튼튼히 키우는 한편 병해충 예찰사업을 강화해야 함. 도, 시, 군식물방역소 일꾼과 농장기술일꾼들은 장마철의 기상상태를 매일 알아보고 그에 맞게 예찰조직을 조직하여 벼잎말이벌레나 벼강충이가 날아드는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함.
 - 벼희잎마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삭비료를 논벼의 생육상태와 기상조건에 맞게 주어야 함. 이삭비료는 많이 줄 경우 기상조건이 나빠지면 벼희잎마름병 피해를 더 심각하게 하므로 생육상태와 기상조건에 맞게 비료주는 시기와 양을 잘 정해야 함.
 -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장에서는 질소비료양이 늘어나는데 맞게 대용린, 카리, 규소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미량원소비료를 구색이 맞게 시비하여 논벼의 생육을 좋게 해야 함.
- 한포기도 물에 잠기지 않게 (로동신문 7.29)
- 문천시 남창협동농장에서는 한포기의 곡식도 큰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기간 큰물피해를 받았던 포전을 일일이 밟아 보면서 갑자기 무더기비가 내려도 곡식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웠음.
 - 농장에서는 이미 세워진 배수체계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과 함께 고인물을 빼기 위한 양수장 건설을 추진하여 어떤 무더기비가 와도 고인물을 뿔수 있도록 하였음.
 - 논물관리공들은 벼의 생육상태에 따라 논물깊이와 온도를 정확히 보장하고 예견되는 날씨조건을 고려하여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장마철 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로동신문 8.1)
 - 광산군에서 장마철 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한포기의 곡식도 피해를 입지않게 하고 있음.
 - 군책임일꾼들은 해안방조제와 저수지, 강하천, 배수양수장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위험지역을 찾아내고 빠른 기일안에 정리, 보수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군일꾼들은 해안연선의 길이가 수십km나 되고 많은 농장들이 바다를 끼고 있는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해안방조제보수를 앞세워서 농작물이 해일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웠음.
 - 또한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 배수양수장을 만가동시켜 농작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놓았음.
- 장마철에 맞게 (로동신문 8.5)
 - 은률군에서 장마철 도로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군일꾼들은 얼마전 무더기비와 태풍으로 일부구간의 도로가 패이고 가로수가 넘어지자 즉시 대중을 조직 동원하였음.
 - 도로정리에 나선 일꾼,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여러 구간의 도로 양옆 경사면을 정리하여 견고성과 문화성이 보장되게 하였음. 또한 집중호우로 운송수단이 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여러 구간의 도로를 평탄성이 보장되면서도 견고하게 정리하였음.
 - 군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장마철 도로관리에 계속 힘을 쏟고 있음.
- 장마철 피해막이를 빈틈없이 (로동신문 8.7)
 - 큰물피해막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사리원시 대성협동농장에서는 우선 물길정리문제를 중시하고 있음. 따라서 매일 같이 물길을 돌아보며 정리대책을 세우고 있음.
 - 수천개의 가마니와 마대에 흙을 넣어 물길제방을 보강하였으며, 물길구간을 정상적으로 돌아보며 큰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물도랑정리에 흙을 들여 남새밭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불굴의 정신력으로 떨쳐나섰다 (로동신문 8.10)

- 지난 6월 말에 태풍 5호의 영향으로 도안의 전반적 지방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많은 비가 내렸음. 7월 말에 이어 8월에 연이어 들이닥치는 태풍과 무더기비로 수만 정보의 농경지가 또다시 침수 및 매몰되고 도로와 강둑, 살림집, 공공건물 등 많은 대상이 피해를 입었음.
- 황해남도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에서는 피해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와 시, 군에 큰물피해복구지휘부가 조직되어 사업에 착수함.
- 도안의 모든 군에서는 파괴된 살림집과 공공건물, 다리, 도로를 복구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일꾼들은 피해를 입은 농장, 작업반에 나가 농업근로자와 함께 물빼기양수장의 설비를 만가동시키고 매몰된 농작물을 살려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큰물피해복구 전투를 힘있게 (로동신문 8.16)
 - 최근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배천군의 농장이 큰 피해를 입었음. 많은 농경지가 침수, 매몰, 유실되었으며 도로와 물길제방 등이 적지 않게 파괴되었음.
 - 배천군에서는 큰물피해복구 지휘부를 긴급히 조직하고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군의 책임일꾼들은 현장에 나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군 일꾼들은 피해를 입은 농장, 작업반에 나가 물빼기 양수설비를 만가동시키고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정촌협동농장에서는 산사태로 인하여 매몰된 농경지를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복구하고 있음.

□ 현지도

-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현지도 (로동신문 7.22)
 - 김정일은 당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꾼인 김정은, 리영호, 김기남, 최태복, 장성택, 김정각, 김영일, 김양건,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춘, 김창섭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김경옥, 김원홍, 김영철, 윤정린, 국방위원회 국장 현철해와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현지도 함.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군인건설자, 618건설돌격대원, 지원자, 농장종업원들의 노력에 의해 확장되었음. 이들은 3단계에 걸쳐 1,000여 정보에 달하는 과수원의 토지정리를 진행하고 360여 만 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었으며 총연장길이가 140여 km에 달하는 도로건설, 2,800여 km에 달하는 전호식구덩이 파기, 1,400여 km에 달하는 방울식관수시설, 1,260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불과 2년 사이에 대동강 지구의 원흥리, 도덕리, 삼성리를 굴지의 과일생산기지로 전변시킴.
- 연건평이 4만 9,000㎡인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은 사과와 배, 복숭아, 딸기를 비롯한 과일을 농축하여 각종 단물과 사이다, 쨌, 술, 식초, 향수, 샴프, 린스 등 과일가공품을 한해에 수만 톤씩 생산해낼 수 있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과일가공품 생산기지임.
- 룡전과수농장 현지도 (로동신문 10.4)
 -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김기남, 정치국 위원 김경희, 정치국 후보위원 장성택, 정치국 후보위원 박도춘, 태종수,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곽범기,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박봉주와 룡전과수농장을 현지도함.
 - 룡전과수농장은 과수원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농장을 대규모의 종합적인 과수농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새로 조성한 키낮은사과밭에서 정보당 과일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렸음.
 - 김정일은 룡전과수농장이 과수업에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과 튼튼한 토대,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며 농장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이미 조성한 과수원에서의 과일생산량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농장에서 생산된 과일을 한알도 허실하지 않게 하려면 노동력을 계획성 있게 조직하여 사과따기를 제철에 제때에 하며 과일보관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과일가공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함.
- 중앙양묘장 현지도 (로동신문 10.10)
 - 김정일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장성택, 박도춘, 문경덕, 주규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용하와 중앙양묘장을 현지도함.
 - 중앙양묘장은 170정보의 부지면적에 채종구, 풍토순화구, 품종보존구, 파종구

로 나누어져 있으며, 계절에 관계없이 식수를 보장할 수 있는 굴지의 나무모 생산기지임.

- 중앙양묘장에서는 4정보의 야외재배장에서 공업적인 방법으로 지난 기간 40여 정보에서 생산하던 양에 해당하는 나무모를 생산해내고 있음. 이는 경지면적이 제한된 북한의 실정에서 매우 혁신적이며 우월한 방법임.

○ 두단오리공장 현지도 (로동신문 10.12)

- 김정일은 중앙위원회 정치국 의원 김경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장성택, 문경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박봉주와 두단오리공장을 현지도함.
- 대동강반에 위치한 두단오리공장은 인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개건현대화가 훌륭히 실현된 대규모 고기생산 및 가공기지임. 13만 4,000여 m²에 달하는 두단오리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은 자동화, 컴퓨터화되어 있음.
- 또한 미생물발효먹이와 동물성 단백질먹이를 우리식으로 연구개발하여 고기생산 날짜를 훨씬 앞당겼으며 7천 톤의 고기생산에 필요한 먹이량을 25% 이상 절약하면서도 증체율을 높일 수 있게 한 성과를 이룩하였음.

○ 대동강 돼지공장 현지도 (로동신문 10.14)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김경희,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장성택, 박도춘, 태종수, 문경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룡하와 대동강 돼지공장을 현지도함.
- 대동강 돼지공장은 고기생산과 가공에 필요한 사료가공, 먹이 및 물공급, 돼지 우리의 조명과 습도조절 등 모든 공정이 컴퓨터에 의해 조작되며 배합사료 가공공장, 유기질비료공장을 비롯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 최신식설비가 갖추진 천톤 능력의 돼지공장이 건설되어 축산물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많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보내줌으로써 과수와 축산의 순환식생산체계를 실현하였음.

○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현지도 (로동신문 10.18)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김경희,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장성택, 박도춘, 조선로동당 함경남도 위원회 책임비서 곽범기,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재일, 박봉주, 한광상과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함.

- 동봉협동농장은 농사제일주의방침을 받아들여 불리한 자연기후속에서도 올해 농장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알곡은 101.5%, 남새는 105%, 과일은 117%, 고기는 110%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둠.
- 최근에는 동봉협동농장에 메탄가스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이 새로 건설되었음.

국내매체 보도 동향

1. 경제일반

☐ 북, 외화벌이 무역회사·기관 200여 개 달해

- 정부 소식통은 8월 17일 북한이 발행하는 'Foreign Trade' 잡지를 분석한 결과, 외화벌이에 나서는 북한의 무역회사나 기관이 총 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상당수는 북한의 내각이나 군 등에 소속된 회사일 것으로 추정함.
- 소식통은 그러나 "같은 회사를 다른 이름으로 소개한 예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숫자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음. 실제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대북제재에 따라 대외 활동을 할 때 회사나 기관의 이름을 수시로 바꿔 활동하고 있음.
- 정부는 북한의 외화벌이 주체를 크게 내각, 군부, 합영투자위원회, 대풍국제그룹 등으로 구분하고 여러 무역회사나 기관이 이들 네 그룹에 속해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음.

아시아투데이, "北, 외화벌이 무역회사·기관 200여 개 달해", 2011.8.17

연합뉴스, "북, 외화벌이 무역회사·기관 200여 개", 2011.8.17

☐ 北 대북지원 분배현장 모니터링 사실상 수용

-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분배현장 모니터링' 요구를 북한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음.
- 18일 통일부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지난 3~6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를 방문, 밀가루 분배현장을 모니터링한 뒤 관련 동영상 등을 통일부에 제출했음.
- 이번 모니터링은 통일부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지원물품에

대한 분배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정부에 제출하기는 처음임.

-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는 “현장에서 모니터링 수위를 놓고 남북한 실무자들이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있다”며 자칫 지나친 ‘증거 위주’의 모니터링이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음.
-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5·24조치 등으로 중단됐던 대북 밀가루 지원이 8개월여 만에 재개된 이후 3주 남짓한 기간 민화협, 천주교 등 4개 단체가 밀가루 1,462톤 등 8억 6천 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음. 불허사례는 1건도 없었음.

연합뉴스, "北 대북지원 분배현장 모니터링 사실상 수용", 2011.8.18

□ 北 환경보호법 개정…재생에너지 개발 의지

- 북한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용,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등의 내용을 환경보호법에 추가했다고 18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총 4장 50조로 된 ‘환경보호법’의 제3장에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이용, 환경인증제도 실시, 재(再)자원화 기술도입과 관련해 각각 제38조, 제39조, 제40조를 추가했음. 또 제4장에는 ‘환경경제지표의 계획화’ 내용이 담긴 제44조, ‘환경실태장악’과 관련된 제48조를 추가했음.
- 중앙통신은 법 개정 소식과 함께 “각 기관과 기업소, 단체들이 이런 법규에 기초해 환경보호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석탄, 원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은 올해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맞춰야 하는 선진국들에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수력발전소와 평양방직 공장 등 8곳에 대해 청정개발체제(CDM)등록을 신청했음. 이중 예성강 3·4·5호 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 4곳에 대한 자격심사(Validation), 나머지 5곳은 사전 고려대상(Prior Consideration)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北 환경보호법 개정…재생에너지 개발 의지", 2011.8.18

□ 장마당·암시장 유통자금 5억불 충격 받은 북한

- 북한에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세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들이 북한 내부에서 유통시키는 자금이 미화 5억 달러(약 5,357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의 시장경제 규모가 알려진 것은 처음임.
 - 한 대북소식통은 18일 “북한 당국이 최근 조사기관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형성된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위층 인사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북한 당국이 시·도별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통상적으로 물품 판매가 이뤄지는 장마당이나 물밀 거래가 이뤄지는 암시장 등을 포함한 것임.
 - 그는 “이들 시장 세력은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생필품 등을 구입해 북한으로 들여와 파는 군이나 당 고위직의 친·인척 및 순수 민간 자영업자 그룹”이라며 “최근 시장 세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시장 세력을 억제하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내부의 시장 규모를 조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장마당을 총 300여 개로 추정하고 있음.
- 한국일보, "장마당·암시장 유통자금 5억불 충격받은 북한", 2011.8.19

□ 북한, 나선-금강산 해상관광 시작

- 북한의 나선과 금강산을 오가는 국제관광단의 해상관광이 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나선시에서 나선-금강산 시범관광을 위한 국제관광단의 출항식이 열렸으며 “4박5일 일정의 이 관광은 조선의 동북단 라선시에서 화객선 만경봉호를 타고 조선동해를 유람하면서 금강산에 도착해 그곳에서 세계에 이름난 구룡연과 만물상, 삼일포, 해금강 일대 등을 탐승하게 돼 있다”고 전함.
- 재일교포 북송수단으로 유명했던 만경봉호는 출항식 후 나진항을 출발했고 31일 강원도 고성항에 입항할 예정임.

- 이번 시범관광에는 미국·러시아·유럽·중국·일본 등의 투자기업과 관광회사 관계자, 중국 동북3성 대표단, 미국의 AP와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영국의 로이터, 일본의 아사히신문, 홍콩의 봉황TV, 중국의 환구시보 및 CCTV, 동북3성의 흑룡강신문·길림신문·요령신문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북한, 나선-금강산 해상관광 시작", 2011.8.30

□ 北, 외국인 전용 휴대전화망 폐쇄

- 북한에서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던 휴대전화망 ‘선넷’이 작년 말 폐쇄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이 방송은 북한 내 유일한 휴대전화 사업자로 이동통신회사 고려링크를 설립한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0년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정부가 2002년부터 소유와 경영을 해온 제2세대 휴대전화사가 작년 4분기에 폐쇄됐다”고 전함.
- 북한은 2002년 태국 통신회사 록슬리와 제휴해 2세대 휴대전화사업을 시작했으나 2004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 용천역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사업을 갑자기 중단했으나 기존의 휴대전화망을 이용해 외국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신망 선넷을 운영하기 시작함.
- 오라스콤 텔레콤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는 66만 6,517명임.

연합뉴스, "北, 외국인 전용 휴대전화망 폐쇄", 2011.9.1

□ 北 결핵환자 급증…“감기처럼 들고 있다”

- 최근 북한 내 결핵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방역 및 의료체계마저 정상 가동되지 않아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전함.
- 평안도 소식통은 7일 “조선에서 가장 유행하는 병이 결핵이다. 심한 곳은 열에 셋이 걸릴 정도로 심하다”며 “병원에도 온통 결핵환자다. 배급이 끊기고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니까 병이 만연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함.
- 이와 관련 북한에서 결핵 퇴치사업을 해온 미국 스탠퍼드대 샤론 페리 박사는

최근 5년간 북한에서 결핵보균자가 매년 10% 증가했다고 말함.

- 현재 의약품 부족도 심각해 병원에서도 처방전만 발급해주는 수준임. 때문에 치료약은 모두 장마당 등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함. 국제사회의 지원 의약품들도 공공연히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함.

데일리NK, "北 결핵환자 급증..."감기처럼 돌고 있다", 2011.9.7

□ 北산림, 매년 서울 면적 2배씩 사라진다

- 14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 면적은 1990년 820만 6,000ha에서 연평균 12만 7,000ha가 사라지면서 지난해에는 566만 6,000ha 수준으로 준 것으로 추정됨. 매년 서울시 면적(6만 500ha)의 2배 이상이 사라진 셈임. 1970년 북한이 발표한 977만 3,000ha에 비해서는 40년 만에 무려 43.0%나 감소함.
- 최근 국립산림과학원도 위성 영상자료 분석에서 북한의 황폐화한 산림이 1999년 163만ha에서 2008년 284만ha로 서울시 면적의 약 20배인 121만ha가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음.
- 유엔개발계획(UNDP)은 200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환경파괴와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 초안을 만들었다가 중단됐으나, 2009년 1월부터 환경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7가지 프로젝트를 재개함. 지난해 6월 유엔환경계획(UNEP)도 산하 '지속개발을 위한 환경기구(IESD)'를 통해 평양을 방문, 북한 당국과 협의를 진행함.

세계일보, "北산림, 매년 서울 면적 2배씩 사라진다", 2011.9.15

□ 北-EU 올 상반기 교역 60% ↓

- 올해 상반기 북한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교역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량 감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함.
 - 방송은 EU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올 1~6월 EU와 북한간 교역 규모는 4천 580만 유로로 작년 상반기의 1억1,550만 유로보다 60%가량이 줄어든 액수라고 설명함.
- 북한의 대 EU 수출액은 3,017만 유로, 수입액은 1,560만 유로이며 EU 국가 중

에서 북한과의 교역액이 많은 순서는 독일(1,800만 유로), 네덜란드(1,360만 유로), 이탈리아(380만 유로) 등임.

- 북한이 EU에 많이 수출한 품목은 의류(1천만 유로), 소금 및 유황(850만 유로) 순이었고, 북한이 EU에서 많이 수입한 품목은 기계류, 광학 물질, 전기제품 등이었음.

연합뉴스, "北-EU 올 상반기 교역 60%↓", 2011.9.17

☐ 중국 “북한에 기상장비 제공할 듯”

- 중국이 북한에 기상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전함. 이는 지난 3월 세계기상기구가 북한의 기상장비 시설이 뒤쳐져 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상장비 지원에 대한 호소를 한 데 따른 것임.
- 세계기상기구는 “이번에 중국이 북한에 기상 장비를 지원할 방식은 자발적 협력 사업의 형식을 띠 것”이라고 전함. 이 기구는 그러나, “보통 기부국이 지원 의사를 밝힌 후 장비 확보 등 준비 절차를 밟는데 몇 개월 걸린다며, 기상 관측 장비들이 제공될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3월 8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전문가단을 파견해, 기상 설비와 예보 수준을 점검함. 방북 후 이 기구는 “북한에 기상예보, 홍수와 가뭄의 관리 시설, 기상 관측소, 위성통신 설비가 매우 낙후돼 기부 국가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힘.

노컷뉴스, "북한에 기상장비 제공할 듯", 2011.10.7

☐ 중국, 北 혜산청년광산 본격 운영

- 북한 최대 규모의 동 광산인 혜산청년광산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운영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 합작사업은 중국 완샹그룹의 자회사와 북한의 혜산동광이 2007년 설립한 북중 합자기업 혜중광업합영회사가 운영을 맡고 있음.
- 중국은 무산광산의 50년 장기채굴권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 혜산광산의 운영권을 확보하면서 북한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두 개 광산을 모두 운영하게

됐음. 이번 합작사업으로 양국이 기대하는 해산광산의 생산량은 연간 5~7만 톤 정도이며, 생산된 동은 전량 중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은 “중국의 북한 자원시장 선점 지역이 현재까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항만 시설이 갖춰져 있고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한 함경남도 단천 등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노컷뉴스, "중국, 北 해산청년광산 본격 운영", 2011.10.11

□ 유엔, “北 전체 주민의 35%인 840만 명 영양실조”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10일 공동 발표한 ‘2011 세계의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세 명 중 한 명꼴인 84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라고 평가함.
- 유엔의 보고서는 “북한의 굶주리는 인구가 1990년대 초반 420만 명에서 90년대 중반 70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후 10년 이상 식량난이 이어져 2008년에는 영양실조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인 82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밝힘. 또한 “20년 동안 굶주리는 주민의 수가 증가한 비율은 북한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고 전함.
- 유엔의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상황이 짧은 기간에 나아지기 어렵다면서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함. 또한 “북한의 식량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엔의 기아 퇴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내다봄.

노컷뉴스, "유엔, "北 전체 주민의 35%인 840만 명 영양실조"", 2011.10.11

□ 北내각, 올 경제계획 완수 방안 등 논의

- 조선중앙통신은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5일자를 인용해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3분기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정형·총화(현황 및 평가)와 올해 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 수행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고 밝힘.
- 회의에 보고된 3분기 사업의 주요 성과는 ▲1분기 대비 방적사 109%, 일반천과 뜨개옷 112%, 종이 165% 증산 ▲제2차 평양 제1백화점의 1,400여종 350만여점 상품 전시 ▲지방예산수입계획 113.3% 초과 수행 등임.

- 이어 올해 경제계획 완수를 위한 과업으로 석탄·전력·금속공업 부문의 증산, 철도운수 수송 증대, 제3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전시회 준비, 홍수 피해 복구 및 평양 꾸미기, 내각 사업 강화 등의 문제가 논의됨.
 - 이날 회의에는 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성원이 참가했으며 내각 직속기관 책임 일꾼과 관리국장, 도·시·군 인민위원장, 도 농촌경리위원장·지구계획위원장·식료일용공업관리국장, 주요 공장·기업소의 지배인 등이 방청함.
- 연합뉴스, "北내각, 올 경제계획 완수 방안 등 논의", 2011.10.15

□ 어딜가나 건설장…北 평양 새단장에 ‘올인’

-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선전하는 북한이 내년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에 맞춰 평양시 새 단장에 열을 올리고 있음. 조선신보는 지난 12일 “지금 평양은 어디를 가나 건설, 건설이다. 기중기가 만(滿)가동하고 용접 불꽃이 쉴 새 없이 튀어나오는 광경을 여기저기서 목격하게 된다”고 전함.
- 식료품이나 소형 가전제품을 주로 수입하던 북한은 올해 초부터 건축자재 수입량을 눈에 띄게 늘렸으며, 모든 대학교는 휴교를 하고 대학생들까지 공사현장에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짐.
-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주택공사가 한창인 만수대지구와 마주 보는 동평양지구에는 대중탕과 가족탕 등 목욕시설과 이발소, 미용실, 식당이 입주하는 종합시설(1만7천400㎡)과 4계절 이용 가능한 원형빙상장을 포함한 인민야외빙상장(9천660㎡)이 들어설 예정임.
-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에 강성대국 진입을 공언한 만큼 예년보다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이 만수대지구에서만 진행되는 등 경제난 여파도 관찰되지만 상징물이 될 만한 시설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연합뉴스, "어딜가나 건설장…北 평양 새단장에 ‘올인’", 2011.10.16

□ 北무역성-러 아무르주, 경제협력 합의서 체결

- 북한의 무역성과 러시아 아무르주(州)가 18일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평양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리룡

남 무역상, 서길복 무역성 부상, 심국룡 나훗카 총영사 등이 나왔고, 러시아 측에서 올렉 코제마코 주지사와 발레리 수히닌 북한주재 러시아대사 등이 참석함.

- 러시아 극동의 아무르주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러시아 방문 때 찾은 ‘부레이 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9월에는 북한 농업대표단이 이곳을 찾아 농지 임대를 비롯한 농업분야 협력을 논의했음. 북한은 아무르주의 농지 20만ha를 임대하기 위해 주정부와 1차 협상을 끝냈음. 중앙통신은 또 이날 평안남도과 아무르주가 친선관계를 맺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전함.
- 아무르주 주정부는 이날 언론보도문에서 “북한 노동자 초청, 상호 관광교류, 에너지 분야 협력, 농지 임대, 목재 가공 협력 등을 논의했다”며 “북한 측과 경제 협력에 관한 포괄 협정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힘. 북한은 식량난 극복을 위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농지를 임대해 쌀, 콩, 옥수수, 감자 등을 재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北무역성-러 아무르주, 경제협력 합의서 체결", 2011.10.18

□ 유엔 OCHA 국장, “北 영양실조 어린이 최고 45%”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총괄하는 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국장은 21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현재 필요 식량 530만 톤 가운데 100만 톤이 부족하며 어린이 30%가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북한의 하루 식량 배급량은 600g에서 200g으로 줄었다”고 말함.
- 아모스 국장은 최근 통계를 인용해 “북한의 5살 이하 북한 어린이 가운데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33%에 달했고, 식량 사정이 더 나쁜 북쪽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45%까지 높아졌다”고 말함.
- 아모스 국장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기상 조건에 있더라도 만성적인 빈곤국이며 저개발 국가인 북한이 모든 주민들에 식량을 배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흑독한 겨울을 앞둔 북한에 기부국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을 호소함.

노컷뉴스, "유엔 OCHA 국장, "北 영양실조 어린이 최고 45%"" , 2011.10.22

□ 1~8월 北美교역 작년 동기 7배로 급증

- 올해 1~8월 북미교역액이 21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간 30만 달러의 7배에 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미 인구조사국 산하 해외무역실 교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미 교역은 미국의 대북수출만 210만 달러였고 수입은 한 건도 없었음.
- 1~8월 교역액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양국 간 교역액 190만 달러도 넘어섰음. 미국의 대북수출 상품을 보면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용으로 보낸 구호물품이 대부분으로, 의약품이 절반가량 차지했고 나머지는 축산·수산물, 수술장비, 침구류, 재봉도구 등이었음.

연합뉴스, "1~8월 北美교역 작년 동기 7배로 급증", 2011.10.26

□ 북한경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 기상악화와 제조업 부진으로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힘.
- 한은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추정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GDP 증가율은 지난 2008년 3.1%를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역전했지만, 2009년 마이너스(-0.9%)로 돌아선 뒤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나감.
-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로 농림어업이 부진한 데다 제조업이 경공업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다”고 설명함. 지난해 북한의 농림어업은 냉해, 태풍 등의 영향을 받아 농산물 등의 생산이 부진해 전년보다 2.1% 감소했음.
- 북한의 1인당 GNI는 124만원으로, 남한(2천400만원)의 19분의 1 수준임. 이 역시 남북 간 격차가 2009년 18.4배에서 19.3배로 커졌음. 지난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상품기준)는 41억 7천만 달러로 1년전(34억 1천만 달러)보다 확대되었음. 남북교역 규모는 19억 1천만 달러로 13.9% 늘었음.

연합뉴스, "북한경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2011.11.3

2. 식량 사정

☐ WFP, 북한 내 식량 비축 바닥났다

-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 보유하고 있는 식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7월 중 주민들에게 분배된 식량은 당초 계획의 2%에 그친 것으로 알려짐.
- 세계식량계획(WFP)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10일 “WFP가 보유하고 있는 식량은 최저 수준으로 북한 내 식품공장 12곳에 있는 3,343톤과 가공 처리된 영양강화식품 280톤이 모두”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함.
 - 스카우 대변인은 이에 따라 “7월 중 대부분의 WFP 식품공장에서 가공할 식자재가 동이 나 생산을 중단했다”고 전함. 또한 이로 인해 “7월에는 당초 계획했던 분배량의 2%에도 미치지 못해 주민 28만 3천 명에게만 모두 610톤의 영양 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말함.
- WFP는 지난 4월 말 새로운 대북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북한 주민 350만 명에게 매달 3만 2,800t의 식량을 분배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 한편, 스카우 대변인은 “러시아가 대북 사업에 기부한 6,600톤의 밀가루 중 1차 분 250톤이 최근 열차 편으로 청진에 도착했고, 오는 17일에는 밀 1만 1,200톤이 남포항에 도착하면 분배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말함.

연합뉴스, "WFP, 북한 내 식량 비축 바닥났다", 2011.8.11

☐ UNICEF “北배급 8월 중단…610만 명 위험”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8월에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주민 610만 명이 위험하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함. UNICEF는 최근 발표한 ‘2011 인도주의 활동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37%가 외부의 식량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또한 “대북사업 총 예산의 84%를 건지 못해 자금 부족현상이 심각하다”며 “만약 국제사회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 내 5세 미만 어린이와 농촌지역 산모의 중증 영양실조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함.
- UNICEF는 올해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1만 5,500명의 어린이를 완전 치유하고

상수도과 위생시설을 보수해 22만 7천명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7월20일 현재 필요 예산 2,040만 달러의 16%에 불과한 334만 달러를 모금했음.

연합뉴스, "UNICEF "北배급 8월 중단...610만 명 위험"", 2011.8.12

□ 北, 쌀 수입 줄이고 값싼 옥수수 늘려

-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량을 늘리면서 단가가 높은 콩과 쌀 대신 옥수수 등 단가가 낮은 곡물 비중을 많이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 14일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원장이 한국무역협회의 ‘북중교역 동향’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상반기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총량은 14만 9,173톤으로 작년 상반기의 14만 1,395톤보다 5.5% 늘어났음.
 - 수입 곡물은 옥수수 38.2%, 밀가루 37.5%, 쌀 16.9%, 콩 7.2%로 전년도의 밀가루 34.2%, 옥수수 28.8%, 쌀 19.3%, 콩 16.4%와 비교하면 옥수수와 밀가루 비중이 증가하고 쌀과 콩의 비중이 감소했음.
- 권 부원장은 “작년도 곡물 수입량 역시 평년보다 많았는데 올해는 수입량을 더 늘렸다는 점은 식량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콩이나 쌀보다는 옥수수 등을 많이 구입한 것은 외화난에 따른 현상 같다”고 분석했음.
- 한편 북한의 상반기 비료 수입량은 총 19만 396톤(3,988만 달러 상당)으로 작년 동기의 9만 9,588톤(2,054만 달러 상당)보다 91%가량 증가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쌀 수입 줄이고 값싼 옥수수 늘려", 2011.8.14)

□ 북한의 식량난 올해가 최악수준

-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임. 식량배급 중지는 물론 올해 내린 집중호우 자급자족할 식량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임. 정부관계자는 14일 “아직까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올해 작물수확량 등은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특히 유엔아동기금(UNICEF)은 ‘2011 인도주의 활동 중간보고서’에서 이달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주민 610만 명이 위험하다고 밝혔다

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했다.

- UNICEF는 “대북사업 총 예산의 84%를 걷지 못해 자금 부족현상이 심각하다”며 “만약 국제사회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 내 5세 미만 어린이와 농촌지역 산모의 중증 영양 실조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UNICEF는 올해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1만 5,500명의 어린이를 완전 치유하고 상수도 및 위생시설을 보수해 22만 7,000명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7월20일 현재 필요 예산 2,040만 달러의 16%에 불과한 334만 달러를 모금했음.

아시아경제, "북한의 식량난 올해가 최악수준", 2011.8.15

☐ 北 식량수입 증가 ... “7월 배급량 다소 늘어”

- 세계식량계획(WFP)의 나나 스카우 대변인은 16일 북한 당국이 제공한 수치를 인용해 “7월에 성인 주민 한 명에 하루 200g의 식량을 분배해 지난 6월에 배급한 150g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했다. 스카우 대변인은 그러나, “하루 200g의 식량은 성인이 필요로 하는 열량의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북한에서 공공배급제를 통해 분배되는 식량이 소량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음.
-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은 지난 4월에 하루 400g에서 5월에는 190g, 6월에는 150g으로 계속 줄다가 7월에 200g으로 약간 늘어 난 것임. 스카우 대변인은 “최근 몇 달간 북한의 공공배급은 수입 곡물로 유지됐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곡물 10만 톤을 수입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북한이 올 상반기에 중국에서 수입한 식량은 지난해 보다 5.5% 가량 늘어난 1,500만 달러 상당”이라고 밝혔음. 또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북한이 올 상반기에 수입한 곡물 가운데는 옥수수 및 밀가루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컷뉴스, "北 식량수입 증가 ... "7월 배급량 다소 늘어"", 2011.8.17

☐ 9월 날씨 좋으면 北식량생산 작년보다 증가

- 북한이 올여름 적지 않은 수해를 입었지만 올해 식량(곡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

원장이 전망함.

- 권 부원장은 “아직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량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작년보다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며 “북한은 올해 비료를 많이 사용했고 이달 날씨가 좋으면 일조량 부족이 해소돼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작년과 올해 북한의 자연재해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며 “북한은 작년 8~9월 일조량 부족에 시달리는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함.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심각한 기상이변이 없다면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은 작년보다 1% 정도 늘어난 1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연합뉴스, "9월 날씨 좋으면 北식량생산 작년보다 증가", 2011.9.1

□ 유엔 “식량지원 필요 북한 주민 610만 명”

- 유엔 산하 인도주의조정국은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이 600만 명을 넘는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조정국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홍수와 폭한, 구제역 등 자연재해와 위기상황이 많이 발생하면서 식량난이 심화됐다고 지적함.
 - 지역별로는 함경남도 140만 명을 비롯해 함경북도 100만 명, 자강도 59만 명, 양강도 30만 명 등으로 영양실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합뉴스, "유엔 "식량지원 필요 북한 주민 610만 명"", 2011.9.2

□ 北 고위 간부층도 배급중지…서민 고통 가중

- 북한의 고위간부들까지 배급 중지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5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북한의 배급 중지는 올해 봄 초급 간부에서 시작돼 현재 지방당 고위 간부까지 포함됨. 이에 간부층은 권력을 이용한 각종 검열로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RFA는 간부층의 서민 착취행위는 앞으로 더욱 기승부릴 것이며 국가 체제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은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함.

머니투데이, "北 고위 간부층도 배급중지…서민 고통 가중", 2011.9.5

□ 北주민 하루 식량배급 여전히 200g 불과

- 북한 당국이 지난달 성인 주민 한명에게 하루 2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보도함.
 - 최근 몇 달간 북한의 공공배급은 수입 곡물로 유지됨.
- 하루 200g의 식량은 육체노동을 하는 성인의 평균 필요량 700g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임. WFP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하루 배급량은 지난 4월 400g에서 5월 190g, 6월 150g으로 계속 줄었다가 7월과 8월에는 200g으로 약간 늘었음.
- 한편 WFP는 지난달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과 황해도 지역 수재민에게 모두 185톤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北주민 하루 식량배급 여전히 200g 불과", 2011.9.6

□ 통일부 “北 7월말 현재 식량부족 20만여 톤”

-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7월 말 현재 20만여 톤으로 추정함. 통일부는 19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쌀 비축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힘.
- 통일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기준 1일 최소권장량(성인 1일 458g)을 기준으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50여만 톤으로 추산함. 올해 수요량이 460여만 톤에 비해 지난해 생산량은 411만 톤으로 추산된다는 것임.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북한이 외부로부터 23만 7천 톤의 식량을 도입한 것으로 보여 결국 7월 말 현재 부족량은 20만여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 통일부는 북한의 1일 정상 배급량은 성인기준으로 곡물 700g이지만 1973년부터 전쟁비축미(12%), 1987년부터 애국미(10%) 등의 명목으로 22% 감량배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통일부는 “북한은 만성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지만 올해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아니며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식량수입에 투입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한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통일부 "北 7월말 현재 식량부족 20만여 톤", 2011.9.19

□ WFP-FAO, 北 농작물 수확량 조사 착수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식량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북한에서 농작물 수확량을 평가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전함.
- 이 방송은 WFP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인용해 북한당국의 초청으로 WFP, FAO 소속 전문가들이 3~17일 황해도를 북한의 9개 도, 29개 군을 찾아 ‘작황과 식량안보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힘.
- 이번 조사는 북한의 주요 곡물과 가축 현황 등 올해의 식량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북한 당국이 식량 부족분을 얼마나 메울 수 있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WFP는 덧붙임. 또 올여름 홍수가 수확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됨.

연합뉴스, "WFP-FAO, 北 농작물 수확량 조사 착수", 2011.10.3

□ FAO, “北 올해 수확량 440만 톤 전망…” 지난 해 보다 4.8% ↑ ”

- 식량농업기구(FAO)는 6일 발표한 ‘곡물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수확량은 지난 해 420만 톤에 비해 4.8% 증가한 440만 톤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함. 식량농업기구는 그러나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북한의 올해 수확량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추정치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3일부터 시작한 북한 내 ‘작황과 식량안보 조사’가 마무리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FAO는 북한이 올 가을 추수와는 별도로 현재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보고서는 “9월 초까지 북한이 외부에서 확보한 곡물량은 22만 6천 톤이며, 이 가운데 수입은 18만 톤, 원조는 4만 6천 톤”이라고 밝힘. 이는 북한이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외부로부터 도입해야 하는 식량 110만 1천 톤의 20.6%에 불과함.

- FAO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난을 겪고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32개 식량 위기국가에 포함시켰음.

노컷뉴스, "FAO, "北 올해 수확량 440만 톤 전망..."지난 해 보다 4.8%↑", 2011.10.7

□ WFP “北 9월 주민 하루 배급량 200g”

- 북한 당국이 지난 9월 성인 주민 한명 당 하루 20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이 밝힘. 세계식량계획의 마커스 프라이어 아시아 대변인은 1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라며 이같이 밝히고, “배급된 식량은 주로 밀, 보리, 감자”라고 전함.
- 프라이어 아시아 대변인은 “하루 200g의 식량은 성인이 필요로 하는 열량의 30% 정도에 불과하며, 북한에서 공공배급제를 통해 분배되는 식량이 소량에 그치고 있다”고 말함. 또한 “북한의 배급량은 지난 4월에 하루 400g에서 5월에는 190g, 6월에는 150g으로 계속 줄다가 7월부터 9월까지 200g으로 약간 늘었으며, 지난 몇 달간 북한의 공공배급은 수입 곡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함.
- 대변인은 “유럽연합, 호주, 중국, 아일랜드의 기부를 받아 구매한 5만4천 톤의 밀, 쌀, 설탕, 식용유, 옥수수-콩 혼합물 등이 10월 중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힘. 지금까지 WFP의 대북 사업을 위해 걷힌 자금은 내년 3월까지 필요한 2억1천만 달러의 30.7%인 6,436만 달러로 나타남.

노컷뉴스, "WFP "北 9월 주민 하루 배급량 200g", 2011.10.12

□ 北, “내년부터 전면 식량배급 재개” 선전

- 북한이 강성대국 해인 내년부터 일반 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을 실시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을 방문한 평양 주민 조 모씨는 지난 달 31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양시간에 내년부터 식량배급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며 인민반장들은 식량 배급장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자유 아시아방송(RFA)에 전함.
- 북한 내부사정에 밝은 중국의 한 대북 사업가는 “지금상태로는 식량사정이 금방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식량지원을 기대하면서 주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북한은 해마다 10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해 수입과 외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대북 식량 지원이 중단돼 평양지역과 간부급을 제외한 일반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체계가 와해된 것으로 알려짐. 특히 최근에는 일반 주민들은 물론 초급당간부들과 군 초급간부까지도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노컷뉴스, "北, "내년부터 전면 식량배급 재개" 선전", 2011.11.1

□ WFP 北사무소장 “곡물수확량 작년보다 늘어날 듯”

- 클라우디아 본 로엘 세계식량계획(WFP) 북한사무소장은 3일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량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으로 식량위기가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함.
- 로엘 소장은 “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추정한 보고서가 이달 내에 나올 것”이라며 “이 보고서가 북한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함.
- 이어 “WFP가 북한에서 긴급구호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북한은 WFP와 합의한 모니터링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며 “WFP 관계자들은 청진과 함흥, 원산 사무실에 광케이블을 설치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하며 일한다”고 소개함.
- 그는 대북 지원식량의 군부 전용 가능성에 대해 “어떤 조건에서 이뤄지는 (인도적) 지원인지 명확해야 하고 모니터링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 조건도 없는 대북 식량지원 때문에 혼란과 오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WFP 北사무소장 "곡물수확량 작년보다 늘어날 듯", 2011.11.3

3. 가격 추이

□ 평양 쌀값 급등...“한달 새 kg당 500원 올라”

- 북한 시장에서 쌀값이 급등하고 있음. 19일 현재 평양 내 장마당에서는 쌀이 1kg당 2,600~2,700원에 거래되고 있음. 8월 초 2,100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500원(23.4%) 상승했음.
- 다른 지역도 쌀값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음. 이달 16일 기준으로 함경북도

청진의 경우 쌀 1kg에 2,300원, 함북 온성은 2,500원, 양강도 해산은 2,400원에 거래됐음.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지난주에 비해 100~300원 오른 가격대를 형성했음.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8월이 되면 시장에 감자, 옥수수 등이 공급되면서 쌀 가격은 소폭 하락했음. 하지만 올해를 포함해 최근 몇 년간은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와 비료부족에 따른 감자·옥수수 작황 부진 등의 여파로 쌀 가격이 되레 상승세임.
-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상승도 쌀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힘. 중국 인민폐 100위안(元)은 지난주 3만 9,000원에서 현재 4만 1,000원까지 올랐음. 북한 장마당 물가가 중국 환율에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국경지대에서는 폭풍군단의 검열도 쌀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데일리NK, "평양 쌀값 급등..."한달 새 kg당 500원 올라", 2011.8.19

□ 北 쌀값 화폐개혁 이후 최고치...“3천원(kg)”

- 14일 북한 전역에서 쌀 가격이 3,000원(1kg)을 넘어서고 있음.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시장거래 가격으로는 최고치임.
-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 통화에서 “10월 초 2,600원(kg) 쌀 가격이 드디어 3,000원을 찍었다”면서 “외화 거래 가격도 상승해 1위안당 515원에 거래됐다”고 전함. 신의주 소식통도 하루 전 “쌀 가격이 1kg당 3,000원까지 올랐다. 옥수수까지 수확한 마당에 식량가격이 폭등해서 주민들도 ‘왜 이렇게 오르냐’며 당황해 하고 있다”라고 말함.
- 북한에서는 통상 가을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햇곡식 수확에 대한 기대감과 재고(在庫) 쌀에 대한 방출 심리가 겹치면서 쌀가격이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임. 그러나 이번에는 올해 작황상황에 대한 내부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이미 지난 8~9월부터 쌀값 상승세가 이어져 옴.
- 향후 북한 쌀값 변동을 두고 가을걷이가 마무리 되면 곧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환율 상승 때문에 좀처럼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음.

데일리NK, "北 쌀값 화폐개혁 이후 최고치..."3천원(kg)", 2011.10.14

4. 자연재해

□ 北 “7월 하순 폭우로 30여명 사망”

- 북한은 7월 하순 내린 집중호우와 큰물(홍수) 피해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6,480여 동의 살림집(주택)이 파괴돼 1만 5,800여명의 주민이 집을 잃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북한 매체가 올여름 폭우에 따른 구체적인 인명피해 숫자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임.
- 또 4만8천여 정보(476km²)의 논과 밭이 침수되거나 매몰 또는 유실되면서 올해 농업 생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중앙통신은 이어 “생산건물과 공공건물 350여 동의 무너지고 강·하천과 해안방조제 물길에 휩쓸린 피해를 입었다”며 “산사태로 철길 노반이 파괴되고 6천900여m의 다리와 도로가 끊어져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과 복구용 자재의 수송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힘.
- 연합뉴스가 이날 입수한 국제적십자사(IFRC)의 내부자료인 ‘재난관리 정보시스템(DMIS)’에서도 북한 당국이 이번 폭우 피해를 집계한 결과 황해남도에서만 사망 26명, 실종 4명에 8명이 다치고 8천860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파악됨.
연합뉴스, “北 “7월 하순 폭우로 30여명 사망””, 2011.8.5

□ 北, 곡창 황해남도 수해 복구에 ‘안간힘’

- 북한이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조선중앙방송은 11일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중앙은행, 상업성, 수산성, 체신성, 건설건설공업성을 비롯한 성 및 중앙기관들과 수해 피해를 크게 입지 않은 황해북도와 평안도, 함경남도, 강원도 등 각 도들이 각종 건설자재와 생필품 등을 챙겨 황해남도 수해 피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전함.
- 대외용 방송인 평양방송도 10일 “황해남도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큰물(홍수)피해 복구사업에 떨쳐나섰다”며 “도 인민위원회와 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 피해정형을 장악한데 기초해 복구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선전함.
-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황해남도의 재령평야(1,350km²)와 연백평야(1,150km²)는 북한 전체 논면적(6,090km²)의 41%를 차지하고

재령·연백평야와 평안남도의 평양평야(950km²)가 북한 쌀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함.

- 북한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 달이 넘게 이어진 비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므로 다른 지역보다 황해남도의 수해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北, 곡창 황해남도 수해 복구에 '안간힘'", 2011.8.12

☐ 북한, 유엔에 "1만 5천여 명 홍수 피해 입었다"

- 북한 당국이 지난 9일 평양 주재 유엔 기구에 "올해 홍수로 인명피해를 비롯해 가옥 6,400여개가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등 주민 1만 5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공식 상황 보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 유엔 기구들은 이번에 북한 당국이 전한 정보가 아직 본격적인 지원을 결정하기엔 충분하지 않아 북한 내 비축해둔 수해 지원구호품이 분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특히 유엔아동기금은 "북한 측에 보건, 교육, 영양, 식수와 위생 등 분야별로 수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추가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 유엔 기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계식량계획만이 수해 피해 지역인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지역 수재민 7천 명을 대상으로 첫 긴급 구호 식량인 밀가루 80톤을 지원했음.

노컷뉴스, "북한, 유엔에 "1만 5천여 명 홍수 피해 입었다"" , 2011.8.17

연합뉴스, "'홍수 피해 1만 5천 명' 北" UN에 보고" , 2011.8.17

☐ 북한 적십자, "올해 수해로 최소 57명 사망"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 적십자는 최근 국제적십자사(IFRC)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에서 지난 몇 주일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와 홍수로 57명이 숨지고 2만 4,720명이 집을 잃었다"고 말함. 또한 "농경지 8만 3,179ha 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해 북한 곡창지대 주민들의 생계에 중대한 타격을 줬다"고 전함.
- 북한 적십자는 "이번 수해지원을 위해 수 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생존자 구조작업을 벌였다”고 밝힘.

- 국제적십자사는 “수해 직후 북한 적십자가 국제적십자사의 지원 아래 피해지역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벌여 약 3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방수포와 주방용품, 위생용품, 식수정화제 등을 분배했다”고 전함.

노컷뉴스, "북한 적십자, "올해 수해로 최소 57명 사망"", 2011.8.20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4

농업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7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1년 7월 중 남북교역액은 14,816만 달러로 전년 동월 16,194만 달러에 비해 8.5% 감소(전월 14,860만 달러 대비 0.3% 감소)
- 반입은 7,485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278만 달러에 비해 2.8% 증가(전월 7,620만 달러 대비 1.8%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4.3%, 전자전기제품 31.1%, 생활용품 10.1%, 기계류 7.9%, 화학공업제품 3.2% 등임.
- 반출은 7,33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917만 달러에 비해 17.8% 감소(전월 7,241만 달러 대비 1.3%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7.6%, 전자전기제품 30.3%, 기계류 7.5%, 생활용품 6.4%, 화학공업제품 5.5% 등임.

□ 7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1년 7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53.2만 달러로 전월 56.5만 달러 대비 5.8% 감소하고 7월 전체 반입액 7,485만 달러의 0.7%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27.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26.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를 차지했음.

*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1년 7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39.3만 달러로 전월 229.5만 달러 대비 4.3% 증가하고 7월 전체 반출액 7,332만 달러의 3.3%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199.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7%), 분유 등 축산물이 14.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합판 등 임산물이 2.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23.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를 차지했음.

□ 8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1년 8월 중 남북교역액은 14,422만 달러로 전년 동월 16,360만 달러에 비해 11.8% 감소(전월 14,816만 달러 대비 2.7% 감소)
- 반입은 7,69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145만 달러에 비해 5.6% 감소(전월 7,485만 달러 대비 2.7%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1.8%, 전자전기제품 34.0%, 생활용품 9.4%, 기계류 7.5%, 화학공업제품 3.9% 등임.
- 반출은 6,73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215만 달러에 비해 18.0% 감소(전월 7,332만 달러 대비 8.2%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6.4%, 전자전기제품 27.8%, 화학공업제품 10.4%, 생활용품 6.7%, 기계류 5.7% 등임.

□ 8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1년 8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50.4만 달러로 전월 53.2만 달러 대비 5.3% 감소하고 8월 전체 반입액 7,690만 달러의 0.7%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36.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5%), 어패류 등 수산물이 14.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2%)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1년 8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68.3만 달러로 전월 239.3만 달러 대비 12.1% 증가하고 8월 전체 반출액 6,733만 달러의 4.0%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57.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8%),

분유 등 축산물이 2.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4%), 합판 등 임산물이 2.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6.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를 차지했음.

□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1년 9월 중 남북교역액은 14,833만 달러로 전년 동월 14,493만 달러에 비해 2.3% 증가(전월 14,422만 달러 대비 2.8% 증가)
- 반입은 7,90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638만 달러에 비해 8.5% 감소(전월 7,690만 달러 대비 2.8%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6.4%, 전자전기제품 31.3%, 생활용품 9.3%, 기계류 6.5%, 화학공업제품 3.5% 등임.
- 반출은 6,927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855만 달러에 비해 18.3% 증가(전월 6,733만 달러 대비 2.9%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8.4%, 전자전기제품 28.3%, 화학공업제품 8.8%, 기계류 6.6%, 농림수산물 4.8% 등임.

□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1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37.0만 달러로 전월 50.4만 달러 대비 26.6% 감소하고 9월 전체 반입액 7,906만 달러의 0.5%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26.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10.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1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34.7만 달러로 전월 268.3만 달러 대비 24.7% 증가하고 9월 전체 반출액 6,927만 달러의 4.8%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302.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4.4%), 분유 등 축산물이 16.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합판 등 임산물이 1.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14.9달러(전체 반출액의 0.2%)를 차지했음.

표 1. 2011년 7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30,530	271	0.4	농산물	1,077,265	1,997	2.7
참깨	41,010	73		쌀	1,900	2	
들깨	15,130	25		감자			
고추	5,770	10		밀가루	403,760	238	
밤	32,800	105		참깨	34,980	39	
참기름	3,154	7		들깨	22,550	22	
들기름	4,722	8		복숭아	28	0	
기타유지가공품	12,632	21		수박	966	1	
박류	8,000	0		멜론	43	0	
포도주	7,312	22		무	2	0	
				고추	6,215	7	
				밤	58,400	88	
				대두유	16,615	16	
				참기름	226	1	
				들기름	243	1	
				기타소스류	724	1	
				커피조제품	11,629	12	
				녹차	16	0	
				홍차	500	2	
				제조담배	3,880	108	
				인삼류	197	2	
				소주	160	0	
				맥주	5,630	5	
				기타주류	378	1	
				정당	387	1	
				물	2,072	1	
				과일주스	186	0	
				기타음료	360	0	
				비스킷	78	0	
				곡류가공품	140,130	400	
				빵	141,102	509	
				면류	63,139	136	
				기타농산가공품	158,958	313	
				견	1,200	72	
				면	611	17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14,947	146	0.2
				소시지	977	3	
				꿀	1	0	
				우유	219	0	
				분유	11,503	136	
				기타낙농품	2,247	6	
임산물	0	0	-	임산물	13,321	22	0.03
				합판	1,929	11	
				단판	200	0	
				섬유판	9,250	7	
				건축용목제품	1,672	3	
				목재틀	112	0	
				목제장식품상자	150	1	
				기타목재생활용품	8	0	
수산물	335,760	261	0.3	수산물	383,274	230	0.3
미역	335,760	261		툰	3,800	53	
				미역	379,474	176	
합 계	466,290	532	0.7	합 계	1,488,807	2,393	3.3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41호(2011.7.1~7.31).

표 2. 2011년 8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51,817	362	0.5	농산물	1,778,574	2,571	3.8
참깨	42,477	77		쌀	1,838	3	
들깨	16,600	27		밀가루	966,008	534	
고추	6,220	11		참깨	79,810	89	
밤	63,600	204		들깨	1,350	1	
참기름	6,444	16		기타채유종실	300	0	
들기름	5,090	8		복숭아	9	0	
기타유자가공품	11,386	19		자두	39	0	
				바나나	728	3	
				포도	9	0	
				멜론	39	0	
				고추	6,180	7	
				기타화초	650	1	
				밤	156,000	234	
				기타산식물	255	0	
				대두유	7,806	7	
				참기름	56	0	
				기타식물성유지	1	0	
				마요네스	280	1	
				기타소스류	1,875	7	
				향신료	217	1	
				커피조제품	23,373	23	
				녹차	6	0	
				홍차	664	3	
				제조담배	1,825	78	
				소주	6,880	9	
				맥주	4,740	4	
				포도주	360	2	
				정당	320	1	
				기타당류	3	0	
				물	2,385	2	
				기타음료	900	1	
				비스킷	476	1	
				곡류가공품	105,073	362	
				빵	171,824	613	
				면류	55,592	135	
				기타농산가공품	178,740	351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견	1,320	78	
				면	643	18	
축산물	-	-	-	축산물	7,274	24	0.04
				소시지	3,982	12	
				분유	305	6	
				기타낙농품	2,987	7	
임산물	0	0	-	임산물	12,465	23	0.03
				합판	2,577	7	
				섬유판	8,015	8	
				건축용목제품	342	4	
				목재틀	500	2	
				목제장식품상자	210	1	
				기타목재류	21	0	
				수목류	800	1	
수산물	174,020	142	0.2	수산물	148,650	64	0.1
미역	174,020	142		미역	123,720	54	
				기타해조류	24,930	10	
합 계	325,837	504	0.7	합 계	1,946,963	2,683	4.0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42호(2011.8.1~8.31).

표 3. 2011년 9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14,063	267	0.3	농산물	2,495,989	3,023	4.4
참깨	39,336	71		쌀	1,918	2	
들깨	4,770	9		밀가루	1,260,553	601	
고추	2,220	4		참깨	54,410	60	
밤	42,100	135		들깨	36,840	39	
참기름	7,196	22		사과	48	0	
들기름	1,720	5		복숭아	9	0	
기타유지가공품	9,121	14		바나나	55	0	
박류	4,800	0		감귤	8	0	
빵	2,800	8		포도	9	0	
				고추	8,420	9	
				밤	48,000	72	
				은행	2,000	4	
				대두유	25,272	25	
				기타소스류	1,245	8	
				향신료	208	1	
				커피조제품	6,352	30	
				초코렛	244	5	
				녹차	6	0	
				홍차	1,051	5	
				제조담배	2,130	74	
				소주	2,270	3	
				맥주	3,540	3	
				위스키	285	27	
				기타주류	360	1	
				정당	335	1	
				물	3,914	2	
				과일주스	6	0	
				기타음료	380,000	253	
				비스킷	3,461	7	
				곡류가공품	99,660	338	
				빵	134,140	510	
				면류	246,727	462	
				기타농산가공품	171,313	410	
				견	1,200	70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39,045	164	0.2
				돼지고기	45	0	
				소시지	6,760	25	
				기타육류가공품	3,500	30	
				로알제리	10,600	51	
				분유	6,000	49	
				기타낙농품	12,140	10	
임산물	27	0	-	임산물	9,715	10	0.01
건축용목제품	5	0		합판	2,829	3	
목제장식품상자	10	0		섬유판	6,450	5	
기타목재류	12	0		건축용목제품	381	2	
				기타목재류	55	0	
수산물	135,000	104	0.1	수산물	194,223	149	0.2
미역	135,000	104		툰	2,800	39	
				미역	191,038	108	
				어류통조림	385	2	
합 계	249,090	370	0.5	합 계	2,738,972	3,347	4.8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43호(2011.9.1~9.30).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2009	37,307	486	934,251	41,293	771	744,830	1,679,081	△189,421
2010	39,800	448	1,043,928	44,402	740	868,321	1,912,249	△175,607
소 계	196,690	794	7,149,178	212,010	1,086	7,458,069	14,607,247	308,891
2011.1	2,785	207	70,022	3,368	411	57,274	127,295	△12,748
2011.2	2,170	175	70,918	2,586	357	51,471	122,389	△19,447
2011.3	3,073	192	80,510	3,674	423	75,798	156,308	△4,712
2011.4	2,635	197	70,465	3,034	391	58,534	128,999	△11,931
2011.5	2,887	195	81,277	3,393	431	67,914	149,191	△13,363
2011.6	2,853	196	76,198	3,602	413	72,406	148,604	△3,792
2011.7	2,861	214	74,846	3,503	411	73,316	148,162	△1,530
2011.8	2,870	200	76,895	3,395	424	67,327	144,222	△9,568
2011.9	2,748	182	79,055	3,252	396	69,271	148,326	△9,784
소 계	24,882	342	680,185	29,807	641	593,310	1,273,495	△86,875
총 계	221,572	801	7,829,363	241,817	1,088	8,051,379	15,880,742	222,016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43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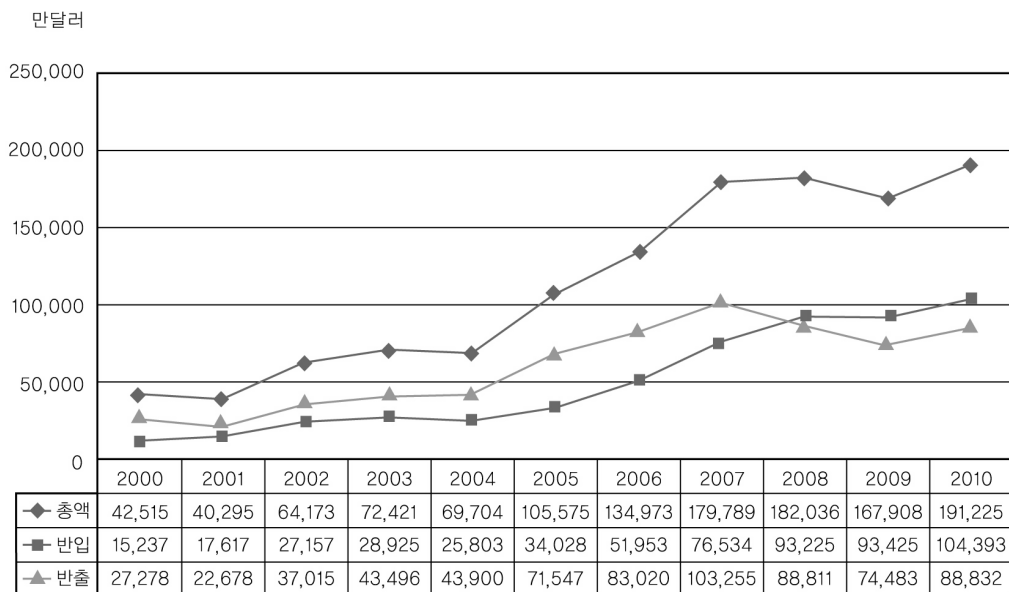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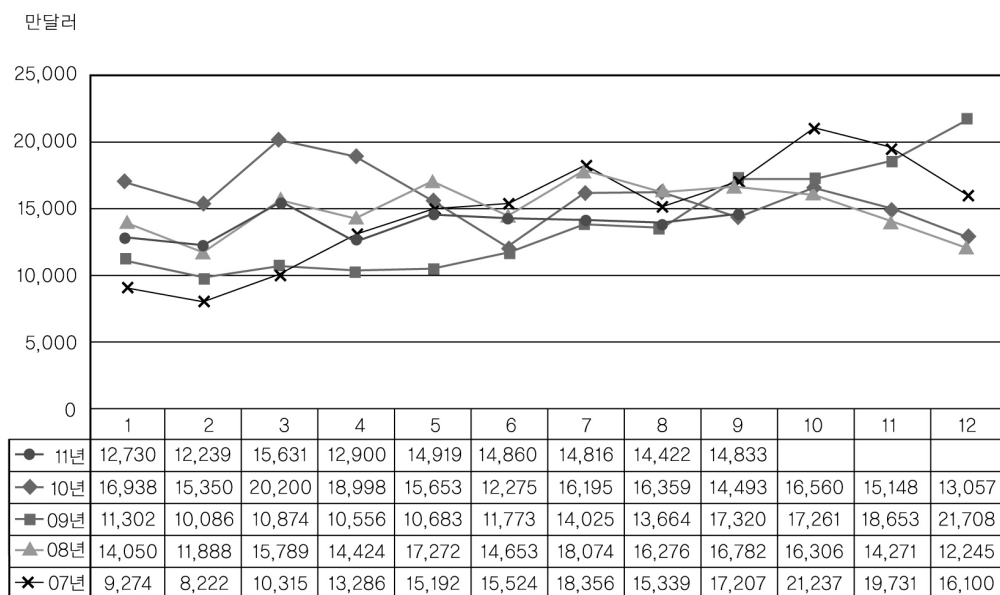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2008	70,653	-	183	137,058	207,913	65,516	1,669	6,278	4,685	78,238	286,151	△129,675
2009	49,845	15	283	151,851	201,994	30,127	1,055	1,398	3,144	35,723	237,717	△13,729
2010	25,001	-	113	63,141	88,255	36,324	1,513	794	2,661	41,292	129,547	△46,963
소 계	514,536	3,317	51,145	1,020,774	1,589,792	937,627	26,021	29,424	25,475	1,018,636	2,608,428	△418,614
2011.1	392	-	0	57	450	1,604	6	13	0	1,623	2,073	1,173
2011.2	193	-	0	17	210	1,230	9	34	122	1,395	1,605	1,185
2011.3	265	-	0	119	384	1,715	5	26	359	2,104	2,488	1,720
2011.4	192	-	0	166	358	1,569	8	25	295	1,896	2,254	1,538
2011.5	228	-	0	226	453	1,981	166	30	276	2,452	2,905	1,999
2011.6	294	-	0	270	565	1,959	13	18	304	2,295	2,860	1,730
2011.7	271	-	0	261	532	1,997	146	22	230	2,393	2,925	1,861
2011.8	362	-	0	142	504	2,571	24	23	64	2,683	3,187	2,179
2011.9	267	-	0	104	370	3,023	164	10	149	3,347	3,717	3,347
소 계	2,464	-	0	1,869	6,638	25,240	541	201	1,799	20,189	24,015	16,733
총 계	517,000	3,317	51,145	1,022,643	1,596,430	962,867	26,562	29,625	27,274	1,038,825	2,632,443	△401,88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41~243,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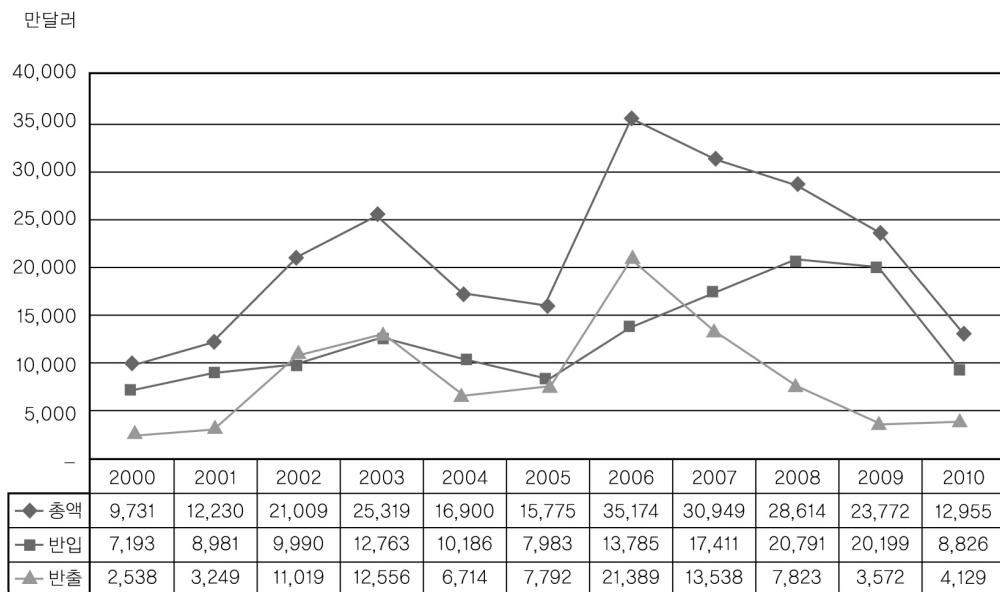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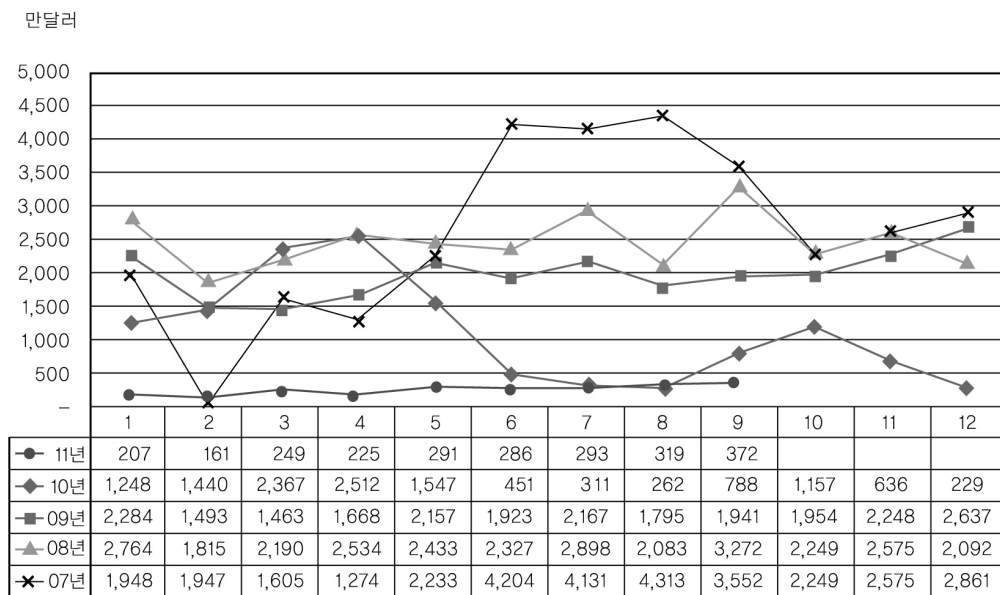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지원 동향

☐ 한국카리타스, 北에 밀가루 100톤 전달

- 한국 가톨릭교회의 대북지원단체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이 28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강남군에 지원하는 밀가루 100톤을 갖고 경의선 출입경사무소(CIQ)를 통해 방북함. 대북지원단체인 나눔인터내셔널 이윤상 대표 등 6명은 개성에서 밀가루를 전달했음.
- 이날 전달된 밀가루는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가 지난 6월1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기원미사 봉헌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황해북도 강남군의 인민병원과 탁아소에 전달될 예정임.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측은 물자 분배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8월에도 방북할 계획임.
- 대북 밀가루 지원은 지난해 연평도 포격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 25일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천주교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의 밀가루 반출승인을 시작으로 재개됐음.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한국카리타스, 北에 밀가루 100톤 전달" 2011. 7. 28)

☐ 민화협, 개성서 4차분 밀가루 200톤 北에 전달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7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주민을 돕기 위한 밀가루 200톤(약 1억 원 상당)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음.
- 민화협의 밀가루 지원은 지난 7월26일 1차분 300톤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번째임. 이번 물자는 (사)평화3000, 어린이어깨동무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모임의 참가단체들이 마련했음.
- 민화협은 사리원시에 그동안 밀가루 1천 톤을 지원했고 9월 말까지 1,500톤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임.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민화협, 개성서 4차분 밀가루 200톤 北에 전달" 2011. 8. 17)

□ 민화협, 5차분 밀가루 154톤 北에 전달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2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주민을 돕기 위한 밀가루 154톤(약 8천 만원 상당)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함.
- 민화협의 이번 지원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전남본부,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등이 마련한 것으로, 지난 7월26일 1차분 300톤 전달 이후 다섯번째임.
- 민화협은 그동안 사리원시에 밀가루 1,154톤을 지원했고 9월 말까지 총 2,500톤을 전달할 계획임. 민화협 관계자는 이번 방북에서 9월 중순 두번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문제를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함.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민화협, 5차분 밀가루 154톤 北에 전달" 2011. 9. 2)

□ 북민협, 北수해지역에 밀가루 첫 지원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30일 북한 내 수해지역을 돕기 위해 밀가루 250톤, 영양식 12만 캔, 2억원 상당의 의약품, 아동용 운동화 및 내의 등의 인도지원물자를 북한에 전달함. 수해지역에 민간단체의 밀가루가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임.
- 이번 지원물자는 북민협 소속 단체인 새누리좋은사람들, 굿피플, 월드비전, 기아대책 섬김, 남북나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 어깨동무, 한국대학생선교회 등이 함께 마련함.
- 지원물자는 올여름 수해가 컸던 황해북도 강남군 장교리와 당곡리의 유치원, 탁아소, 소학교 등 4곳에 분배됨. 이날 물자는 '인도지원' 명목으로 전달됐지만 올해 호우가 집중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수해 지원의 의미가 큼.
- 북민협은 다음달 12일부터 15일까지 지원대상 지역인 황북 강남군 장교리와 당곡리의 유치원, 탁아소, 소학교 등 4곳을 모두 방문해 현장 모니터링을 할 예정임.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북민협, 北수해지역에 밀가루 첫 지원" 2011. 9. 30)

□ 민화협, 8차분 밀가루 300톤 北에 전달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7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주민을 돕기 위한 밀가루 300톤(약 1억6천 만원 상당)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측에 보냈음.
- 민화협의 이번 지원은 월드비전이 마련한 것으로, 7월26일 1차분 300톤 전달 이후 여덟 번째임.
- 민화협은 그동안 사리원시에 밀가루 1,754톤을 지원했고, 이달 말까지 총 2,500톤을 전달할 계획임.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민화협, 8차분 밀가루 300t 北에 전달" 2011. 10. 7)

□ 민화협, 北사리원에 9차분 밀가루 전달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4일 오전 밀가루 100톤을 개성육로를 통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전달함. 지난 7월 1차분 밀가루 300톤을 지원한 이후 9차분인 이번 밀가루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성금으로 마련되었음.
- 남측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 임진각을 출발, 개성에서 지원물자를 인도하고 오후 4시께 귀경함. 민화협은 이번 지원분까지 총 1,854톤의 밀가루를 사리원시에 전달했으며, 3차 모니터링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방북할 계획임.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민화협, 北사리원에 9차분 밀가루 전달" 2011. 10. 14)

□ 민화협, 北사리원에 9차분 밀가루 전달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9일 오전 밀가루 300톤을 개성 육로를 통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지원함. 지난 7월 1차분 밀가루 300톤을 지원한 이후 10차분인 이번 밀가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함.
- 민화협은 이번 지원분까지 총 1,954톤의 밀가루를 사리원시에 전달했으며, 26일부터 29일까지 방북해 3차 모니터링을 진행함. 민화협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6명은 이날 오전 9시 임진각을 출발, 개성에서 지원물자를 인도하고 오후 4시께 귀경할 예정임.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민화협, 北사리원에 9차분 밀가루 전달"

2011. 10. 19)

□ 정부, WHO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 정부는 8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지원 재개를 승인함.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번이 처음임.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2009년 WHO에 지원한 1,312만 달러 가운데 694만 달러의 집행을 승인했다"고 밝힘. WHO는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장비, 의료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해왔으며, 1,312만 달러는 4차년도 지원분임.
-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정부는 1,312만 달러 지원분 가운데 잔액 694만 달러의 집행을 보류했었음. 정부는 지원예산의 집행을 승인하는 공문을 WHO에 발송함. WHO는 지난 8월 초 우리 정부에 집행 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10월 말 예산 집행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다른 유엔 산하 기구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임. WHO에 대한 추가 지원을 비롯해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나 국제백신기구(IVI) 등을 통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계획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m/> (연합뉴스, "정부, WHO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2011. 11. 8)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통일부, 8.22)

- 정부는 8.12(금)부터 8.18(목)까지 제24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대북 수해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정부는 대한적십자사(한적)의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물품대 및 부대경비 등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함.
 - 영유아용 영양식 140만 개, 영유아용 과자 30만 개, 초코파이 192만 개, 라면 160만 개 지원 예정
 - 지원 금액은 물품대 45억 원, 부대 경비 5억 원, 사업관리비 5천만 원 등 총 50억 5천만 원임.

☐ 북한의 금강산 재산 처분 통지와 우리측의 성명

(통일부, 8.22)

- 북한은 8월 22일 오전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로 통일부 앞으로 금강산지역에 있는 우리측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 전달하였음.
- 북한 통지문의 내용
 - 이 시각부터 관광지구의 모든 남측시설물들을 봉쇄하고 남측 인원들의 접근과 출입을 차단
 -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와 재산반출을 철저히 금지
 - 남측 관계자들은 관광 특구안의 시설물들과 료전기재 등 모든 재산들을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넘기고 72시간 안으로 관광특구에서 나가야 할 것
 -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손시키는 등 불순한 행위가 있게 되는 경우 우리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함.

〈 통일부 성명 〉

- 북한은 오늘(8.22)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내 우리측 부동산과 설비 및 자재 등 모든 재산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하고, 우리측 물자와 재산에 대한 반출을 중지하며, 우리측 인원에 대해 72시간 내에 철수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일방적 조치들을 발표하였음.
- 우리측이 최근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속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구호차원의 대북 수해지원을 추진하고, 민간단체들도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취해진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조치이며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우리 관광객이 피살된 이후 중단되었으며, 정부는 관광 재개를 위하여 신변안전보장 등을 요구하였고 2010년 2월 열린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관광 재개를 위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신변안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관광 재개만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일방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2010년 4월 우리측 자산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를 강행하였음. 금년 들어와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의 독점권 취소,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등을 통해 소위 “재산정리” 등 일방적 법 적용만을 주장하면서 관광 재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 주장과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은 물론 남북 당국간 합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였음.
- 아울러 정부는 금강산 관광문제는 사업자간 계약과 당국간 합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측에 대해 지난 7월말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관광사업의 주사업자인 현대아산도 북한측에 대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늘 금강산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재산과 인원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한데 대해,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요구함.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임.
- 특히, 남북 적십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된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해서도 작년 몰수 조치에 이어 오늘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힘.
- 앞으로 정부는 금강산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하면서, 북한이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업자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

2011년 8월 22일

□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과 이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

(통일부, 9.30, 10.11)

- 정부는 9월 30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이 개성공단 방문 후 정부에 요청한 사안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음.
- 첫째, 「5.24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기업들의 건축공사 재개를 허용할 것임.
 - 공장건축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장건축을 진행하다가 건축공사가 중단된 7개사에 대해 공사 재개를 우선 허용할 것이며,
 - 기존공장의 증축공사가 중단된 5개사에 대한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문제도 추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둘째, 우리 입수기업들의 재산과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임.
 - 개성공단 소방서는 시공업체를 조만간 선정하고 11월중에는 착공하여, 내년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 * 개성공단 소방서는 '09.1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부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된 상태
 -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은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내년초에 착공하여 내년말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셋째, 북측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개성시와 개성공단간 출퇴근도로 보수 공사를 시작하고, 원거리 북측 근로자 수송을 위해 출퇴근 버스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우선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을 위해 개성시-개성공단간 출퇴근도로(4.5km)를 실무협의를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내 완공 목표로 착공할 계획임.
 - 동 출퇴근도로는 공단밖 북측지역 기반시설이나 그 용도가 우리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수공사를 추진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측이 직접 시공할 예정임.
 - * 출퇴근도로는 '05.11월 우리측이 자재·장비를 지원하고 북측이 완공한 도로로, 현재는 훼손이 매우 심각하여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

- 한편 근로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원거리에 있는 북측 근로자의 수송을 위한 출퇴근버스도 확대, 운영해 나갈 것임.
- 그간 개성공단 출퇴근버스는 주로 반경 20km이내 지역인 개성시와 그 인근지역에만 운영해왔으나, 버스 운영 지역을 반경 40km까지 확대하여 보다 먼 거리에 있는 북측 근로자들을 수송할 계획임.
- 정부는 출퇴근도로 보수 및 출퇴근버스 확대 운영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북측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업무협약 체결

(통일부, 10.24)

- 통일부장관은 10월 24일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경기도지사, 연천군수와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정부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남북 청소년간 교류를 통한 남북 청소년 공동 문화 형성을 위한 중심적 시설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미래 대비 현장 학습 센터로도 이용할 계획임. 또한, 이 산가족상봉과 남북회담, 남북사회문화교류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 복합시설로 건설할 계획임.
- 정부는 지난 7.18~25일 기간 동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추진 현황 〉

1. 추진경과

- 대통령 지시 및 국정과제(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이행 실천사업으로 추진
 - 2010년과 2011년 통일부 연두업무보고시 통일준비사업으로 보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의 선도사업으로 대통령에게 보고(2010.3)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010.6)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2011.7)

(앞에서 계속)

2. 시설 개요

- 사업부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일원
- 사업규모 및 예산

사업규모	사업예산
■ 사업부지 : 283,269㎡ ■ 건축연면적 : 14,730㎡ * 지하1층, 지상3~4층, 12개동	■ 총사업비 521억원

- 주요시설
 - 활동시설 : 체험관, 연수관, 야외공연장
 - 지원시설 : 운영센터
 - 숙박시설 : 학생생활관, 가족빌리지, 직원숙소, 야영장
 - 야외체험시설 : 체육시설 등

3. 향후 추진계획

- '12년 8월 착공 → '14.8월 준공 및 개원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

(연합뉴스, 11.9)

- 통일부는 2010년 독일 통일 2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연방정부와 통일관련 공조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채널을 구축하고, 독일 통일과정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효율적 교환을 위해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한독통일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2010.10.1)에 이어 독일에서 개최된 실무정책 협의(2011.1.31)를 통해 「한독통일자문위원회」구성에 합의
-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통일부 차관과 독일 내무차관을 포함하여 한국과 독일 양측에서 통일 관련 전·현직 고위 정부 관계자 및 중진 학자 각 12명으로 구성됨.
 - 전체 회의는 연 1회 정례적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
- 11월 17일(목) 서울롯데호텔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18일까지 양일에 걸쳐 2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

□ 남북교역관리업무 위탁 공고

(통일부 10.31)

통일부 공고 제2011- 60호

공 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남북교역 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 공고합니다.

2011. 10. 31
통 일 부 장 관

1. 수탁기관 :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위탁업무의 범위

- ① 남북교역 상담센터 운영
- ② 남북교역 실무절차 교육·설명회 개최
- ③ 기업 위탁 대북 실무협의
- ④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및 사후관리
- ⑤ 남북간 물품 반출입 승인 예비검토
- ⑥ 중요물품 반출입 상황 모니터링
- ⑦ 물품 우회반입 실태점검
- ⑧ 반입 한도물량제도 운영
- ⑨ 남북교역 통계 분석·관리
- ⑩ 남북교역 관련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
- ⑪ 교역제도 관련 정책대안 개발
- ⑫ 남북교역·경협 사례집 발간

3. 위탁기간 : 2011.11.1-2012.10.31(1년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1.9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목표 달성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5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11차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12차 '06.1~'12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앞면에서 계속)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3차 '07.1~12	-	9,966	-	한국 2,437, 중앙긴급구호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14차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15차 '09.1~12	-	4,193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900, 스웨덴 833,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한국 109,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178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44, 스위스 302,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등
17차 '11.1~9	-	8,906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3,180, EU 1,429, 스웨덴 883, 스위스 780, 호주 705, 러시아 500, 브라질 402, 노르웨이 248 등
총 계	-	187,395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11)

표 2. 2011년도 자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11.1.1~10.31)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독일 카리타스(DCV)	독일	640,000	사회적 취약자 지원(BMZ-No: 2011.1827.2)
Concern Worldwide	스웨덴	1,083,256	취약자 건강 개선
FAO	스웨덴	158,800	201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안보지원 연계성 강화사업
	CERF	650,000	2011년 취약농가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13)
	CERF	400,000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21)
	CERF	890,735	구제역 방제를 위한 긴급 백신사업(CERF 11-FAP-022)
	FAO	199,000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미분류)
	이탈리아	211,460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7개 도 58개 군)
		소계 2,509,995	
Fida International	핀란드	272,851	식량지원
독일	독일	390,987	깨끗한 음용수 공급, 기술 지원 및 위생훈련을 통한 위생조건 개선(BMZ-No. 2011.1858.7)
국제적십자연맹	노르웨이	1,592,075	2011년 국제적십자연맹사업(PRK-11/0001)
	스웨덴	480,571	식량분배, 주택개량, 안전한 음용수 공급, 보건위생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긴급구호(스웨덴 적십자사)
	스웨덴	912,650	긴급구호 및 적십자사 능력배양(스웨덴 적십자사)
	캐나다	112,590	인도적 지원(M-013356)
	덴마크	191,763	홍수 피해자 인도지원(덴마크 적십자사)
	핀란드	682,128	홍수 피해자 지원
		소계 3,971,777	
PMU-Interlife	스웨덴	506,711	협동농장 내 식량안보사업
Premiere Urgence	프랑스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
	프랑스	142,857	함경남북도, 황해도 취약계층 지원
	스웨덴	619,003	취약계층 건강 개선
		소계 958,969	
Save the Children	스웨덴	1,238,007	취약계층 건강개선
Save the Children-UK	ECHO	2,141,321	취약계층 긴급영양 지원(ECHO/PRK/BUD/2011/01002)
스위스개발협력 및 인도지원청	스위스	3,430,645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3.01)

(앞면에서 계속)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TGH	프랑스	197,109	식량안보 강화
	프랑스	142,857	함경남북도, 황해도 취약계층 지원
		소계 339,966	
UN 및 NGO	ECHO	1,538	식량지원(ECHO/PRK/BUD/2011/01000)-미분류
UNICEF	CERF	500,000	4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1-CEF-013)
	이탈리아	336,475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스웨덴	2,231,740	취약계층 건강 개선
	CERF	1,113,733	긴급 영양개선(CERF 11-CEF-027)
	호주	1,541,625	어머니와 어린이 영양부족 경감
	UNICEF/독일	126,740	인도지원
	UNICEF/독일	49,993	긴급영양지원
		소계 5,900,306	
UNPF	CERF	149,800	모성 보호사업(CERF 11-FPA-013)
WFP	ECHO	12,142,857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ECHO/PRK/BUD/2011/01001)
	스위스	3,430,696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스위스	941,536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4.01)
	여러 지원단체	19,54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스웨덴	1,600,512	취약계층 영양지원
	중국	1,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룩셈부르크	308,26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룩셈부르크	334,672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이탈리아	429,18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아일랜드	356,125	생명구제와 고통경감(WFP DPRK EMOP)
	호주	5,512,679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리첸스타인	57,274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개인 및 단체	171,589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개인 및 단체	1,14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브라질	374,42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WFP	16,617,1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미분류)
	러시아	5,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인도	1,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브라질	3,642,28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남아공화국	142,87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노르웨이	884,486	식량지원(PRK-11/0002)
	CERF	3,199,82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사업(CERF 11-WFP-015)
	CERF	7,199,174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CERF 11-WFP-031)
		소계 64,366,251	

(앞면에서 계속)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WHO	CERF	500,154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1-WHO-016)
	이탈리아	281,690	도, 군, 마을 단위의 서비스 전달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보건체계 개선
	CERF	379,850	모자영양개선을 위한 보건체계 강화 (CERF 11-WHO-033)
		소계 1,161,694	
합 계		89,064,074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11)

표 3. 2011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11.1.1~10.31)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스웨덴	FAO	158,800	201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안보지원 연계성 강화사업
	이탈리아	FAO	211,460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7개 도 58개 군)
	CERF	FAO	650,000	2011년 취약농가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13)
	CERF	FAO	890,735	구제역 방제를 위한 긴급 백신사업(CERF 11-FAP-022)
	CERF	FAO	4,000,000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21)
	FAO	FAO	199,000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미분류)
			소계 2,509,995	
식량	프랑스	TGH	142,857	취약계층 식량지원사업
	프랑스	TGH	197,109	식량안보 강화
	핀란드	Fida International	272,851	식량지원
	스위스	SDC/SHA	3,430,645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3.01)
	스웨덴	PMU-Interlife	506,711	협동농장 내 식량안보사업
	프랑스	Premiere Urgence	197,109	식량안보 강화
	ECHO	UN/NGO	1,538	식량지원(ECHO/PRK/BUD/2011/01000)-미분류
	ECHO	WFP	12,142,857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CHO/PRK/BUD/2011/01001)
	스위스	WFP	3,430,696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스위스	WFP	941,536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4.01)
	여러 지원단체	WFP	19,54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스웨덴	WFP	1,600,512	취약계층 영양지원
	중국	WFP	1,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룩셈부르크	WFP	308,26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룩셈부르크	WFP	334,672	취약가구 식량지원(EMOP 200266)
	이탈리아	WFP	429,18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아일랜드	WFP	356,125	생명구제와 고통경감(WFP DPRK EMOP)
	호주	WFP	5,512,679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리첸스타인	WFP	57,274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개인 및 단체	WFP	171,589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개인 및 단체	WFP	1,14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식량	브라질	WFP	374,42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WFP	WFP	16,617,1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미분류)
	룩셈부르크	WFP	334,672	식량불안 가구에 대한 식량지원(EMOP 200266)
	러시아	WFP	5,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인도	WFP	1,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브라질	WFP	3,642,28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남아공화국	WFP	142,87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노르웨이	WFP	884,486	식량지원(PRK-11/0002)
	CERF	WFP	3,199,82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사업(CERF 11-WFP-015)
	CERF	WFP	7,199,174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CERF 11-WFP-031)
			소계 69,257,928	

(앞면에서 계속)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보건	Save the Children-UK	ECHO	2,141,321	취약계층 긴급영양 지원 (ECHO/PRK/BUD/2011/01002)
	이탈리아	UNICEF	336,475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CERF	UNICEF	500,000	4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1-CEF-013)
	CERF	WHO	500,154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1-WHO-016)
	CERF	UNPF	149,800	모성 보호사업(CERF 11-FPA-013)
	스웨덴	UNICEF	2,231,740	취약계층 건강 개선
	이탈리아	WHO	281,690	도, 군, 마을 단위의 서비스 전달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보건체계 개선
	스웨덴	Premiere Urgence	619,003	취약계층 건강 개선
	CERF	UNICEF	1,113,733	긴급 영양개선(CERF 11-CEF-027)
	CERF	WHO	379,850	모자영양개선을 위한 보건체계 강화 (CERF 11-WHO-033)
	UNICEF/독일	UNICEF	49,993	긴급영양지원
			소계 8,303,759	
지뢰제거	노르웨이	국제적십자연맹	1,592,075	2011년 국제적십자연맹사업(PRK-11/0001)
미분류	독일	독일 카리타스 (DCV)	640,000	사회적 취약자 지원(BMZ-No: 2011.1827.2)
	스웨덴	Concern Worldwide	1,083,256	취약자 건강개선
	스웨덴	Save the Children	1,238,007	취약계층 건강개선
	노르웨이	국제적십자연맹	1,592,075	2011년 국제적십자연맹사업(PRK-11/0001)
	스웨덴	국제적십자연맹	480,571	식량분배, 주택개량, 안전한 음용수 공급, 보건위생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긴급구호
	스웨덴	국제적십자연맹	912,650	긴급구호 및 적십자사 능력배양
	캐나다	국제적십자연맹	112,590	인도적 지원(M-013356)
	덴마크	국제적십자연맹	191,763	홍수 피해자 인도지원(덴마크 적십자사)
	핀란드	국제적십자연맹	682,128	홍수 피해자 지원
			소계 7,009,330	
물 및 위생	독일	독일	390,987	깨끗한 음용수 공급, 기술 지원 및 위생훈련을 통한 위생조건 개선(BMZ-No. 2011.1858.7)
합 계			89,064,074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11)

표 4. 2011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11.1.1~10.31)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유엔 미분류	FAO	199,000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
	WFP	16,617,1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소계 16,816,100	
호주	UNICEF	1,541,625	어머니와 어린이 영양부족 경감
	WFP	5,512,679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소계 7,054,304	
브라질	WFP	374,42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WFP	3,642,288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소계 4,016,716	
캐나다	WFP	112,590	인도지원(M-013356)
중앙긴급구호 기금(CERF)	WHO	500,154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1-WHO-016)
	FAO	400,000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21)
	UNICEF	500,000	4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1-CEF-013)
	WFP	3,199,82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사업(CERF 11-WFP-015)
	FAO	650,000	2011년 취약농가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13)
	FAO	890,735	구제역 방제를 위한 긴급 백신사업 (CERF 11-FAO-022)
	UNPF	149,800	모성 보호사업(CERF 11-FPA-013)
	WHO	379,850	모자영양개선을 위한 보건체계 강화 (CERF 11-WHO-033)
	UNICEF	1,113,733	긴급 영양개선(CERF 11-CEF-027)
	WFP	7,199,174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CERF 11-WFP-031)
		소계 14,983,275	
중국	WFP	1,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덴마크	국제적십자 연맹	191,763	홍수 피해자 인도지원(덴마크 적십자사)
유럽위원회	WFP	12,142,857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ECHO/PRK/BUD/2011/01001)
	유엔 및 NGOs	1,538	식량지원(ECHO/PRK/BUD/2011/01000)-미분류
	Save the Children-UK	2,141,321	취약계층 긴급영양 지원 (ECHO/PRK/BUD/2011/01002)
		소계 14,285,716	
핀란드	Fida	272,851	식량 지원
	International 국제적십자연맹	682,128	홍수 피해자 지원
		소계 16,816,100	
노르웨이	국제적십자연맹	1,592,075	2011년 국제적십자연맹사업(PRK-11/0001)
	WFP	884,486	식량지원(PRK-11/0002)
		소계 2,476,561	

(앞면에서 계속)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프랑스	TGH	142,857	함경남북도, 황해도 취약계층 지원
	Premiere Urgence	142,857	함경남북도, 황해도 취약계층 지원
	TGH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
	Premiere Urgence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
		소계 679,932	
독일	독일	390,987	깨끗한 음용수 공급, 기술 지원 및 위생훈련을 통한 위생조건 개선(BMZ-No. 2011.1858.7)
	독일 카리타스	640,000	사회적 취약자 지원(BMZ-No: 2011.1827.2)
		소계 1,030,987	
인도	WFP	1,000,000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아일랜드	WFP	356,125	생명 구출 및 고통경감(WFP DPRK EMOP)
이탈리아	UNICEF	336,475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WHO	281,690	도, 군, 마을 단위의 서비스 전달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보건체계 개선
	WFP	429,18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FAO	211,460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7개 도 58개 군)
		소계 1,258,810	
리첸스타인	WFP	57,274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룩셈부르크	WFP	308,26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WFP	334,672	취약가구 식량지원(EMOP 200266)
		소계 642,933	
스웨덴	FAO	158,800	201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안보지원 연계성 강화사업(OSRO/DRK/901/SWE)
	PMU-Interlife	506,711	협동농장 내 식량안보사업
	Premier Urgence	619,003	취약계층 건강 개선
	UNICEF	2,231,740	취약계층 건강 개선
	Concern Worldwide	1,083,256	취약자 건강 개선
	WFP	1,600,512	취약계층 영양지원
	Save the Children	1,238,007	취약계층 건강개선
	국제적십자자연맹	912,650	긴급구호 및 적십자사 능력배양(스웨덴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자연맹	480,571	식량분배, 주택개량, 안전한 음용수 공급, 보건위생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긴급구호(스웨덴 적십자사)
		소계 8,831,250	
스위스	WFP	941,536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4.01)
	SDC/SHA	3,430,645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3.01)
	WFP	3,430,696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소계 7,802,877	
여러 단체	WFP	19,541	8개 도 107개 군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합 계		89,064,074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11)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가. 국제기구

☐ 국제적십자, 황해도 수해지원 시작

- 북한이 국제기구에 수해 지원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황해도 지역에 구호물품을 분배하기 시작했다고 27일 미국의 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프랜시스 마커스 IFRC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자료를 통해 “조선적십자회가 개성시를 포함한 황해북도 수재민들에게 주방용품, 식수통, 이불, 방수비닐막 등이 포함된 응급 구호세트 600개를 분배했다”며 “앞으로 황해남도에서 2,460 세트를 더 분배할 예정”이라고 밝힘.
- IFRC는 수해에 대비해 북한 수재민에게 제공할 응급구호세트 2만 7천개를 비치해뒀으며 수질정화제와 수건, 비누, 화장지 등이 든 위생물품 세트도 전달될 예정임.
- WFP 동아시아 사무소의 마커스 프라이어 대변인은 “합동대책단이 북한에 지원할 식량의 수요를 파악하고 어떤 식량을 공급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조사기간을 3일정도로 예상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국제적십자, 황해도 수해지원 시작", 2011.7.27)

☐ 국제적십자, 北수해복구에 58만 달러 긴급지원

- 외신들은 “IFRC가 북한 수해복구를 위한 재난 긴급구호 기금으로 58만 2,194달러(약 6억 1,600만원)를 배당했다는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고 전함.
- 보고서는 “IFRC는 특별예산으로 수재민에게 식량 이외의 구호품을 제공하고 수해지역 현장실사, 수재민 파악 및 등록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황해도와 함경남도 내 10개 군에서 2012년 2월까지 6개월간 복구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함.
- 프랜시스 매커스 IFRC 대변인은 “기금 집행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해당 구호

물품 분배를 시작했다”며 “인도주의 상황이 급박해 예산 결정을 기다릴 수 없었다”고 전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국제적십자, 北수해복구에 58만 달러 긴급지원", 2011.8.3)

☐ EU, 北수해에 20만 유로 지원...UN 추가자료 요청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수재민을 도우려고 국제적십자연맹(IFRC)에 20만 유로(미화 28만 달러, 한화 3억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전함. 방송은 EU가 지원한 28만 달러는 IFRC가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2일 ‘재난구호 긴급기금’으로 집행한 59만 달러에 포함돼 이미 사용됐다고 설명함.
- 제롬 소바주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은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농지, 가옥 등의 피해 현황과 사상자 수치가 담긴 홍수 관련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며 “유엔 합동대책단이 공동으로 지원하기에는 자료내용이 불충분해 구체적인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힘.
- 유엔 합동대책단은 UNDP,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인구기금(UNFPA)과 영국의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EU, 北수해에 20만유로 지원...UN 추가자료 요청", 2011.8.9)

☐ 적십자, 북한수해에 442만 달러 긴급지원 요청

- 국제적십자사(IFRC)가 북한의 홍수 사태에 대응해 국제사회에 442만 달러(약 48억원)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22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가 보도함.
- 적십자사는 이번에 모금되는 자금으로 황해남도 청단군, 연안군, 봉천군의 수재민 중 3만 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 이번에 적십자가 식량을 분배하는 지역은 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밝힘.
- 또한 적십자는 이번 세 지역에서 1천 가구를 선정해 식량 지원과 별도로 주택을 지어줄 계획이라고 알려짐.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는 이 지역 최초로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됨.

자료: <http://www.news.mk.co.kr/> (mk뉴스, "적십자, 북한수해에 442만달러 긴급지원 요청", 2011.8.23)

□ EU, “대북 분배감시단 파견한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아이리나 노바코바 대변인은 23일 “유럽연합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첫 분배감시단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노바코바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식량을 현지에 전달하는 세계식량계획(WFP)이 매일 분배감시와 현장 평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유럽연합도 자체적으로 분배감시단을 파견해 구호 물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되는지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전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초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향후 6개월에 걸쳐 1천만유로(미화로 1천 430만 달러)의 식량을 지원하고 매달 저장창고와 보육원, 병원 등 400여 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것"이라고 밝힘. 유럽연합은 특히 “북한 당국이 약속을 어기고 제공된 식량을 군수물자 등으로 전용할 경우 지체없이 구호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 유럽연합의 지원 식량은 북한의 동부와 북부의 기아선상에 있는 최소 65만 명의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모, 노약자 등 취약 계층 주민에게 공급하게 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EU, "대북 분배감시단 파견한다"", 2011. 8.24)

□ WHO, “북 수해 의료지원 17만 달러 배정”

- 유럽연합의 지원 식량은 북한의 동부와 북부의 기아선상에 있는 최소 65만 명의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모, 노약자 등 취약 계층 주민에게 공급하게 됨.
- 이 기구는 “북한 수해 지역에서는 설사병 발생이 40%나 증가했고, 말라리아와 피부병도 부쩍 늘어나는 등 수인성 질병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인성 질병 발생과 전염에 대한 감시와 통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함.

- 한편, 수해지역에서는 홍수로 의료 시설에 보관 중이던 의약품의 17%가 쓸려 내려가고 의약 장비도 25% 정도가 파손되거나 고장난 것으로 집계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EU, "대북 분배감시단 파견한다", 2011. 8.24)

☐ 북한 수해 지원금 저조… “목표의 3%만 확보”

- 국제적십자사는 30일 국제사회에 북한의 수해 복구 사업을 위해 미화 44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 요청’을 했지만, 핀란드와 네덜란드 단 두 나라에서 각각 7만 달러씩 모두 14만 달러를 지원해 전체 예산의 3%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이 기구는 “북한의 수해지역에서 홍수로 파손된 가옥이 1만여 채 가운데 1천여 채의 집을 지어주기로 했지만, 기부국들의 재정 지원이 부족해 주택 복구용 자재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또 “홍수로 피해를 입은 5개 마을에 상수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지만, 이에 필요한 공사 자재도 자금 부족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2일 수해 관련 보고서에서 황해남북도를 주요 수해 지역으로 밝혔지만, 한 달이 지난 30일 보고서에서는 강원도, 평안남도를 수해가 큰 지역으로 추가 보고해, 홍수의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북한 수해 지원금 저조…"목표의 3%만 확보", 2011.8.31)

☐ WHO, 2012~2013년 대북사업예산 30% 감축

- 세계보건기구(WHO)의 2012~2013년도 대북사업 예산이 작년과 올해 2개년 예산(3천700만 달러)보다 약 30% 줄어들 전망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함.
- WHO는 예산보고서에서 금융위기에 직면한 회원국들의 예산감축 의견을 감안해 내년부터 2년간 북한 지원사업 예산을 2,600만 달러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WHO도 다른 유엔 기구들처럼 대북사업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3월 말까지 모금액이 2010~2011년 예산 3,700만 달러의 56%인 2,083만 달러에 그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북한 수해 지원금 저조..."목표의 3%만 확보", 2011.8.31)

□ 국제적십자사 北수해 지원금 30% 확보

- 국제적십자사가 대북수해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에 모금을 호소한 440만 달러 가운데 30%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함.
- 이 방송은 국제적십자사가 지난달 30일까지는 수해지원금의 3%를 확보하는데 그쳤지만 이후 10일간 국제사회의 지원이 10배가량 늘어났다고 전함.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의 수재민 2만4천명이 2개월간 먹을 수 있는 쌀과 옥수수 등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임.
- 국제적십자사 베이징(北京) 사무소의 프랜시스 마커스 대변인은 RFA에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의 수재민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몇년 만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말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국제적십자사 北수해 지원금 30% 확보", 2011.9.9)

□ 하반기 유엔 대북 긴급구호기금 지원액 '0'

- 북한이 지난 2년간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으로부터 받아온 지원금을 올 하반기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전함.
- CERF는 북한에 2009년 1,800만 달러, 2010년 1,3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상반기에도 긴급대응지원금 1천만 달러, 자원부족지원금 500만 달러 등 1,5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CERF가 최근 발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하반기 CERF의 긴급대응지원금과 자원부족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유엔기구들의 추천을 받아 CERF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자원부족지원금의 경우 이미 7월에 결정돼 올해 북한에 지원할 금액은 없다"며 "다만 긴급대응지원금의 경우 11월과 12월에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함.

- 한편 유엔은 2011년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억 1,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약 30%인 7,400만 달러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하반기 유엔 대북 긴급구호기금 지원액 '0'", 2011.11.5)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北, 미국 캐나다 NGO에 'SOS'

- 북한이 미국과 캐나다의 구호단체들에 수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17일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음.
- 캐나다 대북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8월 6일 북한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자우편에는 "북한 현지에서 식량 수요가 과거 어느 때보다 늘고 있다"며 "긴급 식량과 영양보조식품, 천막, 약품, 기름 등이 수재민들에게 필요하다"는 북한의 요청 사항이 들어 있었음.
 - 수전 리치 퍼스트 스텝스 대표는 "우선은 지금까지 해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음. 또한 "가장 큰 목표는 매일 8만 명이 넘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콩 우유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미국의 한 단체도 북한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미국의 경제 상황,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의 기근 사태가 심각해 자금 모금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함.

자료: <http://www.mk.co.kr/> (매일경제, 北, 미국 캐나다 NGO에'SOS', 2011.8.18)

☐ 러시아 지원 밀가루 北도착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러시아 정부가 조선(북한)에 식량 5만 톤을 무상제공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19일 식량을 실은 첫 배가 홍남항에 도착했다"며 "앞으로 식량을 실은 배들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고 밝혔음.
- 통신은 또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미화 500만달러를 기증해 북한에 식량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러시아 정부가 이번에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 러시아의 대북식량지원은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장관회담 때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러시아 지원 밀가루 北도착", 2011.8.19)

□ 美, 對北 수해 복구 90만弗 긴급지원

- 미국 정부는 18일(현지시간) 최근 수해를 입은 북한에 최대 90만 달러(약 9억 6,7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함.
-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구호물자가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북한의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의 수해지역에 전달될 것이라고 전함. 성명은 이번 구호물자 지원이 “북한 주민의 복지를 위한 미국의 계속되는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함.
- 미국의 대북지원 발표는 지난달 말 뉴욕에서 1년7개월 만에 북·미 고위급 대화가 열려 그간 중단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협의한 데 이어 나온 것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 對北 수해 복구 90만弗 긴급지원", 2011.8.19)

□ 미국 NGO, “북한 수해지원 협의 중이다”

- 미국이 북한 수해 지원에 9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데 이어 미국의 비정부기구(NGO)들도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협의하고 있음.
- 머시 코어의 살마 바라미 대변인은 18일 “머시 코어는 다른 미국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미국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힘.
- 바라미 대변인은 “그러나 아직은 협의 단계일 뿐이기 때문에 수해 지원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함.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원 물품과 전달 방법, 분배 감시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힘.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미국 NGO, "북한 수해지원 협의 중이다"", 2011.8.19)

☐ 미 대북 수해지원…“미국 5개 NGO가 전담”

- 미국 정부가 발표한 9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수해지원은 사마리탄스 퍼스 등 미국의 5개 대표적 민간 구호기구가 맡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한 민간 구호단체 관계자는 19일 ‘사마리탄스 퍼스’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머시코’, ‘월드비전’,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등 5개 단체가 대북 구호물품 전달에 나설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이 관계자는 “미국 국무부의 위임에 따라 국제개발처가 이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구호 품목과 수량, 그리고 지원 시기 등을 조율 중이며, 수일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함. 또한 “대북 지원 물품은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배편과 육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국은 지난해에도 대북 민간단체를 통해 60만 달러 상당의 수해 지원을 했으며, ‘사마리탄스 퍼스’는 지난해 8월 31일 747전세기편으로 의약품과 정수기, 담요 등 90톤 가량의 구호물품을 북한으로 공수했음.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미 대북 수해지원…"미국 5개 NGO가 전담", 2011.8.20)

☐ 美NGO도 北수해복구에 90만 달러 기부

- 미국의 대북 민간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가 자체적으로 90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북한의 수재민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이 단체는 북한 강원도와 황해도에 이불, 임시천막 설치용 자재, 위생용품 등을 보내고 분배모니터링을 위해 직원들을 북한에 직접 파견할 계획임. 이로써 올해 미국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북한에 전달되는 구호물지는 180만 달러로 늘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NGO도 北수해복구에 90만 달러 기부", 2011.8.22)

☐ 프랑스, 북한에 14만 달러 식량 추가 지원

- 프랑스 외무부가 북한을 돕기 위해 14만 달러상당의 식량을 추가로 지원할 계

획이라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함.

- 방송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구호단체 ‘프리미어 어전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식량이 다음달 초부터 함경도와 황해북도의 학생 2,850명과 교사 726명에게 분배될 예정이라고 전함.
- 프리미어 어전스는 고아와 장애인에게 쌀과 옥수수, 콩 등 석 달치 식량을 지원할 계획임.
-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평안남도과 황해남도의 고아와 장애인 1,600명에게 21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전달한 바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프랑스, 북한에 14만 달러 식량 추가 지원", 2011.8.25)

□ 러, 하산-나진 철로로 北에 밀가루 지원

-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키로 약속한 5만 톤의 밀가루 가운데 제2차 공급분이 9월 중 새로 보수된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과 북한 나진항 구간 철로를 이용해 운송될 것이라고 러시아 극동지역 통신인 프리마미디어(PrimaMedia)가 30일 보도함.
- 이와 관련 빅토르 이샤예프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앞서 2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러 결과를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과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52km 철도 구간 보수 공사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현재 러시아 철도당국이 추진하는 보수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 10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와 북한은 2008년부터 나진항으로 들어오는 동북아 지역의 화물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옮겨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운송하기 위해 나진-하산 간 52km 철로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 구간은 개보수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짐.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러, 하산-나진 철로로 北에 밀가루 지원", 2011.8.30)

□ 美 NGO 북한에 수해구호품 90톤 공수

-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이 2일 북한에 수해 구호물품 90톤을 공수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구호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의 더글러스 국제공항에서 보잉747 화물기에 실리고 북한의 강원도와 황해도 수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임.
- ‘사마리탄스 퍼스’를 비롯한 미국의 5개 비정부기구(NGO)가 미 정부의 지원으로 의약품, 위생용품, 정수기, 이불 등 구호물품을 마련함.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을 직접 방문해 물품의 분배상황을 감시할 예정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 NGO 북한에 수해구호품 90톤 공수", 2011.9.2)

□ 美 NGO, “대북 수해 지원 물자 분배 감시 시작”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4일 ‘미국의 대북 NGO’인 ‘사마리탄스 퍼스’와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머시 코어’, ‘월드 비전’ 등 5개 구호 단체의 관계자들과 함께 3일부터 일주일 동안 홍수 피해 지역을 돌며 분배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힘.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5개 단체의 관계자 6명은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에서 분배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관계자들이 방북을 마치고 돌아오면 2차 지원분에 대한 세부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함.
-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함께 보내는 구호물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은 336만 8천 달러가 넘었으며, 몇 주 후에 있을 2차 지원분에는 민간단체들의 도자채 성금이 추가 기부될 것으로 보임.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지원품은 담요와 비누, 위생 용품 등 긴급 구호품으로 제한 구성된 것들”이라면서, “민간단체 대표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지원품의 전달을 감시하고, 현지의 수해 피해 상황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美 NGO, "대북 수해 지원 물자 분배 감시 시작"", 2011.9.5)

□ 美 NGO “2차 대북 수해지원 논의 중”

- 미국의 5개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1차 대북 수해지원 물품의 분배감시를 마치고 지난 주말 돌아와 2차 지원의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스트릭랜드 대변인은 “약 1주일 동안 홍수 피해가 심한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에 1차 지원 147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말함. 그는 “사마리탄스 퍼스의 지원 물품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2차 지원물품의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민간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말함. 그러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미국 정부의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임.
- 1차 수해 지원은 항공편으로 긴급히 전달했지만 2차 지원은 품목과 운송 날짜가 결정되는 대로 육로와 배편으로 전달될 예정임.
- 1차 대북 수해 지원은 미국 정부의 90만 달러 지원이외에 지금까지 사마리탄스 퍼스가 120만 달러,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66만 8천 달러,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가 60만 달러를 자체 모금해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해도 336만 8천 달러로 나타남.
- 이 가운데 147만 달러가 1차 지원분으로 전달됐으며, 나머지 예산에 추가로 걷힌 성금을 합해 2차 지원분을 보낼 예정임.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美 NGO "2차 대북 수해지원 논의 중", 2011.9.14)

□ 이탈리아, WFP 대북지원에 43만달러 기부

- 이탈리아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지원에 43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함. 개별국가가 WFP에 대북식량지원 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지난 7월 중순 호주에 이어 두 달 만임.
- 이탈리아는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의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북지원에 나서는 것임.
- WFP는 올해 들어 호주, 스웨덴, 중국, 브라질, 인도,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13개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31%인

6,437만 달러를 확보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이탈리아, WFP 대북지원에 43만달러 기부", 2011.9.20)

□ WFP “주북 인도대사, 식량분배 현장 방문”

- 산자히 싱 북한 주재 인도대사가 지난달 14일 평양 외곽의 보육원과 병원을 직접 방문해 인도가 지원한 식량의 분배현황을 점검했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이 1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밝힘.
- WFP는 인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콩 900톤과 밀 373톤 등 1,273톤의 곡물이 어린이와 임산부 12만여 명에게 전달됐다고 전함.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이날 싱 대사의 식량분배 현장방문 소식을 전하고 WFP의 식량지원과 관련한 분배감시 체계가 항만 도착부터 식량안보 및 영양평가 절차까지 9단계로 시행된다고 소개함.

자료: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WFP "주북 인도대사, 식량분배 현장 방문"", 2011.10.2)

□ 北, 러시아지원 식량 5만 톤 수령 완료

-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식량을 4일까지 모두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과 러시아는 4일 평양 밀가루가공공장에서 김지석 수매량정성 부상,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 러시아 비상사태성 대표단, 아브라힘 시디키 주북한 세계식량계획 임시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했음.
- 러시아는 지난 7월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장관회담에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의 요청에 따라 식량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8월19일 홍남항을 통해 첫 지원물자를 전달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러시아지원 식량 5만 톤 수령 완료", 2011.10.4)

3. 북중 교역 동향

●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0~2011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147	6,304	155	737	288	7,631
2	-	136	146	0	122	90	496
3	-	2,718	543	0	5,392	172	8,825
4	-	3,002	2,069	80	5,585	84	10,820
5	1	8,347	2,778	39	6,852	12	18,029
6	0	2,995	1,702	0	3,392	6,420	14,509
7	0	3,118	2,406	122	1,723	163	7,532
8	0	4,706	5,396	0	7,166	4,521	21,789
9	0	3,726	2,709	0	6,856	1,556	14,847
10							
11							
12							
2011.1-9	1	28,895	24,053	396	37,825	13,306	104,476
2010. 1	0	806	4,420	46	97	932	6,301
2	332	79	806	88	25	151	1,481
3	17	1,199	2,350	23	2,881	47	6,517
4	4	1,704	1,390	63	4,120	8,024	15,305
5	0	4,205	1,902	93	4,184	2,831	13,215
6	0	2,416	1,154	21	4,718	1,576	9,885
7	0	3,396	2,459	0	1,219	0	7,074
8	0	2,541	2,088	0	953	33	5,615
9	0	1,488	4,922	35	4,103	808	11,423
10	0	1,314	5,270	39	5,715	496	12,834
11	7	2,459	3,656	0	6,343	86	12,551
12	0	1,902	5,002	78	5,836	150	12,968
2010.1-12	360	23,509	35,439	468	40,241	15,134	115,169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0~2011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600	10,815	240	1,951	480	14,086
2	-	470	312	0	295	145	1,222
3	-	9,050	1,117	0	13,692	265	24,124
4	-	9,819	3,937	123	14,069	130	28,078
5	1	27,491	5,410	60	17,348	18	50,328
6	0	9,544	3,603	0	8,543	9,645	31,335
7	0	10,012	4,703	195	4,243	231	19,384
8	0	13,286	10,417	0	17,458	6,817	47,978
9	0	10,200	4,981	0	16,785	2,236	34,202
10							
11							
12							
2011.1-9	1	90,472	45,295	618	94,384	19,967	250,737
2010. 1	0	3,448	8,425	104	304	1,553	13,834
2	955	324	1,908	200	75	255	3,717
3	50	4,951	5,978	52	8,682	75	19,788
4	6	6,569	3,604	154	12,373	13,741	36,447
5	0	16,122	4,490	222	12,591	4,846	38,271
6	0	9,351	2,916	47	14,318	2,706	29,338
7	0	12,203	6,223	0	3,601	0	22,027
8	0	9,047	4,831	0	2,787	58	16,723
9	0	5,764	11,830	60	11,573	1,222	30,449
10	0	4,770	12,933	60	15,815	915	34,493
11	10	8,546	9,231	0	17,374	145	35,306
12	0	6,536	11,578	120	14,818	250	33,301
2010.1-12	1,021	87,630	83,947	1,019	114,311	25,766	313,694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1년 9월 북한은 중국에서 총 34,202톤의 곡물을 수입함으로써 전월의 47,978톤에 비해서는 28.7% 감소하였음. 그러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수입량이 12.3% 증가하였음.
 - 9월 곡물 수입액은 1,485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31.8% 감소하였음.
 - 9월 곡물 수입 단가는 8월에 비해 대체로 상승하였으나 밀가루는 약간 하락하였음. 옥수수 수확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 수입이 여전히 많은 것은 금년에 수확한 옥수수를 당장 공급하기 어려운데다 식량재고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11년 9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류의 총량은 250,737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10,594톤과 비교할 때 19.1% 증가하였음.
 - 2011년 1~9월 북한이 곡물 수입에 지출한 비용은 1억 448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7,682만 달러에 비해서는 36% 증가하였음.
 - 2011년 1~9월 북한이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비중은 옥수수 36.1%, 쌀 18.1%, 밀가루 37.6%, 콩 8.0%임. 2010년의 경우 각각 32.2%, 23.8%, 31.5%, 11.6%였음.
 - 2010년과 비교할 때 2011년에는 보리, 쌀, 잡곡, 콩의 수입량은 감소한 반면 옥수수와 밀가루의 수입량은 증가하였음.
 - 2011년 1~9월 수입 곡물의 곡종별 비중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옥수수와 밀가루의 수입 비중은 증가한 반면 쌀과 콩의 비중은 감소하였음.
- 2011년 1~9월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41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5달러에 비해 14% 상승하였음.
 - 2011년 1~9월 동안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톤당 평균 수입 단가는 쌀 531달러, 옥수수 319달러, 밀가루 401달러, 콩 666달러로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모든 곡종의 가격이 상승하였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쌀 가격은 23.9% 상승하였으며 옥수수, 밀가루, 콩 가격은 각각 21.4%, 18.9%, 13.2% 상승하였음.
- 2011년 9월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국제가격(본선인도가격/FOB 1등급 정곡 기준)은 톤당 860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FOB, 100% Grade B 정곡 기준)은 톤당 624달러임.¹⁾

- 중립종 쌀은 전년 동월에 비해 16.1% 상승하였으며 장립종 쌀은 26.3% 상승하였음.
- 2011년 9월 미국 캔서스상품거래소(KCBOT)의 밀 선물가격은 톤당 265달러(hard red winter 2등급 기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 하락하였으며 전월에 비해서는 11.4% 하락하였음.
- 2011년 9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56달러(yellow corn 2등급 기준)로 전년 동월 대비 32.6% 상승하였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8.9% 하락하였음.
- 2011년 9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대두 선물가격은 톤당 471달러(yellow soybean 1등급 기준)로 전년 동월 대비 20.5% 상승하였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6.0% 하락하였음.
- 그 동안 강세를 보이던 국제곡물가격이 최근 하락 추세로 돌아섰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1) 성명환. 2011. 9. “세계 곡물 가격 동향.” 「세계농업」. M45-1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0~2011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 1	72	-	0	-	72
2	2,651	-	0	-	2,651
3	1,667	-	0	41	1,708
4	4,772	4	1	2	4,779
5	13,870	0	0	0	13,870
6	16,714	0	0	88	16,802
7	53,557	0	0	1,300	54,857
8	747	0	0	250	997
9	0	0	0	0	0
10					
11					
12					
2011.1-9	94,050	4	1	1,681	95,736
2010. 1	5,492	0	0	0	5,492
2	7,772	0	0	0	7,772
3	23	0	0	4	27
4	0	0	0	7	7
5	5,105	0	0	11	5,116
6	2,122	0	0	5	2,127
7	17,436	0	0	0	17,436
8	2,221	0	0	1	2,222
9	331	0	0	3	334
10	3	0	0	0	3
11	288	0	0	0	288
12	398	0	0	0	398
2010.1-12	41,191	0	0	31	41,191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0~2011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01	151	-	1	-	152
2	15,064	-	-	-	15,064
3	10,151	-	0	99	10,250
4	21,755	40	1	3	21,799
5	67,067	0	0	0	67,067
6	75,844	0	0	220	76,064
7	156,934	0	0	3,463	160,397
8	3,365	0	0	555	3,920
9	0	0	0	0	0
10					
11					
12					
2011.1-9	350,331	40	2	4,340	354,713
2010. 1	16,979	0	0	0	16,979
2	23,529	0	0	0	23,529
3	161	0	0	8	169
4	0	0	0	12	12
5	41,280	0	0	19	41,299
6	17,599	0	0	1	17,600
7	160,553	0	0	0	160,553
8	19,771	0	0	1	19,772
9	3,105	0	0	5	3,110
10	5	0	0	0	5
11	961	0	0	0	961
12	3,305	0	0	0	3,305
2010.1-12	287,248	0	0	46	287,294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북한은 7월 한 달에만 중국으로부터 16만 톤의 화학비료를 수입하였으나 8월에는 수입량이 급감하였으며 9월에는 수입 실적이 전혀 없음.
 - 통상 수확기에 접어들면 화학비료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지난해 9월에도 북한의 화학비료 수입량은 334톤에 그쳤음.
- 2011년 1~9월 동안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총 354,713톤(중량 기준)의 비료를 수입하였으며 수입액은 9,574만 달러에 달함.
 - 지난해 같은 기간 북한은 중국에서 총 283,023톤의 비료를 수입하였으며 수입액은 4,053만 달러였으므로 수입량은 25.3%, 수입액은 136.2% 증가하였음.
 - 금년 1~9월에 수입한 비료는 유안(Ammonium sulphate) 254,883톤, 요소(Urea) 95,449톤으로 주로 가격이 저렴한 유안 위주로 수입하였음. 지난해 같은 기간 북한은 유안 239,329톤, 요소 43,642톤을 수입하였음.
 - 요소는 유안에 비해 성분함량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같은 양의 비료를 사용하더라도 증수 효과는 훨씬 큼. 비료의 성분 함량을 고려할 경우 2011년 1~9월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성분량은 97,432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334톤에 비해 38.5% 증가하였음.
- 2011년 1~9월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유안 비료의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192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121달러와 비교하면 58.5% 상승하였음.
 - 2011년 1~9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Urea)의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473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8달러와 비교하면 44.2% 상승하였음.
 - 금년 들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의 도입 단가가 2월에는 600달러를 넘어섰으나 4월부터 6월까지 340달러 대로 떨어졌다가 7월에는 520달러로 상승하였으며 8월에는 433달러로 하락하였음. 이에 비해 유안의 도입 단가는 6월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유기농업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¹⁾

장 형 범

- 농업부문에서 알곡생산을 늘려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고 인민대중 중시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음.
- 현시기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됨.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과정은 알곡작물의 생물학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과정임.
-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 것은 그것이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알곡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임.
 - 현시기 과학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따라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메마른 땅을 기름진 땅으로 개량하면서 알곡작물의 단위당수확고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음.
-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알곡 단위면적당 투자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
 - 유기농법을 도입하면 농작물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과학기술적요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그 과정을 촉진시켜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알곡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일수 있음.
- 유기농법은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릴수

1)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7권 제3호, 2011.

있게 함.

- 유기질비료는 토양과 알곡작물에 여러 가지 영양물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고 토양안의 부식질함량을 늘리며 토양에서 비료성분의 손실을 적게 하고 화학비료의 물기보유능력과 물스밈성을 좋게 하며 토양의 온도도 높여줌.
- 또한 첨단생물농약과 우렁이에 의한 유기농법을 적극 도입한다면 알곡작물의 소출을 최대로 높일 수 있음. 우렁이에 의한 유기농법은 노동력과 농약을 절약하면서도 그 배설물로 효능 높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논벼생육에 좋은 조건을 보장할 수 있게 됨.
- 알곡생산과 축산을 배합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실현하면 알곡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음. 고리형순환생산체계는 알곡생산부문과 축산부문을 잘 배합하여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함으로써 알곡생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게 하는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생산체계임.
-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알곡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게 하고 알곡농사를 고도로 집약화함으로써 알곡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릴수 있는 중요한 방도임.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림으로써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해야 함.

현시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²⁾

손 영 석

- 경제강국은 높은 발전수준에 이른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강성국가의 체도에 맞는 강력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고 인민에게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높은 발전수준에 이른 나라를 의미함. 인민생활을 높여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문제는 경제강국건설에 달려있음.
- 현시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경공업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임.
 - 우선 인민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
 - 이와 함께 대중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에 맞게 소비품의 가짓수를 늘려나가야 함.
 - 식료일용품생산 특히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켜 고기와 물고기가공품, 장절임을 비롯한 남새가공품, 당과류와 청량음료, 여러 가지 식료가공품을 많이 생산공급하여 인민의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고 생활이 흥하게 해야 함.
-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함.
 - 회령, 강계처럼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며 자체의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지방공업공장을 만부하로 돌려야 함.
 - 인민소비품생산을 주체화, 국산화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야 함.
-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켜야 함.
 - 농업생산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

2)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7권 제3호, 2011.

은 현시기 인민생활향상에서 필요한 제1차적인 요구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임.

-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인민들의 먹는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함.
- 식량문제해결에서는 알곡생산을 늘리는 것이 기본임. 이를 위해서는 모든 협동농장에서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야 하며,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함.
- 농업부문에서 유기농업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특히 농산과 축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우고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도록 해야 함.
-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함.
 - 석탄공업, 금속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가 앞서나가야 기계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 양양이 일어날 수 있고 인민생활이 향상될 수 있음.
- 상품유통에 있어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많이 생산된 상품이 인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상품공급사업을 바로 잡아야 함.
 - 이동판매, 이동봉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업봉사방법을 옹호 배합하여 상품공급사업을 바로해야 하며, 포장용기를 비롯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수단을 충분히 갖추어 봉사의 편리성을 보장하며, 상업봉사에서 친절성을 높여야 함.

E02-2011-0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3권 제3호

찍 은 날	2011. 10	펴낸날	2011. 10
발 행 인	이 동 필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